

예 방 실 무

강원도소방학교

소방서비스 현장

우리 소방인은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일이야말로 소방의 진정한 책무임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 여러분께서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다 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신속한 출동과 효율적인 현장활동으로 피해를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1. 긴급구조와 화재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하는 소방인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소방행정의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으로 공공 질서유지와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校 訓

배움으로 先進消防

나눔으로 奉仕消防

현장으로 最强消防

반 명	
교 번	
성 명	



총 · 목 · 차

CONTENTS

1. 건축법	1
2. 예방민원관련질의사항	133
3.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263

01

건 축 법

Gangwondo Fire Service Academy



목 · 차

CONTENTS

제 1 장 개 관	
제 1 절 건축법의 개요	5
제 2 절 건축행정 행위등	13
제 3 절 건축허가등의 동의	30
제 4 절 용어의 정의	35
제 2 장 면적·높이·층수 등의 산정 및 제한	
제 1 절 면적의 산정 및 제한	67
제 2 절 높이의 산정 및 제한	78
제 3 절 층수의 산정 및 제한	83
제 3 장 방화에 관한 기준	
제 1 절 내화구조·방화구조 및 방화문	85
제 2 절 건축물에 대한 방화 제한	90
제 3 절 방화구획	94
제 4 절 방화지구내의 제한	102
제 4 장 피난에 관한 기준	
제 1 절 적용범위와 용어	105
제 2 절 출구와 복도의 너비	107
제 3 절 계단 등의 설치 기준 및 구조	112
제 4 절 피난에 필요한 옥상시설	124

제 5 장 소방상 필요한 건축 설비

제 1 절 배연설비의 설치와 구조 126
제 2 절 승용승강기의 설치와 구조 127
제 3 절 비상용승강기의 설치와 구조 129

제1장 개 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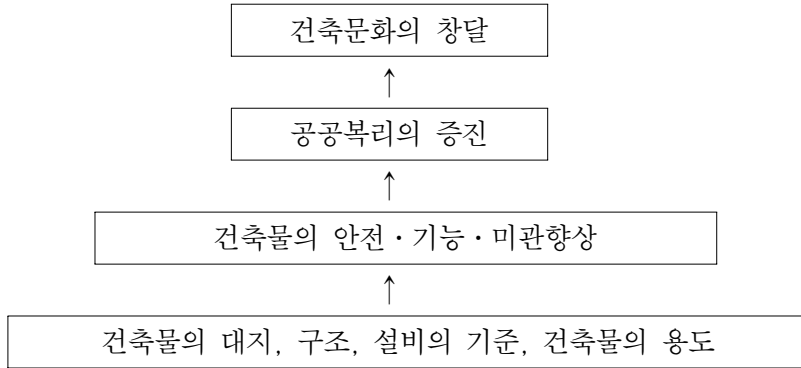
제1절 건축법의 개요

1. 건축법의 개요

가. 건축법의 목적

- (1) 헌법 - 「모든 국민은 깨끗한 환경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와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다」
- (2) 건축 -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건축주의 이익이 반드시 이웃의 이익이 될 수는 없다. 즉 공공복리에 저해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익의 추구
- (3) 건축법의 목적 - 건축물과 대지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도시적 측면의 건축물군의 합리적인 관계 설정과 개별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를 정하여 안전·기능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서 개인은 물론 국민 전체의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하나의 건축물에서는 거주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건축물이 집단화된 경우에는 건축물간의 상관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법적 규제이며,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행정주체(관계기관)와 행정객체(건축주)가 부담하여야 할 의무조항을 규정하고, 세부적으로 개별 건축물의 대지조건·구조·설비·용도 등에 관한 기준(건축물의 안전과 위생·설비·재해방지 등)을 제시함과 동시에 도시계획적 차원의 지역·지구·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건축물군에 관한 기준(도시공간 구조의 계획, 도시미관)을 규정하고 있다. 즉 건축법의 목적은 거주자의 건강과 안녕을 확보하고 건축물 상호간의 관계를 조성함으로써 개인의 행복은 물론 공공사회에 유익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나. 건축법 목적의 도해



다. 건축법의 연혁

- (1) 시가지 건축규칙 (1913~1934)
- (2) 조선시가지 계획령 (1934~1962)
- (3) 건축법·도시계획법 (1962~현재)
 - (가) 조선시가지 계획령 중 시가지에 관한 부분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로, 건축통제에 관한 부분은 건축법으로 분리하여 각각 제정
 - (나) 건축법은 1962년 제정된 이래 2010. 5. 31까지 총 63차 개정

라. 건축법의 체계

- (1) 일반사항
 - (가) 목적
 - (나) 용어의 정의 : 대지, 건축물, 지하층, 거실, 주요구조부,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도로, 건축주 등
 - (다) 법령적용 범위 및 예외
 - (라) 설계·감리·시공자의 자격 등
- (2) 건축절차
 - (가) 건축허가 대상범위, 허가절차, 허가사항의 변경절차

- (나) 착공신고, 사용승인 절차
 - (다) 사용중인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관련 사항
 - (라) 건축 공사감리 대상 및 감리범위, 감리자의 자격
 - (마)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건축사 대행
- (3) 건축기준에 관한 사항
- (가) 대지의 조건(도로와의 관계, 규모 등)
 - (나) 구조기준에 관한 사항
 - (다) 방재(내화, 방화, 내장)기준과 피난기준
 - (라)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사항
- (4) 용도지역 관리 및 건축환경보호 기준
- (가) 지역·지구안의 건축물 허용과 금지에 관한 사항
 - (나) 건폐율·용적률(지역밀도 관련 규정)
 - (다) 일조확보 등 지역환경보호 기준
 - (라)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
 - (마) 재해관리구역의 지정과 건축물의 건축제한에 관한 규정
- (5) 기타
- (가) 위반건축물 시정에 관한 사항
 - (나) 행정관서간의 질서에 관한 사항
 - (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관련 규정, 벌칙에 관한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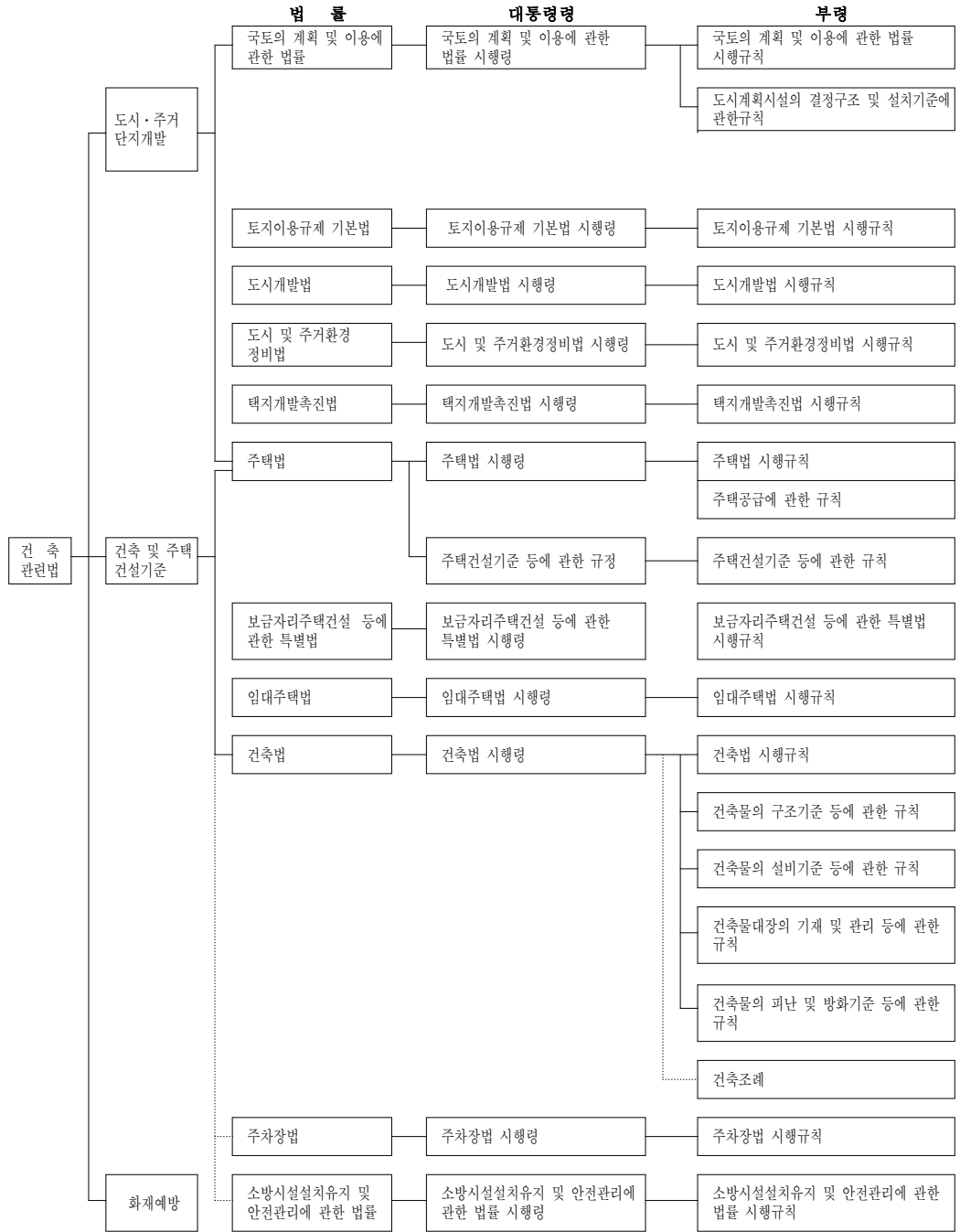
마. 건축법의 체계표



바. 건축법의 주요내용

총 칙	건축물의 건축	건축물의 유지·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 정의 - 적용제외 - 건축위원회 - 적용완화 -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 통일성유지를 위한 도조례 - 다른법령 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허가·신고 및 변경 -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 건축허가 수수료 - 건축허가 제한 - 용도변경 - 가설건축물 - 착공신고 - 사용승인 - 설계·건축시공 - 설계도서관리 - 공사감리 - 허용오차 - 조사검사및확인업무의 대행 - 공사현장 위해방지 -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유지·관리 - 건축물의 철거등의 신고 - 건축지도원 - 건축물대장 - 등기축탁
<p style="text-align: center;">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p>	<p style="text-align: center;">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p>	<p style="text-align: center;">지역 및 지구안의 건축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의 안전 등 - 토지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 대지의 조경 - 대지와 도로의 관계 - 도로의 지정, 폐지 또는 변경 - 건축선의 지정 -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내력 등 - 피난시설·용도제한 등 - 대화구조·방화벽 - 방화지구내 건축물 - 내부 마감재료 - 지하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가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 조치 - 건폐율 - 용적률 - 대지의 분할 제한 - 대지 안의 공지 - 높이제한 - 맞벽 건축과 연결복도 - 일조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p style="text-align: center;">건축설비</p>	<p style="text-align: center;">특별건축구역</p>	<p style="text-align: center;">보 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설비기준 등 - 온돌 및 난방설비 - 승강기 - 친환경 건축물의 인증 -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 및 폐자재 활용 -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관계전문기술자 - 기술적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역지정 - 구역내 건축물 - 지정절차 등 - 관계 법령 적용 특례 - 통합적용계획의 수립·시행 - 건축주·허가권자 등의 의무 - 구역내 건축물의 검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독 - 위반건축물 조치 - 이행강제금, 안전점검·시정명령 - 권한의 위임·위탁 - 옹벽등의 공작물예의 준용 - 면적·높이·층수 등 산정 - 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 청문 - 보고 및 검사 - 분쟁조정위원회 - 벌칙적용시 공무원 의제 등

사. 건축단계별 관계법령



아. 건축법의 기능

- (1) 개별적 건축공간의 안전성 확보와 재산보호 - 구조안전, 방화, 내화구조, 화재시 소화 및 피난통로
- (2) 거주자의 건강보호 - 환기, 위생, 난방 등의 건축설비, 일조권
- (3) 건축으로 인한 상린관계의 확립과 충돌에 관한 규제와 조정역할 - 일조권, 대지 안의 공지, 차면시설설치, 건축분쟁조정

자. 건축법의 적용범위

(1) 건축법의 적용범위

구 분	대 상 지 역	
건축법의 전면적인 적용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지역,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 동 또는 읍의 지역(동 또는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인구가 50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건축법의 일부규정 적용제외	적용제외 대상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지역,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 또는 읍이 아닌 지역
	적용제외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와 도로의 관계 ·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 건축선의 지정 · 방화지구안의 건축물 · 대지의 분할 제한

(2)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

구 분	대 상 시 설
문화재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가지정문화재
철도, 궤도의 선로부지내 시설	· 운전보안시설 · 철도 선로의 상하를 횡단하는 보행시설 · 플랫폼 · 해당 철도 또는 궤도 사업용 급수, 급탄, 급유시설
기타 시설물	·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공장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써 이동이 쉬운 것에 한함)

차. 교재편성 방향

- (1) 재해예방·피난·방화 등 소방행정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편성
- (2) 화재는 건축물에서 일어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건축물의 설계단계에서부터 화재발생요인을 줄이고, 화재가 확대되어 나가는 경로를 차단하는 방안
- (3) 화재시 건축물 안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피난통로 확보방안
- (4) 건축법규 내용 중 소방공무원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을 교재에 수록하여 업무에 활용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5) 이 교재에서의 “法”은 「건축법」·“令”은 「건축법 시행령」·“規則”은 「건축법 시행규칙」, “設備規則”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그리고 “避難防火規則”은 「건축물의 피난 및 방화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말한다.

제2절 건축행정 행위 등

1. 건축허가 (法 제11조제1항)

가. 건축허가 대상 (法 제11조제1항)

지역의 균형적 발전 또는 지역계획 등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공장·창고를 제외하며, 연면적 10분의3 이상의 증축으로 21층 이상이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 건축허가시 적합 여부를 확인해야 할 법 규정

건축허가가 신청되면 그 건축물이 당해 지역에 건축될 수 있는지, 관계법령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동 규정에서 열거하지 아니한 규정은 건축사 등 관계전문가가 검토해야 한다. 기본 설계도서를 검토함에 있어 건축법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개별법령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하는 사항이 동 설계도서에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개별법에서 다뤄야 할 사항이므로 이를 보완토록 하지 않아야 하며 구체적인 설계의 내용은 착공신고시 제출하는 실시설계도서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검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가 고시하는 기준내용에 따른다.

(1) 적합여부를 검토해야 할 법규

건	축	법	제 44 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제 47 조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제 55 조 【건폐율】
			제 56 조 【용적률】
			제 57 조 【대지의 분할제한】

- 제 60 조 **【건축물의 높이제한】**
- 제 61 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13조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 자연공원법 제 23 조 **【행위허가】**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 7 조 **【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 제 8 조 **【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
- 제 9 조 **【자연보전지역의 행위 제한】**
- 택지개발촉진법 제 6 조 **【행위제한 등】**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24 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 제 38 조 **【녹지의 점용허가 등】**
- 항 공 법 제 82 조 **【장애물의 제한 등】**
- 학교보건법 제 6 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 산지관리법 제 8 조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
- 제 10 조 **【산지전용제한지역·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 제 12 조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 제 14 조 **【산지전용허가】**, 제 18 조 **【산지전용허가기준 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 조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 도 로 법 제 38 조 **【도로의 점용】**
- 제 49 조 **【접도구역의 지정 등】**
- 주 차 장 법 제 19 조 **【부설주차장의 설치】**
- 제 19 조의 2 **【부설주차장의 설치계획서】**
- 제 19 조의 4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금지 등】**
- 환경정책기본법 제 22 조 **【특별종합대책의 수립】**
- 자연환경보전법 제 15 조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 수 도 법 제 7 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 34 조 **【자동차의 운행제한】**
- 제 36 조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 문화재보호법 제 35 조 **【허가 사항】**

(1) 의제처리 허가대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2 【인·허가 등의 의제】

제14조 【공장의 건축허가】

건축법 제20조제2항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제83조 【공작물의 축조 신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개발행위허가】

제86조제5항 【시행자의 지정】, 제88조제2항 【실시계획의 인가】

산지관리법 제14조 【산지전용허가】, 제15조 【산지전용신고】

사도법 제4조 【사도개설허가】

농지법 제24조·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도로법 제34조 및 제64조제2항 【비관리청 공사시행 허가 와 도로의 연결허가】

제38조 【도로의 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 【하천점용 등의 허가】

하수도법 제27조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제34조제2항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전기사업법 제62조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수도법 제38조 【상수도 공급신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설치의 허가·신고】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설치의 허가·신고】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 【소음·진동 배출시설설치의 허가·신고】

질의·회신 토지 형질변경 허가 와 건축허가를 동시처리 가능 여부(건교부건축 58070-1870. 99. 5. 24)

질의 일반주거지역으로서 최고고도지구 안의 사실상 대지화 된 토지에 건축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 선행여부 또는 건축허가시 동시처리 가능여부

회신 건축법 제8조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건축허가시 동시에 처리될 수 있는 것임.

질의·회신 건축허가시 공원점용 허가 복합처리 가능 여부(건교부 건축 58550-2085. 99. 6. 5)

질의 건축허가시 복합으로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 허가를 처리할 수 있는지?

회신 건축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신고 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대상에는 자연공원법이 포함되지 아니함. 다만, 동법 동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하고자 신청한 내용이 자연공원법 제23조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의 복합민원처리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임

라. 건축허가에 관한 사전승인 (法 제11조제2항)

- (1) 건축허가에 대한 허가권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지만, 전체적인 국토계획이나 국가정책면에서 볼 때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규제에 대한 전국적인 맥락을 같이 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도에 있어서는 당해 시장·군수가 허가하기 전에 먼저 상부관청인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 (2) 시장·군수는 다음 표에 계기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에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표 1-1〉 사 전 승 인 대 상 물

사전승인 대상건축물	승인권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공장·창고를 제외한다)의 건축(연면적의 10분의3 이상의 증축으로 인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의 증축을 포함한다) · 자연환경 또는 수질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하는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해당되는 건축물 ·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의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하는 구역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도지사

마. 건축허가의 취소

- (1)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명령처분에 위반이 있을 때

2. 건축신고 (法 제14조)

가. 건축물의 건축이나 대수선의 행위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통하여 미리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및 용도 등을 제도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적법한 건축물을 건축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나 건축물의 규모가 비교적 작은 소규모 건축물·가설건축물, 농·어업용 건축물, 대수선·용도변경·공작물 등에 한하여 건축허가에 따른 과도한 규제와 불편을 해소시키고 행정상의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건축주의 경비와 시간을 절감하고자 「건축신고」로서 건축허가를 대신할 수 있게 한 규정이다.

나. 신고로서 건축허가를 대신하는 건축물 (法 제14조, 순 제11조)

-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재축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물을 제외한다.
- (3)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대수선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것
 - (가) 내력벽의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
 - (나) 기둥·보·지붕틀을 각각 3개 이상 수선하는 것
 - (다)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것
 - (라)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
- (4) 기타 소규모 건축물로서 다음에 정하는 건축물
 - (가)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 (나)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 (다)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규모가 주위환경이나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지역,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
- (마) 농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읍·면지역(시장 또는 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을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작물재배사

〈표1-2〉 건축허가 및 신고대상

건축허가 대상	건축신고 대상
<p>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p> <p>※ 하위군에서 상위군으로 용도변경</p> <p>※ 시·도지사의 승인대상</p> <p>(가) 층수가 21층 이상의 건축물</p> <p>(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공장을 제외한다)의 건축(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의 증축으로 인하여 층수가 21층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이상으로 되는 경우의 증축을 포함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바닥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이내의 증축·개축·재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을 제외한다. 3.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없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다음 건축물의 건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 (나) 높이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다)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규모가 주위환경·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p>(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지역,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에 한함)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내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p> <p>(마) 농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읍·면지역(시장 또는 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을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작물재배사</p>

질의·회신 숙박시설의 객실수 변경과 주요구조부 신고(건교부건축 58070-1852. 99.5.21)

질의 가. 기존 음식점 출입구(캐노피) 부분의 열손실방지를 위한 방풍실을 면적이 3㎡가 증가되는 경우 허가(신고) 여부

나. 주 계단실을 접하여 승강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 또는 대수선에 해당 여부에 해당 여부

회신 가. 건축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로서 증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

나.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의 변경은 대수선에 해당하며 신고대상임

2. 용도변경 (法 제19조, 승 제14조)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이 임의로 행해질 경우(예를 들어, 일반주거지역에 연립주택으로 허가 받아서 여관으로 사용할 경우)용도지역·지구제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방화·피난시설·주차장 확보 등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용도변경도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건축물의 사용용도·구조·방화·피난 등 기준의 적용을 비슷하게 하는 건축물 등을 9개 시설군으로 분류하여 동일 시설군 내의 상호간을 변경하거나 상위 시설군에서 하위 시설군으로 변경 등의 행위는 신고하여야 하며, 하위 시설군에서 상위 시설군으로의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허가대상 : 법 제19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나. 신고대상 : 법 제19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1) 건축물의 시설군

구분	시설군	건축물의 용도분류
1	자동차관련 시설군	자동차관련시설
2	산업 등의 시설군	가. 운수시설
		나. 창고시설
		다. 공장
		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마.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바. 묘지관련시설
3	전기통신시설군	가. 방송통신시설
		나. 발전시설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위락시설
		라. 관광휴게시설
5	영업시설군	가. 판매시설
		나. 운동시설
		다. 숙박시설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가. 의료시설
		나. 교육연구시설
		다. 노유자시설
		라. 수련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8	주거업무시설군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
		다. 업무시설
		라. 교정 및 군사시설
9	그 밖의 시설군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장례식장

(2) 시설군중 동일한 시설군내에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가)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기재

(나) 령 별표1의 동일한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간 용도변경은 기재사항 변경 제외

질의·회신 판매시설을 위락시설로의 용도변경(건교부건축 58070-2256.99.6.16)

질의 가. 종전의 판매시설 또는 운수시설은 현행 판매 및 영업시설로 분류되는 바, 이를 위락시설 또는 숙박시설로 사용시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여부
나. 동 판매 및 영업시설을 근린생활시설로 사용시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여부

회신 가. 종전의 판매시설 또는 운수시설은 '99.5.9 시행된 개정 건축법시행령 별표 1제6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 및 영업시설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를 위락시설 또는 숙박시설로 사용은 같은 시설군내의 용도변경이므로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해야 하는 것이며,
나. 판매 및 영업시설을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은 건축법 및 관계 법령에 적합한 경우 용도변경 신고나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없이도 사용 가능한 것임

질의·회신 예식장을 주중에 근린생활시설로 사용가능 여부(건교부 해설 99. 5)

질의 예식장을 주중에 근린생활시설로 건축물대장 변경 없이도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신 건축법시행령 제14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의 변경 없이도 사용이 가능함.

질의·회신 면적 증감없이 상호 위치를 변경하는 용도변경(건교부 해설 99. 5)

질의 5층의 건축물 중 면적변경 없이 4층 부분의 위락시설을 2층으로 이동하고 2층의 근린생활시설을 4층으로 위치를 이동하는 경우 신고대상이 되는지

회신 건축법 제14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없이 변경 사용이 가능한 것이나,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은 변경하여야 함

3. 가설건축물 (法 제20조)

가설건축물이란 영구적인 건축물이 아니고, 임시 또는 일정기간 동안 건립 사용하도록 허가한 건축물을 말한다. 따라서 가설건축물에 대한 규제는 건립장소와 구조·존속기간 등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가.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일 14일전(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의 경우 7일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신청(신고)함으로써 존치기간을 연장

나. 가설건축물의 착공신고와 사용승인

건축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은 착공신고와 사용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축조신고 만으로 바로 가설건축물대장에 기록 관리한다. 계속 연장 사용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착공신고가 필요 없다.

다. 존치기간이 경과된 가설건축물의 효력

존치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건축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과 동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이나 무허가 건축물로 보아 고발은 어려울 것이다. 사법기관에서는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으로 처리된 사례가 있다.

라. 가설건축물의 허가 신고처리

허 가	신 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안의 가설 건축물 2. 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해복구용 2. 가설홍행·가설전람회용 3. 공사용 4. 건본주택 5. 도로변의 미관정비를 위한 가설점포 6. 조립식 경비용 10㎡ 이하 7. 조립식 및 외벽이 없는 자동차 차고 8. 컨테이너(임시사무실·창고·숙소) 9. 주거·상업·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어업용 비닐하우스 100㎡ 이상 10. 간이축사용 비닐하우스로서 100㎡ 이상 11. 농·어업용 고정식온실 12. 공장 안에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3. 유원지·휴양사업 지역의 한시적 관광·문화목적의 천막 14.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p>〈배제법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38조(건축물 대장) 2. 시장·공지 또는 차양시설의 경우 제46조(건축선의 지정), 제55조(건폐율) 3. 도시계획 예정도로에 건축하는 경우 제45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제46조 및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p>〈배제법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25조(공사감리) 2. 제38조~제58조(건축물대장, 대지와 도로, 구조 및 재료, 건폐율·용적률·대지의 분할제한·대지안의 공지) 3. 제60조~제62조(높이 제한) 4. 제64조(승강기) 5. 제66조~제68조(에너지이용과 폐자재활용, 기술적 기준 등)
<p>〈신청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할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 2. 별표2의 도서 3. 건축사가 도서작성 	<p>〈신청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별지 제8호서식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2. 배치도 및 평면도 3. 건축사 도서작성의무 없음

질의·회신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가능 여부 (건교부건축 58070-2106.99.6.7)

질의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경우 행정처분이 없이 존치기간 연장이 가능한지

회신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허가받지 않고 가설건축물을 건축한 것이 되어 건축법 제7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는 것이며, 적법하게 행정처분이 된 경우로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존치기간의 연장도 가능할 것임

질의·회신 인접대지에 창고용 천막의 가설건축물 건축가능 여부 (건교부건축58070-2188.99.6.12)

질의 공장내 창고용 천막의 가설건축물 설치 가능여부 및 그 건축주·인접 대지에도 축조되는지

회신 건축법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은 당해 공장의 소유자가 당해 공장 안에 설치하는 것에 한하는 것임

4. 착공신고 (法 제21조)

가. 건축주는 건축공사를 착수하기 전까지 시장 등 허가권자에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감리 의무대상 건축물의 경우 공사감리자 및 공사시공자가 그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나.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그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法 제11조제7항)

5. 건축물의 공사감리 (法 제25조)

가. 건축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 각 호에 규정된 대규모 건축물과 아파트의 공사감리에 있어서는 「건축사법」 제2조제2호에 의한 건축사보 1인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에, 토목·전기 또는 기계분야의 건축사보 1인 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감리자는 당해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서 이 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않는 경우 이를 건축주에게 통지한 후 시공자에게 시정 또는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한 경우 서면으로 당해 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공사감리자는 건축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시정 또는 재시공의 요청을 받은 후 이에 따르지 않거나 공사중지 요청을 받은 후 계속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法 제27조)

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제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무소로 등록한 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나. 가항에 의한 업무대행자의 지정, 업무범위, 업무대행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정한다.

※ 위법 건축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당해 공사감리자나 설계자가 조사·검사·확인업무를 대행할 경우 자기가 설계하고 공사감리 한 건축물에 대하여 형식적인 검사·확인이 될 수 있어 당해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나 설계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여금 동 업무를 대행토록 한 것이다.

7. 사용승인 (法 제22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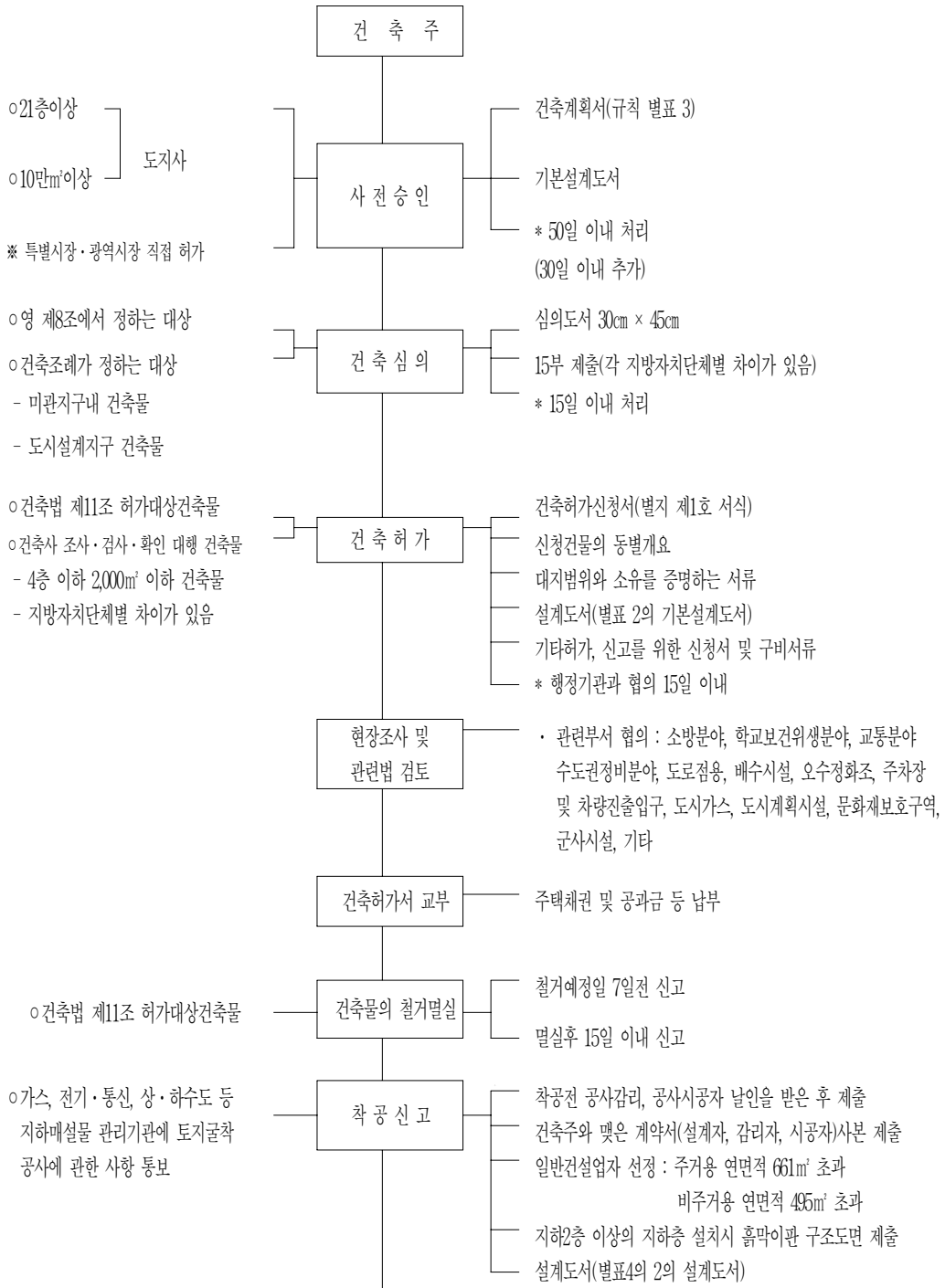
- 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공사감리 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 나. 허가권자는 사용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시·도지사가 사용승인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 건축물대장에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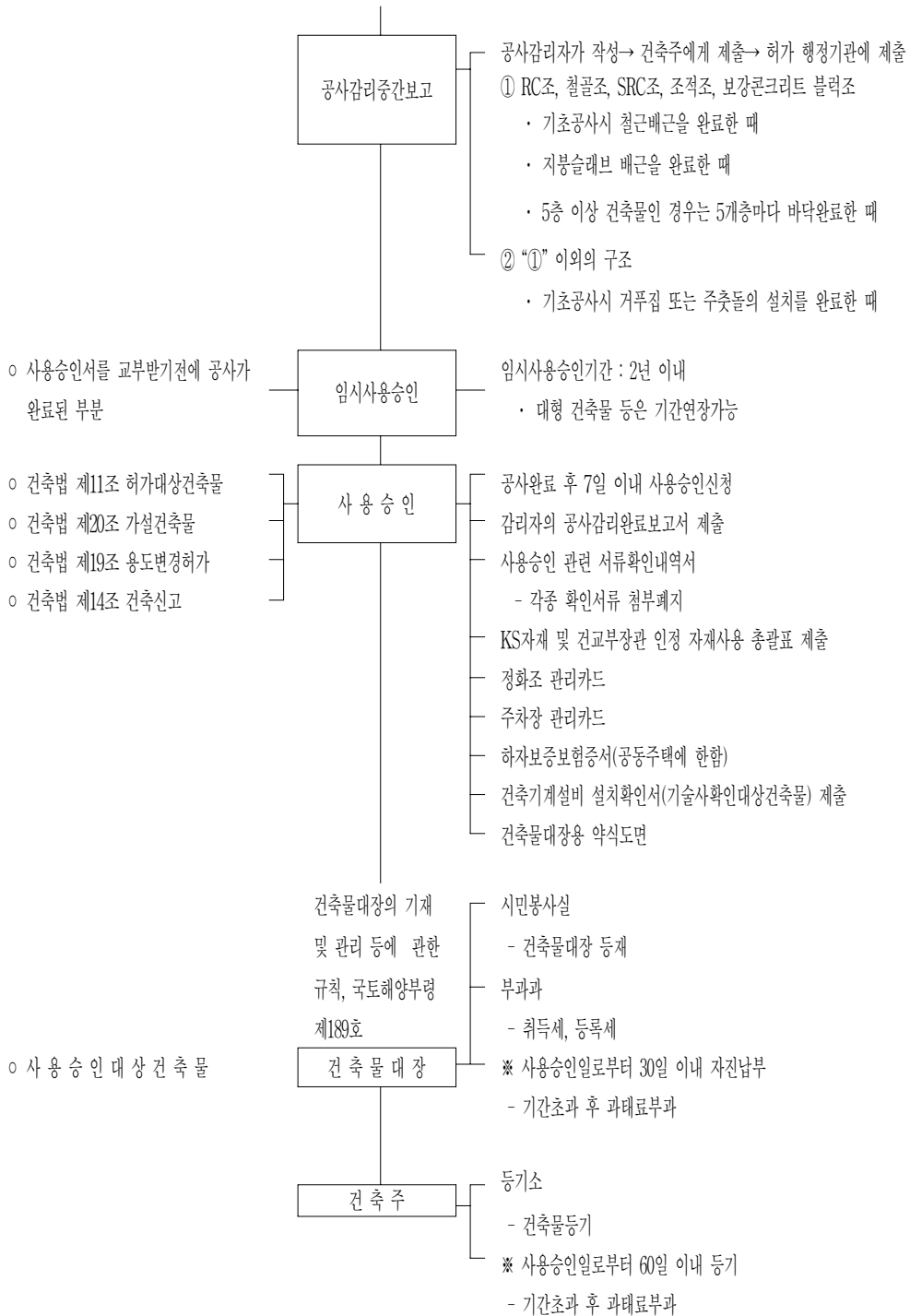
질의·회신	층별 사용승인 가능 여부 (건교부건축 58070-490.97.212)
-------	--

질의 지하2층, 지상6층 건축물에 대하여 공사가 완료된 층에 따라 층별 사용승인이 가능한지

회신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건축물의 건축공사가 완료되거나 동별 건축공사가 완료된 경우 사용승인 또는 동별 사용승인이 가능 한 것이나, 층별 사용승인은 불가한 것임

〈표1-3〉 건축행정의흐름도





제3절 건축허가 등의 동의

1. 개념

- 가. 누구나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허가청에 건축허가를 득하여야 하고 건축물이 완성될 때에도 사용하기 전에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 나. 건축에 대한 허가청(시·군·구청, 가스 허가청, 도시계획 입안권한 기관)은 소방법상 일정규모 이상을 건축허가 전 또는 사용승인 전에 소방관서등에 관련법규상 이상유무를 사전 동의하고, 관련 법규 적용이 이상 없다고 통보 받은 후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한다.
- 다. 건축 허가청이 소방관서에 사전 동의 절차를 마련한 궁극적인 취지는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 전에 소방관서장에게 허가 건축물에 대한 화재의 예방과 진압 및 피난, 인명구조등 소방안전상의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한다.
- 라. “건축허가등의 동의”제도는 건축법의 규정이 아니라 소방법에 명시된 제도이다.

2. 건축허가등의 대상범위 및 절차

가. 건축허가 등의 동의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의 허가·협의 및 사용승인(「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승인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승인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을 함에 있어서 미리 그 건축물 등의 공사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건축물 등의 대수선·증축·개축·재축 또는 용도변경의 신고를 수리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그 신고의 수리를 한 때에는 그 건축물 등의 공사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나. 동의대상 범위

- (1)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

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등을 함에 있어서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가)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이 400제곱미터(「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 등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청소년시설 및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나) 차고·주차장 또는 주차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1) 차고·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층 중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 2)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2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것
 - (다) 항공기격납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방송용 송·수신탑
 - (라)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공연장의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 (마)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위험물제조소등, 가스시설 및 지하구
- (2) 전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서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다.
- (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화기구, 누전경보기, 피난기구, 방열복·공기호흡기 및 인공소생기, 유도등 또는 유도표지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 그 특정소방대상물
 - (나)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로 소방시설등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특정소방대상물

다. 동의요구

- (1)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의 허가·협의 및 사용승인(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의 동의요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건축물 등

의 공사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이를 하여야 한다.

- (가) 동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등과 영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제조소등의 경우 :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건축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 및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하 "건축허가청"이라 한다)
 - (나) 동법 시행령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가스시설의 경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 (다) 동법 시행령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지하구의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 계획의 인가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 (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동의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건축물이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당해 행정기관에 그 동의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라. 동의요구첨부서류 및 검토사항

(1) 동의요구첨부서류

- (가)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신청서 및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 등 건축허가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 (나) 다음 각목의 설계도서
 - 1) 건축물의 단면도 및 주단면 상세도(내장재료를 명시한 것에 한한다)
 - 2) 소방시설(기계·전기분야의 시설을 말한다)의 층별 평면도 및 층별 계통도(시설별 계산서를 포함한다)

3) 창호도

(다) 소방시설 설치계획표

(라) 소방시설설계업등록증과 소방시설을 설계한 기술인력자의 기술자격증

(2) 검토사항

(가) 허가 등의 동의요구서에 건축허가신청서 사본이 첨부되어 있는지와 허가와 관련한 신청 내역 표시항목의 작성여부를 확인

(나) 소방시설설계업자가 설계하여야 할 특수장소의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영업범위에 적합한지 또는 소방시설 설계업자의 등록증 및 소방시설을 설계한 사람의 기술 자격증을 확인

(다) 소방시설 설치계획서상 해당소방시설이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의 설치대상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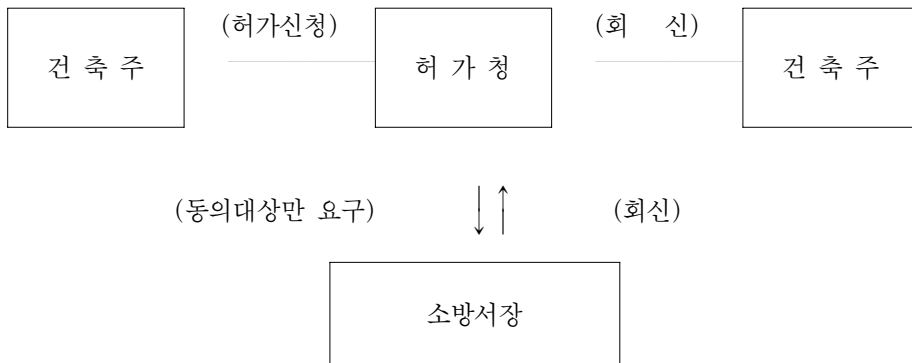
(라) 공장 등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위험물의 사용여부 등을 함께 검토

마. 동의요구 처리 및 통보

(1) 동의요구 처리기간

처리기간은 7일(허가 신청한 건축물 등의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일) 이내, 다만 보완이 필요한 경우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 건축허가동의 흐름



(3) 동의요구서 처리

- (가) 건축허가등의 동의는 건축허가청과 소방관서와의 기관간 민원협의로서 관계 서류의 보완등이 필요한 때에는 건축허가청으로 하여금 보완하도록 통보하여야하며, 민원당사자인 건축허가 신청자에게 그 서류의 보완등을 직접 요구할 수 없다.
- (나) 소방관서장은 (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요구를 하는 때에는 건축허가청에 동의 관련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 (다) 소방관서장은 건축허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를 받은 경우 그 처리결과를 건축허가등의 동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한다.

(4) 동의여부의 통보

- (가) 소방관서장은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11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를 받은 때에는 소방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처리기한내에 동의여부를 건축허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서에는 설계변경·증축등으로 인하여 소방시설의 변경·연면적의 변경 또는 건축구조의 변경등 동의내용이 달라지는 때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함과 건축허가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내용을 통보하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 (나) 공장 등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정하는 위험물의 사용여부 등을 동시에 검토하여 그에 적합한 절차를 거칠 것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다) 소방관서장은 (가)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 부동의 통보를 하는 경우 그 사유가 명확하도록 근거법령의 내용 및 부적합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 (라) 허가등의 동의를 받은 기관이 그 허가 등을 취소한 때에는 취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취소사유를 명시하여 관할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절 용어의 정의

1. 대지 (法 제2조제1항제1호)

“대지”라 함은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 다만, 시행령에서 정한 경우인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1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도 대지라고 할 수 있다. (건축법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2항 참조)

즉, 대지는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로 규정함은 1필지에 1개 건축물의 건립을 원칙으로 하여 대지를 이중으로 사용하여 건축물의 밀도 등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며, 2필지 이상의 대지라도 사용승인 신청시까지 합필할 경우이거나 합필하려고 하여도 합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2필지 이상의 토지도 대지로 인정하여 건축허가를 허용할 수 있다.

질의·회신

사용승인시 합필을 조건으로 한 허가가능 여부(건교부건축 58070-2038. 99. 6. 3)

질의

일반주거지역 안의 건축물이 있는 대지 450m²를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분할한 후, 나머지 60m² 이하 부분을 인접한 동일소유의 다른 토지와 사용승인시 지적정리(지목변경 및 합병)를 조건으로 하여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회신

'99. 5. 9부터 시행된 개정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1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사용승인시 합필 또는 분필(건축법·주차장법·지적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합필 또는 분필이 가능한 것이 전제되어야 함)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도 허가권자는 이를 하나의 대지로 보아 건축허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질의·회신

대지를 가 분할한 상태에서의 각필지별 건축가능 여부(건교부건축 58070-1773. 99. 5. 17)

질의

임야 2 이상의 필지를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이를 8개 필지로 가 분할한 상

태에서 각 필지에 100m² 이하의 건축물을 1동씩 총 6동을 건축할 경우 사용 승인 전 지적 분할을 조건으로 신고로서 건축이 가능한지

회신 '99. 2. 8 개정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1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를 받은 부분의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아 건축할 수 있는 것임

2. 건축물 (法 제2조제1항제2호)

건축물은 사람이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과 도시미관을 제공하기 때문에 용도·안전·위생·미관·피난·방화 등과 관련 있는 내용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건축물”이란 합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건축물의 정의

(가) 단순한 구조적 요건만 요구 : 1) 토지에 정착해야 하며, 2) 지붕과 기둥 또는 지붕과 벽체가 있어야 건축물이라 한다.

(나) 특별한 경우 : 3)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와 고가에 설치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창고 등.

(2) 토지에 정착

“토지에 정착한다”함은 실질적·임의적인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이동이 가능한 경우라도 실질적 이동의 실익이 없어서 상당한 기간동안 현저한 이동이 추정되지 않는 것을 뜻한다.(서울시건지 58501-01407. 97.12.31)

질의·회신 이동 가능한 매표소의 건축물 여부(건교부건축 58070-612. 99. 2. 18)

질의 유기장(놀이시설) 영업시 매표소 건축물을 이동 가능하게 설치할 경우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 보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지 또는 허가(신고)없

이 가능한지

회신 가.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지붕과 벽이 있는 것 등으로서, 실질적·임의적인 이동이 불가하거나 이동이 가능하더라도 실질적인 이동의 실익이 없어서 상당한 기간동안 현저한 이동이 추정되지 않는 것도 건축물에 해당됨.

나. 유기시설에 동 건축물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축법령상 유기장에 해당하는 위락시설로 분류되는 것으로서, 동 용도에 따른 지역·지구내 건축제한 등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규모·용도 등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회신 화물운송용 컨테이너 야적시 건축허가 여부

질의 화물터미널 부지 안에서 화물운송용 컨테이너를 동일한 장소에 장기간 야적하는 경우 불법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회신 운수시설의 부지 안에서 화물운송용으로 야적된 컨테이너는 건축법령에서 정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회신 가스저장탱크가 건축물인지 여부 (건교부건축 58507-1451. 99.4. 23)

질의 지하에 설치된 가스저장시설(저장탱크)이 건축물인지

회신 질의의 가스저장시설이 지붕과 벽체 등으로 구축된 것이라면 지하에 설치하는 창고도 건축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건축물에 해당됨

3. 건축물의 용도(法 제2조제1항제3호)

건축물의 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4. 건축설비 (法 제2조제1항제4호)

오늘날 건축물은 다양한 기능을 수용하고 사용상의 편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고, 이와 관련된 시설 역시 다양화되고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발전과정이 건축물의 위생, 안전, 방화, 피난 등의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되므로 이와 관련된 사항을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건축설비는 공적 편의시설과 개인의 편익을 위해 설치하는 사적 편의시설, 그리고 방화 및 소화설비등으로 크게 구분되며,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가스·급수·배수(配水)·배수(排水)·환기·난방·소화·배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와 굴뚝·승강기·피뢰침·국기계양대·공동시청안테나·유선방송수신시설·우편물·수취함 기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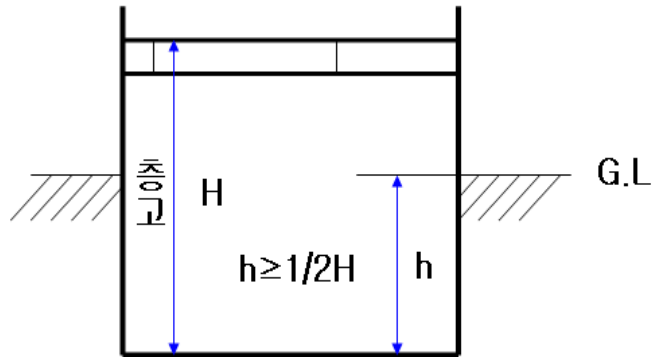
5. 지하층 (法 제2조제1항제5호)

중전 특정지역과 일정 규모이상의 건축물에는 유사시 대피를 위하여 지하층의 설치를 의무화하였으나 건축주가 자율적으로 지하층을 설치 가능하도록 '99.4.30일자 건축법시행령 개정 시 의무규정을 없애고 지하층이 주거공간임을 감안하여 지상 일부 돌출허용과 구조설비 및 피난에 관하여는 법으로 규정하며, 용적률 산정시 연면적에서 지하층 면적은 공제하므로 지하층의 판단여부에 따라 건축물의 규모가 달라지게 된다.

“지하층”이라 함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건축물의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당해 층높이의 2분의 1이상까지로 규정하여 일조·채광 및 환기 등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 (1) 지하층 기준의 변경-중전에는 다세대주택과 단독주택외 건축물의 경우 지하층고의 2/3이상이 지하에 위치하도록 기준이 되었다가 '99. 2. 8자로 모든 건축물이 지하층고의 1/2이 지하에 있을 경우 지하층으로 보도록 기준이 완화되었다. 또한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일정한 면적의 지하층을 확보토록 한 의무규정도 '99. 2. 8자 폐지하고, 건축주의 의사에 따르게 하였다.
- (2) 지하층은 대피시설로도 중요성이 크므로 설치를 권장(층수의 산정에서 제외,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외, 용적률의 산정시 연면적에서 제외)하고 있고 화재발생시 진화의 어려움과 인명피해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소방시설의 기준이 강화된다.

따라서 지하층 여부를 판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림 1) 지 하 층

질의·회신 하나의 층을 지하층과 일층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
(건교부건축 58207-1093. 93. 4. 7)

질의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의 지표면 및 도로와 고저차가 있어 하나의 층의 일부분을 지하층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을 1층으로 건축할 수 있는지

회신 하나의 층에 지하층과 1층을 함께 할 수 없는 것임.

질의·회신 경사지의 지하층 산정기준(건교부건축 58070-1021. 99.3. 22)

질의 경사지에 공동주택의 한 면이 완전히 노출되게 지하층을 설치 시 가중 평균한 값(지표면)이 2분의 1이상이 될 경우에 이를 지하층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회신 건축법령상 지하층이하 함은 당해 층의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 높이가 당해 층 높이의 2분의 1이상인 것으로서, 가중 평균한 높이가 이에 적합한 경우 한 면이 노출되더라도 지하층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임

6. 거 실 (法 제2조제1항제6호)

건축법상의 거실이란, 일반적인 주거용의 거실(Living room)이 아니라, 거주·집무·작업·집회·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모든 실(room)을 말한다. 장시간 거주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보건위생(채광·환기·방습·반자높이 등)과 방재 및 피난(내장, 비상용승강기 설치 등)을 위하여 다른 실 보다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참고」

체류기간이 짧은 현관이나 복도·계단·부속창고·기계실·화장실·욕실·다락 등은 거실이 아니다.

질의·회신 물품창고가 거실에 해당되는지 여부(건교부건축 58070-100. 99.1.12)

질의 창고형 할인매장에 있어 매장 외에 상품의 원활한 보충과 재고관리를 위한 물품창고를 건축법에 의한 거실로 보아야 하는지

회신 건축법 규정에 의한 “거실”이라 함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집무·작업·집회·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는 것인 바, 창고에서 물품의 분류·정리·관리 등을 위한 작업공간은 거실로 보아야 할 것임

질의·회신 주차장이 거실에 해당되는지 여부(건교부건축 58070-3191. 95.8. 2)

질의 지하 4층의 주차장이 거실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회신 “거실”이라 함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집무·작업·집회·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는 것인 바, 질의의 주차장은 거실로 볼 수 없는 것임

7. 주요구조부 (法 제2조제1항제7호)

주요구조부라 함은 구조상 주요 골격부분인 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하며 건축물의 안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말한다. 주요구조부는 방화적 제한을 일괄하여 사용하기 위한 용어로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않은 부분인 사이벽·사이기둥·최하층 바닥·작은보·차양·옥외계단·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은 제외한다.

즉, 간막이 등의 역할만 할 뿐인 사이벽은 건축물의 하중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내력벽에 반대되는 개념이며, “사이기둥”은 건축물의 무게를 받쳐주는 주기둥 사이에 설치되어 주기둥을 보조하는 것을 말하고, “작은보”도 역시 주된 보를 보조할 뿐 직접 건축물의 안전에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주요구조부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8. 내화구조 (승 제2조제7호)

철근콘크리트조·연와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서 건축물 자체가 불에 연소되지 않고 상당시간 동안 구조상 유해한 변형이나 재질의 변화를 일으키지 아니하는 구조 즉,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대체로 화재후에도 재사용이 가능한 정도의 구조를 말한다. 내화구조와 방화구조를 구분한 것은 건축물의 중요도에 따라 사용자재를 달리함에 따라 경제성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내화구조는 주요구조부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하고 있는데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장에서 기술하기로 한다.

질의·회신 내화구조로의 인정 여부 (건교부건축 58070-3413. 96.9. 2)

질의 내화도료가 내화구조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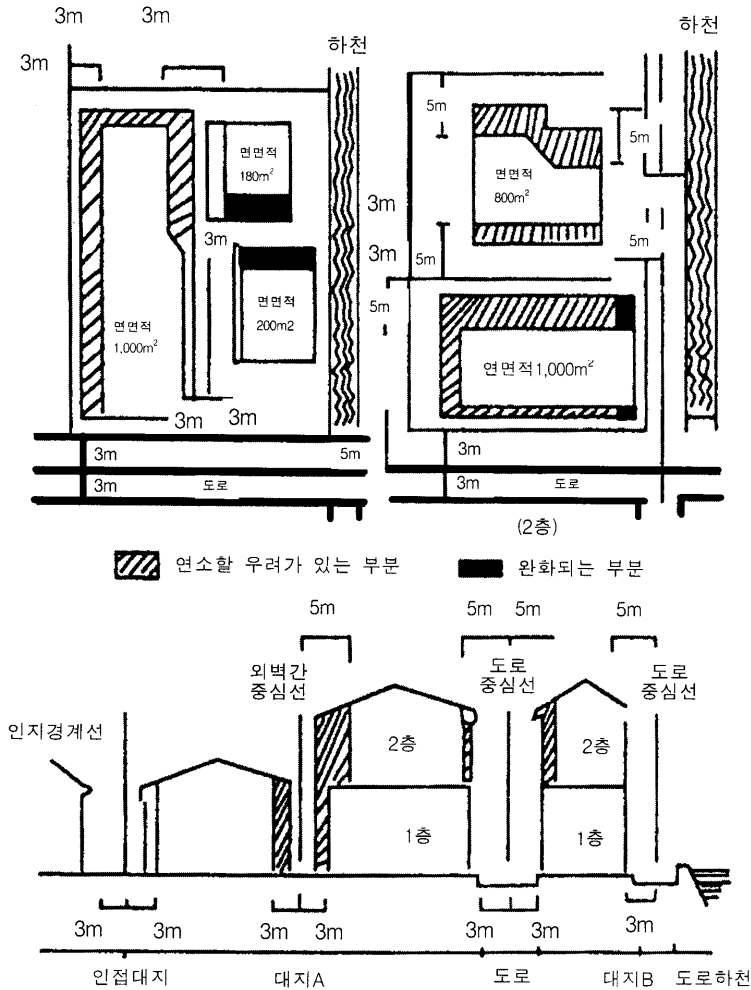
회신 내화구조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7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화재시 상당한 시간동안 구조상 유해한 변형이나 재질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은 구조를 말하는 것인 바, 질의의 사용하고자 하는 내화도료가 동규칙 제3조 및 국토해양부 고시 제560호(내화구조의지정및관리기준)의 기준에 의거 내화구조로 인정·지정받은 자재라면 동 지정받은 내용에 따라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임

9. 방화구조 (승 제2조제8호)

철망모르타르 바르기·회반죽 바르기 등 화재시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를 말한다. 방화성능이 내화구조보다 떨어지며 불에 연소되지 않도록 외부를 불연재료로 피복을 한 구조로서 대체로 화재후 재사용이 불가능한 정도의 구조이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장에서 기술하기로 한다.

10.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 (避難防火規則 제22조제2항)

인접대지 경계선·도로중심선 또는 동일한 대지에 있는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목조의 건축물은 그 외벽 및 처마밑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으로 2동 이상의 건축물(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이를 하나의 건축물로 본다) 상호의 외벽간의 중심선으로부터 1층에 있어서는 3미터 이내, 2층 이상에 있어서는 5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말한다. 그러나 공원·광장·하천의 공지나 수면 또는 내화구조의 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부분을 제외한다.



(그림 2)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

11. 불연재료 (令 제2조제10호, 避難防火規則 제6조)

불연재료·준불연재료·난연재료는 불에 잘 타지 않는 재료를 의미하며 건축물의 방화상 필요한 부분인 천정·벽의 내장·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 등에 주로 사용되며, 건축물의 중요도에 따라 사용하는 재료를 다르게 하여 경제적인 건축에 기인하기 위함이다.

불연재료는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1) 콘크리트조·석재·벽돌·기와·철강·알루미늄·유리·시멘트모르타르·회. 이 경우 시멘트모르타르·회 등을 미장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규정에 의한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정한 두께 이상일 것
- (2)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시험 결과 질량감소율 등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
- (3) 그 밖에 제1호와 유사한 불연성의 재료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재료. 다만 (1)의 재료와 불연성재료가 복합으로 구성된 경우 제외

12. 준 불연재료(令 제2조제11호, 避難防火規則 제7조)

불연재료에 준하는 방화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가스 유해성, 열방출량 등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

13. 난연재료 (令 제2조제9호, 避難防火規則 제5조)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가스 유해성, 열방출량 등이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난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

14. 건 축 (法 제2조제1항제8호)

건축이란 건축물을 짓는 “행위”를 의미하며 그 행위는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밖에 대수선, 용도변경, 공작물의 축조 등의 행위도 넓은 의미

로는 포함되는데 예를 들어 법 제19조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변경도 건축물의 건축으로 본다.

그러나 “건축”이라는 용어의 정의는 건축법 제2조제9호에 의하여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하는 것만을 의미하고, 법 제19조 및 령 제14조에 의한 “용도변경”의 경우 건축과 같이 건축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며 본래 “건축”의 의미와는 구별된다 할 것이다. 건축행위를 여러 종류로 구분하는 것은 건축법의 적용시 기존 건축물의 기득권을 인정하는 범위(예:개축, 재축)내에서 관련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하기 위함이다.

(1) 신 축 (승 제2조제1호)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 2동의 건축물을 철거하여 그 면적과 동일하게 1동으로 건축할 경우 개축이 아니고 신축에 해당됨

(2) 증 축 (승 제2조제2호)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즉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기존 건축물에 붙여서 건축하거나 별동으로 건축하거나 관계없이 증축이 되고,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담장을 축조하는 것도 증축에 해당된다.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은 건축물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질의·회신 평지붕 형태를 경사지붕으로의 수선·시공(건교부건축 01254-217. 92.1.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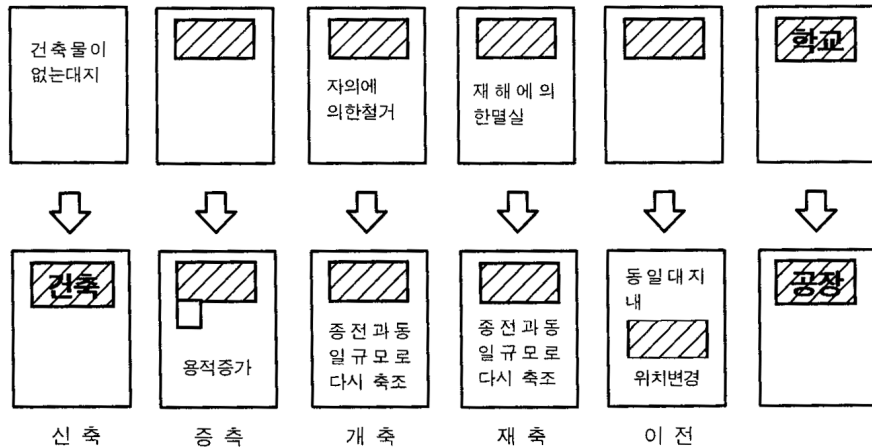
질의 기존 건축물이 노후하여 누수현상이 심하여 이를 원천적으로 처리하고자 평지붕 형태를 경사지붕 형태로 수선·시공한 경우 증축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증축에 해당되는 것임

(3) 개 축 (습 제2조제3호, 철거가 선행)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3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건축물의 위치변경·구조는 문제되지 않고 건물의 규모가 종전과 같거나 적으면 개축이 되는데 기존 건축물의 전부가 철거 또는 멸실된 경우(대지에 건축물이 없음) 종전 건물의 규모를 초과하여 건축하면 신축이 되고, 기존 건축물의 일부가 철거 또는 멸실된 경우(대지에 건축물이 있음) 종전의 건물의 규모를 초과하여 건축하면 증축이 된다.



(그림 3) 건 축 행 위

(4) 재 축 (습 제2조제4호, 기존 건축물의 기득권 보호)

건축물이 천재·지변 기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개축과 재축은 다같이 다시 축조하는 점은 같으나, 개축은 자의 또는 기타 행위에 의하여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시 축조하는 데 반하여 재축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점이 다르다.

(5) 이전 (승 제2조제5호)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동일한 대지안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 「기존건물규모 범위」라 함은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가 종전과 동일한 것을 뜻함.

15. 대수선 (法 제2조제1항제9호, 승 제3조의2)

주요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이나 건축물 외부형태의 변경으로서 건축물의 기둥·보·내력벽·주계단 등의 구조 또는 외부형태를 수선·변경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하며, 대수선의 범위를 정하고 이를 허가대상 행위로 규정한 것은 준공후 임의로 수선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수선할 때 구조의 안전이나 형태변경 등이 적법한지를 검토함으로써 준공 후에도 건물 상태를 적법하게 관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표 1-4〉 대수선의 기준

구 분 (법)	대 수 선 의 범 위 (령 제3조의2)
(1)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변경 또는 수선	다음을 증설·해체하거나 해당규모를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가)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나) 기둥을 3개 이상 (다) 보를 3개 이상 (라) 지붕틀을 3개 이상 (마)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 (바)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사)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경계벽
(2) 건축물의 외부형태의 변경	(가)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나 담장을 변경하는 것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과 〈표 1-4〉의 대수선에 해당되더라도 증설·해체 또는 변경행위 없이 단순히 수선만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없이 신고로써 대수선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조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건축주 스스로 건축법 제48조 규정에 의한 구조내력에는 적합하게 대수선이 되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건축주 스스로 검토하여야 하는 것이다.

〈표 1-5〉 수선과 대수선의 차이점

구분 예	내력벽 (제곱미터)	기둥 (개)	보 (개)	지붕틀 (개)	행위란별	비 고
I	25	-	2	-	수 선	2개소 이하로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을 때
II	30	-	-	-	대 수 선	한곳이라도 대수선에 해당
III	25	2	2	2	개 축	3가지 이상으로 개축에 해당

※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수선은 신고없이 임의로 할 수 있다.

16. 리모델링 (法 제2조제1항제10호, 승 제6조의3)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 또는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의 건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적합한 구조로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적율, 건축물의 높이제한,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의 기준을 100분의 12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건축조례에서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비율을 강화한 경우에는 건축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다음 각 호에 적합한지 여부 등 세부적인 판단기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가. 각 세대는 인접한 세대와 수직 및 수평방향으로 통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을 것
- 나. 구조체에서 건축설비, 내부 마감재료 및 외부 마감재료를 분리할 수 있을 것
- 다. 개별 세대 안에서 구획된 실의 크기, 개수 또는 위치 등을 변경할 수 있을 것

17. 도로 (法 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45조, 승 제28조)

건축물은 인간이 생활하는 주거공간이기 때문에 “사람과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필요로 하므로 대지는 도로에 접해야 한다. 도로의 너비는 보행과 차량통행이 가능한 너비가 4미터 이상이 되어야 하며, 또한 소방·피난·일조·급·배수·전기시설 등의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여유공간을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형적인 여건으로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한 도로나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그 너비를 완화하였고, 다중이용건축물 등

은 그 규모 및 용도에 따라 도로너비를 달리 규정하고 있다.

가.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도로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 (2)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나. 관계법령에 의해 고시된 도로

- (1)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동시에 가능한 도로

건축법 제2조제11호에서 정하는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동시에 가능한 너비 4m 이상이 통과되는 도로이어야만 한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행만 가능하거나 자동차 통행만이 가능한 도로는 건축법에 의한 도로로 보지 아니한다.

- (2) 보행만 가능한 도로

계단이나 급경사지 등의 지형적인 조건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하는 구간에 한해 도로의 너비를 3m 이상(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10m 미만인 때에는 너비 2m 이상)만 확보한다면 건축법에서 말하는 도로로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88. 2. 24. 건축법시행령 제62조제2항 규정이 신설되면서부터 이 제도를 운영해왔었는데, 그동안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치만을 지정하도록 하였으나 '95. 12. 30. 개정시에는 위치를 지정 후 반드시 공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 (3) 자동차 통행만 가능한 도로

대지에 접한 도로가 자동차 통행만 가능한 고속도로·고가도로·자동차전용도로(예: 강변도로 등) 동일 경우는 건축법에 의한 도로로 볼 수 없다. 보행이 불가능한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는 건축이 불가능하다.

다만, 위 도로 이외에 건축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도로가 별도로

접하고 있어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일조거리에 의한 높이제한(예외도 있음)이나 도로에 의한 높이제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넓은 자동차전용 도로를 기준으로 삼을 수는 있다. 그러나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에 따라 도로의 너비를 제한하는 규정을 적용시에는 도로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4) 막다른 도로(영 제3조의 3)

막다른 도로도 원칙적으로 보행과 차량의 통행이 동시에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막다른 도로는 그 길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너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표 1-6〉 막다른 도로의 기준

(단위 : 미터)

막다른 도로의 길이	도 로 의 너 비
10미만	2
10 이상 35 미만	3
35 이상	6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에서는 4)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35m 이상인 경우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가 확보되어야 하나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할 때에는 구간 너비 3m 도로만 확보할 수 있도록 되었다.

(5) 미개설된 예정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예정도로가 있다 하더라도 허가대지에 사실상 출입할 도로(주차장 해당건물은 주차통행이 가능한 도로) 또는 통로가 있다면 건축허가가 가능하다. 이때 도로에 의한 건축제한은 도시계획도로(예정도로)에 의하는 것이다. 도시계획 예정도로의 소유자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건설부건축 01254-20733. 90. 8. 11)

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한 도로

지적상 도로가 아닌 사실상의 현황도로가 건축법에 의한 도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건축주가 건축허가 신청시에 인정받고자 하는 당해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얻어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도로로 지정하고 도로대장에 기록·비치를 해야만 한다.

□ 도로와 통로의 구별

- (가) 도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든지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허가나 신고시 위치를 지정하는 것
- (나) 통로 : 상기 절차없이 다닐 수 있는 사실상 통행로로서 이러한 통로가 접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는 없다.

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도로와 건축선의 지정과의 차이점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 규정은 당초부터 도로가 없는 대지, 즉 건축이 불가능한 대지상태에서 도로법, 사도법 등(동조 동호 가목)의 절차 이외의 방법으로 도로를 지정하므로써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효과를 가지며, 건축법 제36조의 건축선 지정은 처음부터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 건축가능한 상태이나, 건축법에서 정한 소요도로 너비에 미달한 상태에서 통행공간의 확보를 목적으로 건축선을 지정하는 것으로 도로의 지정과는 다르게 해석해야 할 것이다.

질의·회신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도로에 건축허가 여부 (건교부건축 58070-1694. 99. 5. 11)

질의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 당해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지 인정여부 및 이에 따른 건축허가 가능 여부

회신 당해 건축물의 용도에 특성상 자동차가 필요치 아니하는 등 주차장법령에 적합한 경우로서 사람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라면 자동차의 통행은 불가능하더라도 허가권자가 판단하여 건축허가를 할 수도 있음.

질의·회신 건축허가시 지정된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재동의 여부 (건교부건축 58070-2953. 95. 7. 19)

질의 건축법 제2조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시 지정된 도로의 경우 동도로를 이용하여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이해 관계인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신 질의의 도로가 건축법 제2조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보아 인접 대지에서 건축허가를 받았다면 다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임

판례 폭 4m 이상인 사실상의 도로가 구 건축법상의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 94. 1. 28. 93누20023)

1975. 12. 31 법률 제2852호 건축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서 제2조제15호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동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도로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전의 건축법(1967. 3. 30 법률 제1942호) 제2조제15호는 “도로”라 함은 폭 4m 이상의 도로와 다음에 제기하는 것의 하나에 해당하는 예정도로로서 폭 4m 이상의 것을 말한다. 사실상의 도로가 그 폭이 4m 이상으로서 위 1975. 12. 31 법률 제2852호 시행일 전에 이미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었다면 이는 건축법상의 도로에 해당한다.

18. 부속용도 (승 제2조제13호)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 (1) 건축물의 설비, 대피 및 위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 (2) 사무·작업·집회·물품저장·주차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 (3) 구내식당·직장보육시설·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지시설 및 구내소각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 (4) 관계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

부속용도는 주용도 운영상 필요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용도로서 주용도 중심으로 판

단하여야 한다. 주용도의 건축물이 허용되면 부속되는 용도도 건축이 허용되어야 함은 당연하며, 부속용도를 주용도와 분리하여 별도의 용도로 용도제한을 적용하여서는 안 된다.

19. 설계도서 (法 제2조제14호)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공사용의 도면과 구조계산서 및 시방서, 건축설비계산 관계서류, 토질 및 지질관계서류, 기타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표1-7참조)

〈표 1-7〉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

도서의 종류	도서의 축척	표시하여야 할 사항
건축계획서	임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요(위치·대지면적 등) 2. 지역·지구 및 도시계획사항 3. 건축물의 규모(건축면적·연면적·높이·층수 등) 4. 건축물의 용도별 면적 5. 주차장규모 6. 에너지 절약 계획서(해당건축물에 한함) 7. 노인 및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계획서(관계법령에 의거 설치의무가 있는 경우에 한함)
배치도	임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축척 및 방위 2. 대지에 접한 도로의 길이 및 너비 3. 대지의 종·횡단면도 4.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거리 5. 주차동선 및 옥외주차계획 6. 공개공지 및 조경계획
평면도	임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층 및 기준층 평면도 2. 기둥·벽·창문 등의 위치 3. 방화구획 및 방화문의 위치 4. 복도 및 계단의 위치 5. 승강기의 위치
입면도	임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면 이상의 입면계획 2. 외부마감재료
단면도	임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종·횡 단면도. 2. 건축물의 높이, 각층의 높이 및 반자높이

도서의 종류	도서의 축척	표시하여야 할 사항
구조도 (구조안전 확인 또는 내진설계대상 건축물)	임 의	1.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면 2. 주요부분의 상세도면 3. 구조안전확인서
구조계산서 (구조안전 확인 또는 내진설계대상 건축물)	임 의	1.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응력 및 단면 산정 과정 2. 내진설계의 내용(지진에 대한 안전 여부 확인 대상 건축물)
시방서	임 의	1. 시방내용(국토해양부장관이 작성한 표준시방서에 없는 공법인 경우에 한한다) 2. 흠막이공법 및 도면
실내마감도	임 의	벽 및 반자의 마감의 종류
단 면 도	임 의	1. 종·횡 단면도. 2. 건축물의 높이, 각층의 높이 및 반자높이
소방설비도	임 의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 관서의 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축물의 해당소방 관련 설비
건축설비도	임 의	냉·난방설비, 위생설비, 환경설비, 전기설비, 통신설비, 승 강설비 등 건축설비
토지굴착 및 옹벽도	임 의	1. 지하매설구조물 현황 2. 흠막이 구조(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3. 단면상세 4. 옹벽구조

20. 다중이용 건축물(승 제5조제4항제4호)

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및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다. 다중이용 건축물의 법적 강화사항

- (1) 설계시 구조계산은 건축구조기술사가 하여야 함
- (2) 건축허가시 건축심의를 받아야 함(구조·피난·방화 등)
- (3) 공사감리를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감리전문회사
- (4) 건축물 유지·관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관리

※ 건축물의 용도분류

(령 [별표 1] 개정 2010.8.17)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보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역 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을 말한다.

- (1) 학생 또는 직장인들의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 (2)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것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1)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층 이하(지하층 제외)일 것. 다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의 합계가 660제

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 관

2. 공동주택

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 파 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보며, 지하주차장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한다)

라. 기 숙 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슈퍼마켓·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류·의료기기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다. 이용원·미용원·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외한다)
- 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조산원 및 안마원
- 마.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바. 지역자치센터·파출소·지구대·소방서·우체국·방송국·보건소·공공도서관·지역의료보험조합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사. 마을회관·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판장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아.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자.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 차.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배관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가. 일반음식점, 기원
- 나.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다. 서점으로서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라. 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물놀이형 시설(「관광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의 대상이 되는 물놀이형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에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마.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際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바.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의 소개업소, 출판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사. 제조업소·수리점·세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
 - (1)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 (2)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신고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 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로서 같은 건축물에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자. 사진관·표구점·학원(동일 건축물에 당해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하며, 자동차·무도학원을 제외), 직업훈련소(동일 건축물에 그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말하되, 운전·장비 관련 직업훈련소 제외)·장 의사·동물병원·독서실·총포판매사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차. 단란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 카. 의약품 판매소, 의료기기 판매소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타.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
- 파. 고시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이하 같다)으로서 같

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5. 문화 및 집회시설

- 가. 공연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나. 집회장(예식장·공회당·회의장·마권장의 발매소·마권전화투표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다. 관람장(경마장·경륜장·경정장·자동차경기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체육관·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 라. 전시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산업전시관·박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마. 동·식물원(동물원·식물원·수족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6. 종교시설

- 가. 종교집회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나. 종교집회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설치하는 봉안당

7. 판매시설

- 가. 도매시장(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대형점·백화점 및 쇼핑센터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하며 그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 다. 상점(상점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 (1)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용도(서점은 제외)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8. 운수시설

-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 나. 철도시설
- 다. 공항시설
- 라. 항만시설

9. 의료시설

- 가. 병원(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말한다)
- 나. 격리병원(전염병원·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10.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가. 학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 나. 교육원(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 다.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관련 직업훈련소를 제외한다)
- 라.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을 제외한다)
-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 바. 도서관

11. 노유자시설

- 가. 아동관련시설(아동복지시설·영유아보육시설·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단독주택·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나.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12. 수련시설

- 가.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청소년특화시설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말한다)

- 나.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원·청소년야영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13. 운동시설

- 가. 탁구장·체육도장·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물놀이형 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나.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다. 운동장(육상·구기·볼링·수영·스케이트·롤러스케이트·승마·사격·궁도·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14. 업무시설

- 가. 공공업무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나. 일반업무시설 : 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오피스텔(업무를 주로하는 건축물이 고 분양 또는 임대하는 구획에서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5. 숙박시설

- 가. 일반숙박시설(호텔·여관 및 여인숙)
-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수상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가족호텔·휴양콘도미니엄)
- 다. 고시원(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16. 위락시설

- 가.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나. 유흥주점이나 이와 유사한 것
- 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제2종 근린생활 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라. 무도장과 무도학원
- 마. 카지노영업소

17.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등을 포함)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18.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일반창고와 냉장·냉동창고를 포함한다)
- 나. 하역장
- 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 라. 집배송 시설

19.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 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총포·도검·화약류 등단속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하여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자가발전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에 쓰이는 저장시설을 제외한다.

- 가.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판매소

예방실무

- 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 다.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 라.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 마.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
- 바. 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 사. 도료류 판매소
- 아. 도시가스 제조시설
- 자. 화약류 저장소
- 차. 기타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것

20. 자동차관련시설(건설기계관련시설을 포함한다)

- 가. 주차장
- 나. 세차장
- 다. 폐차장
- 라. 검사장
- 마. 매매장
- 바. 정비공장
- 사.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운전 및 정비관련 직업훈련시설을 포함한다)
- 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차고 및 주기장

21.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 가.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 나. 가축시설(가축용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자, 가축용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사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다. 도축장
- 라. 도계장
- 마. 작물재배사

- 바. 종묘배양시설
- 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아. 식물과 관련된 마목 내지 사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동·식물원을 제외)

22.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 가. 분뇨처리시설
- 나. 고물상
- 다.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감량화시설

23. 교정 및 군사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가.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를 말한다)
- 나.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소,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 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 라. 국방·군사시설

24.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방송국(방송프로그램 제작시설 및 송신·수신 중계시설을 포함한다)
- 나. 전신전화국
- 다. 촬영소
- 라. 통신용 시설
-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25. 발전시설

발전소(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한다)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26. 묘지관련시설

- 가. 화장장
- 나.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다.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27. 관광휴게시설

- 가. 야외음악당
- 나. 야외극장
- 다. 어린이회관
- 라. 관망탑
- 마. 휴게소
- 바.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28.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표 1-8〉 지역·지구·구역의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 지 역

지 역		지 정 목 적	
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1종 전용주거지역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2종 전용주거지역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일반주거지역	1종 일반주거지역	저층주택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2종 일반주거지역	중층주택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3종 일반주거지역	중고층주택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준주거지역		주거기능을 위주로 일부 상업·업무기능 보완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도심·부도심의 상업, 업무기능의 확충
	일반상업지역		일반적인 상업, 업무기능 담당
	근린상업지역		근린지역의 일용품 및 서비스 공급
	유통상업지역		도시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 증진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중화학공업, 공해성공업 수용
	일반공업지역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
	준공업지역		경공업, 기타공업의 수용 + 주거기능보완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수림, 녹지의 보전
	생산녹지지역		농업적 생산을 위한 개발유보
	자연녹지지역		녹지공간의 제한적 개발

나. 지구

지 구		지 정 목 적
경 관 지 구		도시 경관을 보호·형성
미 관 지 구	중심지 미관지구	토지의 이용도가 극히 높은 지역 미관 유지·관리
	역사문화 미관지구	사적지·전통건물등의 미관 유지·관리
	일반 미관지구	중심미관지구 및 역사문화미관지구이외의 지역 유지·관리
고 도 지 구	최저 고도지구	도시의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건축물 높이 최고(최저)한도 이용
	최고 고도지구	
방 화 지 구		도시의 화재 위험을 예방
보 존 지 구	문화자원보존지구	문화재와 문화재 보존 가치가 큰지역 보호·보존
	중요시설물보존지구	국방상 중요시설물 보호·보존
	생태계보존지구	동식물 서식처등 생태적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보존
방재지구		풍수해, 산사태 지반등의 붕괴등 재해예방
시 설 보 호 지 구	학교시설보호지구	교육환경의 보호·유지
	공용시설보호지구	공용시설보호 및 공공업무기능의 효율화
	항만시설보호지구	항만기능의 효율화 및 항만시설 관리·운영
	공항시설보호지구	공항시설보호와 항공기 안전 운항
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	녹지지역안의 취락 정비
	집단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 정비
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을 집중적 개발 정비
특정용도제한지구		주거·청소년 보호 등을 위한 유흥시설 등의 입지제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구	아파트 지구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에 의한 아파트 집단적 건설·관리
	위락지구	위락시설의 집단화로 다른지역의 환경보호

다. 구역

구 역	지 정 목 적
개 발 제 한 구 역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보전,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
시 가 화 조 정 구 역	도시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 도시의 계획적, 단계적인 개발도모

제2장 면적·높이·층수 등의 산정 및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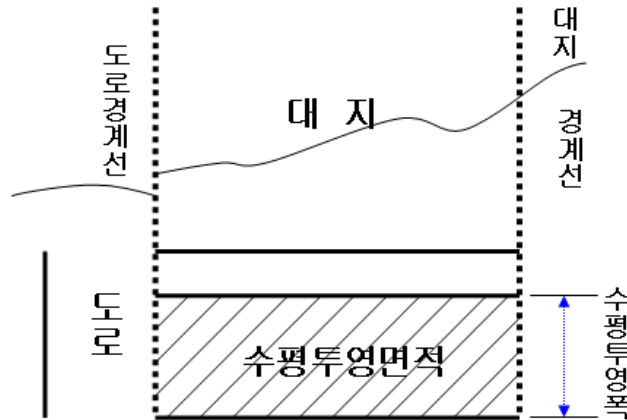
제1절 면적의 산정 및 제한

1. 대지면적 (令 제119조제1항제1호)

대지면적은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한다. 즉, 대지의 표면이 그림과 같이 경사져 있는 경우 그 표면에 따른 면적이 아니라 수평면에 투영한 면적으로 하며, 형질변경을 해도 면적에는 무관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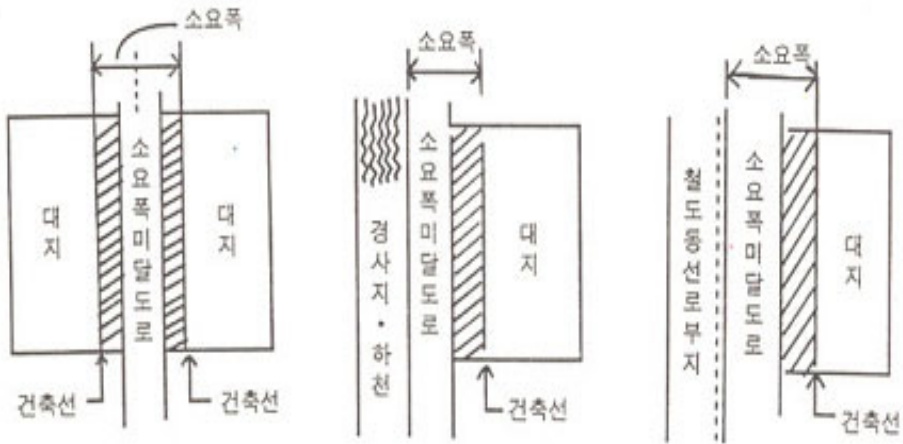
그러나 다음 (1), (2)의 경우와 같이 대지안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 (1) 소요 너비미달 도로의 건축선과 도로 경계선 사이의 부분은 다음 그림과 같이 대지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法 제44조)



(그림 4) 대지면적의 산정방법(1)

소요너비(통과도로는 폭 4미터 이상, 막다른 도로는 폭 2~6미터 이상)에 미달되는 너비의 도로 중 당해 도로의 양쪽에 대지가 있는 경우 (A)에는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당해 소요너비 1/2에 상당하는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하고 이 건축선과 도로와의 사이에 대지의 면적(빗금친 부분)은 건축법상 대지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A) 그림

(B) 그림

(C) 그림

(그림 5) 대지면적의 산정방법(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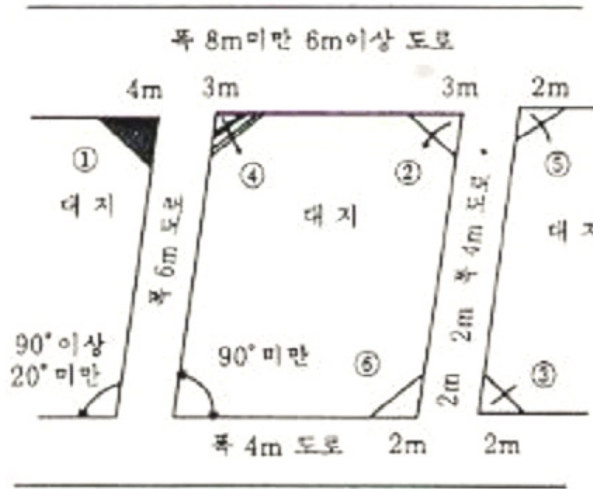
한편, 소요너비에 미달되는 너비의 도로 중 당해 도로의 반대 측에 하천, 경사지(B), 철도 등 선로부지(C)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에 당해 하천, 경사지, 철도 등 선로부지등이 있는 측 도로경계선에서 소요너비(통과 도로는 폭 4미터, 막다른 도로는 2~6미터)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고 이 건축선과 도로와의 사이의 대지면적(빗금친 부분)은 건축법상 대지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도로 너비 8미터 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로서 가각정리 되는 부분의 면적은 다음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지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승 제31조)

〈표 2-1〉 가각정리 기준

단위 : 미터

도로의 교차각	교차되는 도로의 폭	당해 도로의 너비	
		6이상 8미만	4이상 6미만
90° 미만	6 이상 8 미만	4 ①	3 ②
	4 이상 6 미만	3 ②	2 ③
90° 이상 120° 미만	6 이상 8 미만	3 ④	2 ⑤
	4 이상 6 미만	2 ⑤	2 ⑥



(그림 6) 가각정리의 예시

(3)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法 제44조, 令 제28조)

- (가)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을 도로(자동차 전용도로 제외)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와 건축물의 주변에 광장, 공원, 유원지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나)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공장은 3천)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참고」

토지면적과 대지면적

- 토지대장 및 토지 등기등본은 지적법상의 1필지의 토지면적을 나타냄
- 건축물관리대장상의 대지면적은 건축허가시 건축법에 의한 건축선 후퇴 부분 등을 제외한 건폐율의 산정을 위한 순수한 면적을 말함

2. 건축면적 (令 제119조제1항제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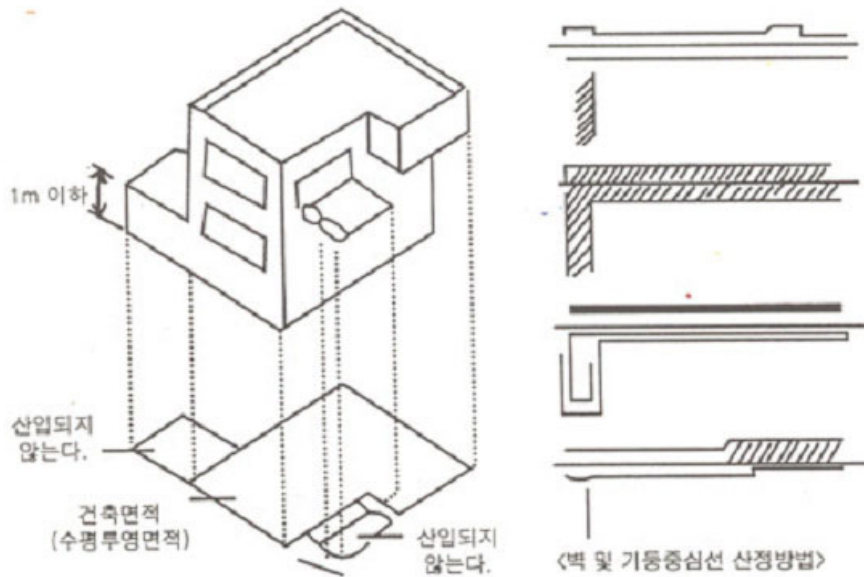
건축면적이란 건축물의 대지상의 점유면적(수평투영면적)으로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

만,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중 내측 내력 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다.

건축면적은 주로 건축면적과 대지면적의 비율 즉, 공지를 확보하기 위한 건폐율 등을 규정할 목적으로 정의된 것이므로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이나, 처마, 차양, 부연 등과 같이 대지의 부분을 완전히 점유하지 않아 공지확보(일조, 통풍, 화재시 연소 차단, 소화, 피난상 유효한 공간확보 등)에 비교적 영향이 적은 것은 건축면적 산정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한다.

〈표 2-2〉 건축면적 산정제외 기준

건 축 물 의 부 분	건축면적에서 제외되는 부분
(1) 지표면 부분	지표면상 1미터이하에 해당되는 부분
(2) 처마, 차양, 부연 등 외벽중심선에서 1미터 이상 돌출한 부분	그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의 옥외 쪽의 부분
(3) 다중이용업소 (2004.5.29. 이전 것에 한함)	비상구에 연결된 폭 2미터 이하 옥외피난계단
(4) 기타	지상층의 일반인이나 차량의 통행통로, 지하주차장 경사로,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출입구 너비에 상당하는 규모의 부분을 말한다), 생활폐기물 보관함(음식물쓰레기, 의류 등의 수거함을 말한다. 이하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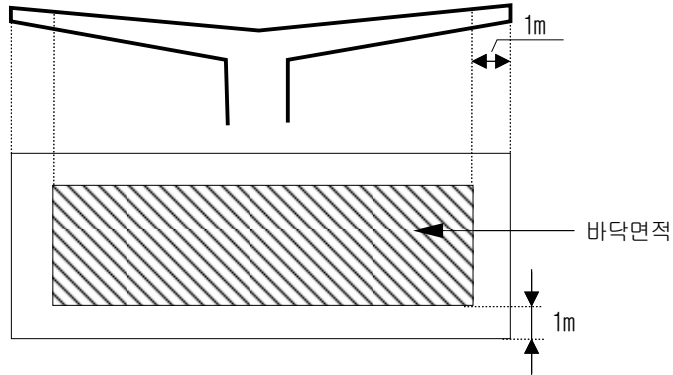
(그림 7) 건축면적의 산정방법

3. 바닥면적 (令 제119조제1항제3호)

바닥면적의 의미는 건축물 각 층 단위의 순수 사용면적을 나타낼 때 쓰이는 용어로서 측정목적은 바닥면적의 크고 작음에 따라 건축물의 도로, 방화, 피난, 설비 등의 기준을 강화하고자 규정하고 있다.

바닥면적이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 (1)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은 바닥면적에 포함되고 1미터 후퇴한 선 밖의 부분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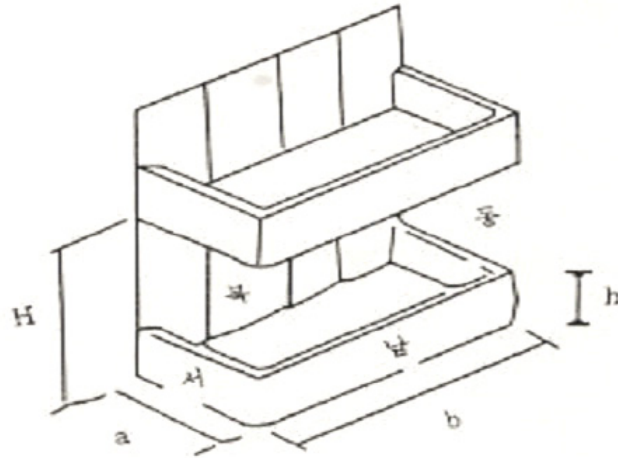
(그림 8)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방법

- (2) 건축물의 노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에 관계없이 노대 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 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주요 채광방향의 벽면에 있는 노대 등의 난간의 바깥부분에 간이 화단을 노대 등의 면적의 100분의 15이상 설치한 경우에는 기둥 또는 내력벽의 설치여부와 관계없이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2미터를 곱한 값)을 공제한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그림9의 경우 $a \times b - b \times 1.5 =$ 바닥면적 산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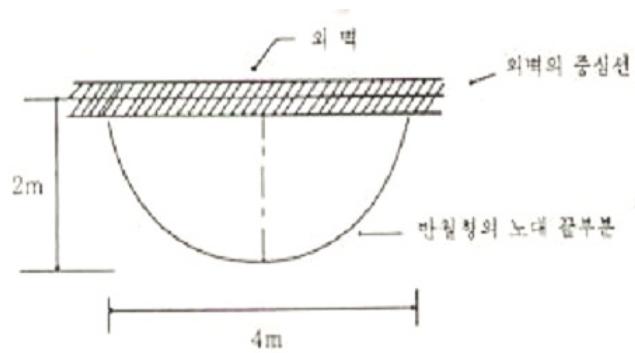
그림 10에서 중심선으로부터 노대 끝부분까지의 면적은 $2^2 \times 3.14 \times 1/2 = 6.28$ (제곱미터)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4미터)에 1.5미터를 곱한 값 $4 \times 1.5 = 6$ (제곱미터)

따라서 6.28 제곱미터 - 6 제곱미터 = 0.28 제곱미터

즉, 이 경우에는 0.28 제곱미터만 그 층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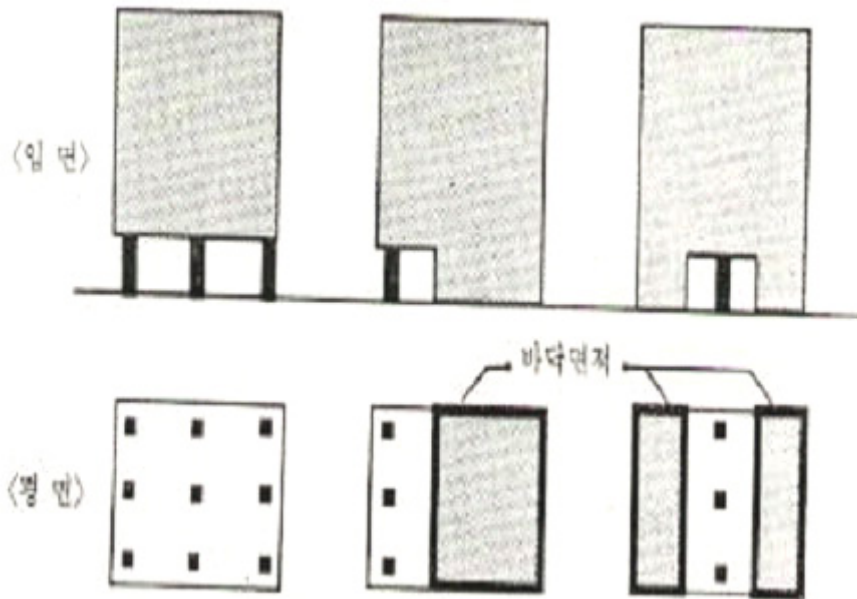


(그림 9) 노대등의 바닥면적 산정방법(1)



(그림 10) 노대등의 바닥면적 산정방법(2)

- (3)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당해층의 바닥면에서 위층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에 한한다)의 부분은 당해 피로티 부분이 공중의 통행 또는 차량의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이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림 11) 피로티의 바닥면적 산정방법

(4) 기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부분

- (가) 승강기탑·계단탑·장식탑·다락(층고가 1.5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다스트슈트·설비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나) 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기름탱크·냉각탑·정화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설치를 위한 구조물
- (다)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어린이놀이터·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
- (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1.5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 (마)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미관 향상, 열의 손실 방지 등을 위하여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 등을 설치하는 부분

4. 연면적 (令 제119조제1항제4호)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 다만, 용적률의 산정에 있어서는 지하층의 면적과 지상층의 당해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주차장 등에 사용되는 면적 및 주민공동시설의 면적,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의 면적은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건축물	<p>1m미만 1m미만 2층 1층</p>	<p>1m이상 1m미만 1m이상 2층 1층</p>	<p>1m미만 1m이상 1m이하 1층 지하층</p>
건축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A+B	A+B	A+B

(그림 12) 면적 산정방법 예시

5. 건폐율 (法 제55조)

건폐율 규정은 쾌적한 환경과 보건성의 유지를 위한 공지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수

예 방 실 무

평적 규제로서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의 비율을 말한다.

$$\text{건폐율}(\%) = (\text{건축면적} / \text{대지면적}) \times 100$$

〈표 2-3〉 지역별 건폐율 기준 및 지정범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역 별	최 대 한 도	지 역 구 분	지 정 범 위
주거지역	50/100 이하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50/100 이하 60/100 이하 70/100 이하
상업지역	90/100 이하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90/100 이하 80/100 이하 70/100 이하 80/100이하
공업지역	70/100 이하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70/100 이하 70/100 이하 70/100 이하 * 산업입지개발법의 산업단지는 80/100이하
녹지지역	20/100 이하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20/100 이하 20/100 이하 20/100 이하 * 자연취락지구는 40/100이하
기 타	60/100 이하	지역지정 없는 지역 기타지역	60/100 이하 * 산업단지는 80/100이하

※ 일반주거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구분하여 조례로 정함

6. 용적률 (法 56조)

용적률은 지역의 건축밀도 및 높이의 규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수직적 규제로서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을 말한다.

즉, 용적률(%) =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대지면적) × 100

※ 단, 용적률의 산정에 있어서 지하층의 면적과 지상층의 주차용(당해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제외한다.

〈표 2-4〉 지역별 용적률 기준 및 지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 역 별	최 대 한 도	지 역 구 분	지 정 범 위
주거지역	500% 이하	전용주거지역(제1종) 일반주거지역(제1종) 준주거지역	50%~100% 이하 100%~ 200% 이하 200%~ 500% 이하
상업지역	1,500% 이하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400%~ 1,500% 이하 300%~ 1,300% 이하 200%~ 900% 이하 200%~ 1,100% 이하
공업지역	400% 이하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150%~ 300% 이하 200%~ 350% 이하 200%~ 400% 이하
녹지지역	100% 이하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50%~ 80% 이하 50%~ 100% 이하 50%~ 100% 이하
기 타	200% 이하		200%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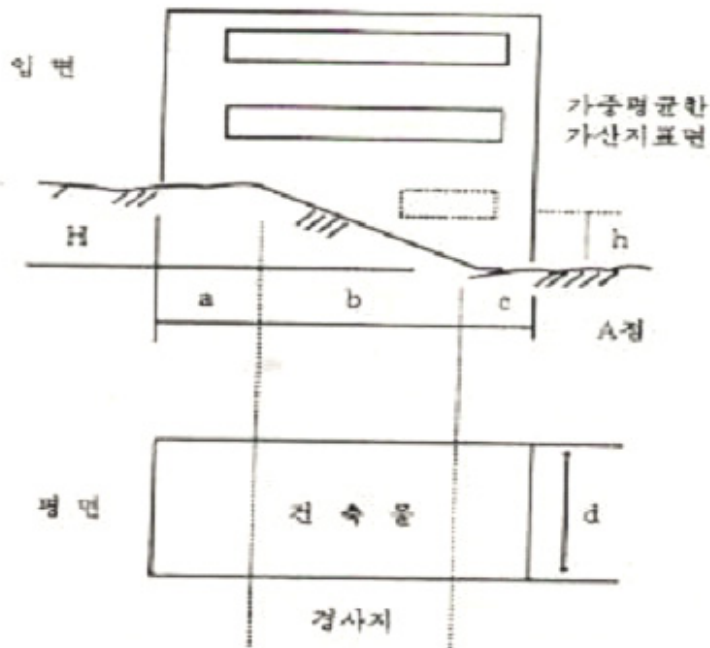
※ 일반주거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구분하여 조례로 정함.

제2절 높이의 산정 및 제한

1. 지표면 (승 제119조제2항)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을 경우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당해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 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단,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은 경우에는 당해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한다. 지표면은 건축물의 높이·처마높이·지상층과 지하층의 구분·건축면적 산정시 제외되는 면적(지표면상 1미터 이하의 부분) 등의 산정기준이 된다.



(그림 13) 지표면의 산정

위 그림에서 가중 평균한 가상 지표면 h

$$h = \frac{dH + 2(aH + \frac{bH}{2})}{2(a + b + c + d)} \quad ※ \text{지중벽면적} \div \text{밑둘레} = \text{가상지표면}$$

예를 들어 그림 13에서 a=10미터, b=6미터, c=4미터, d=10미터, H=3미터 라 할 때 가상 지표면 h는

$$h = \frac{(10 \times 3) + 2(10 \times 3 + \frac{6 \times 3}{2})}{2(10 + 6 + 4 + 10)} = 1.8m$$

따라서 지표면은 A 점에서 1.8미터 올라온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본다.

2. 높이 (승 제119조제1항제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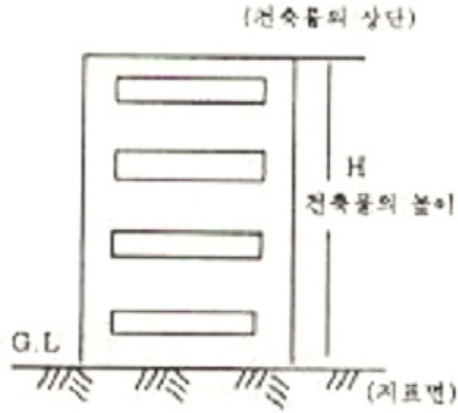
가. 원칙

건축물의 높이산정의 목적은 건축물이 전면도로의 너비에 비하여 높게 건축되면 도시미관, 개방감, 일조 등에 문제가 있으므로 도로 중심선 및 지표면 등을 기준으로 하여 높이를 산정하고, 특히 공동주택은 일조권 확보를 위해 다른 건축물보다 높이제한을 강화하고 있으며 그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건축물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당해 건축물 상단까지의 높이로 하되 건축물의 1층 전체에 피로티(건축물 사용을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기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로구역 단위로 한 높이 제한 및 공동주택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적용시 예는 피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나. 허가권자가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단위로하여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지정·공고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의 높이로 한다. 다만, 전면도로가 다음의 (1) 또는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 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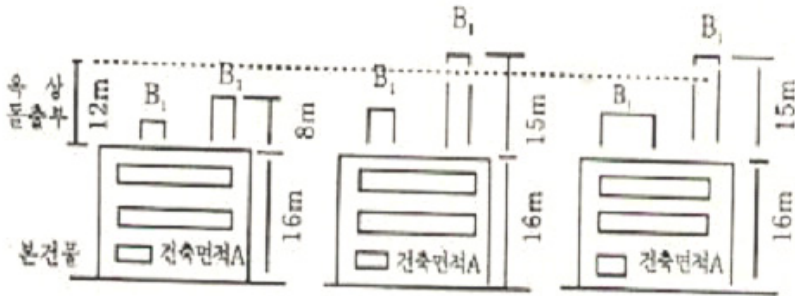
- (1) 건축물의 대지에 접하는 전면도로의 노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 당해 건축물이 접하는 범위의 전면도로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전면도로면으로 본다.
- (2) 건축물의 대지에 지표면이 전면도로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고저차의 2분의 1의 높이만큼 올라온 위치에 당해 전면도로의 면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그림 14) 높이 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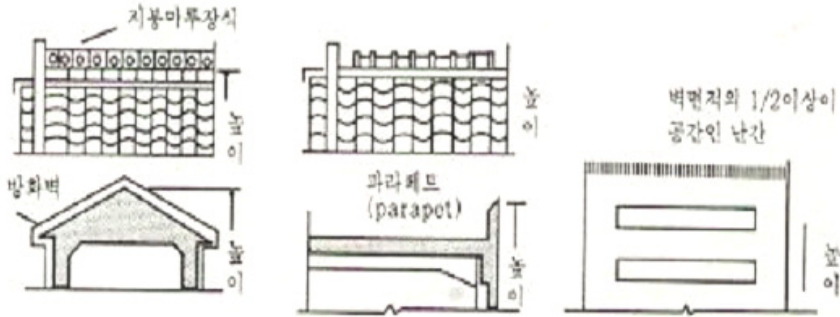
다. 건축물의 높이 산정에서 제외되는 부분

- (1) 옥상부분(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1/8(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는 1/6) 이하이면 12미터를 넘은 부분만 높이에 산입하고 옥상부분 면적이 1/8를 넘으면 그 높이의 전부를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그림15) 옥상부분의 면적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산정

- (2) 옥상돌출물(지붕마루장식·굴뚝·방화벽·기타 이와 유사한 옥상돌출물)과 난간벽(그 벽면적의 1/2 이상이 공간으로 된 것에 한함)은 당해 건축물 높이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림 16) 옥상돌출물이 있는 건축물의 높이 산정

3. 반자높이 (승 제119조제1항제7호, 避難防火規則 제16조)

반자의 높이규정은 건축물의 기능과 위생적인 생활공간 확보에 있으며, 근래 건축 동향이 냉·난방의 유지관리, 건축비 절감 및 연면적을 높이기 위하여 반자높이를 낮게 하므로 이를 방지함에 있으며, 그 산정방법은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반자까지의 높이로 한다. 그러나, 동일한 방에서 반자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의 반자의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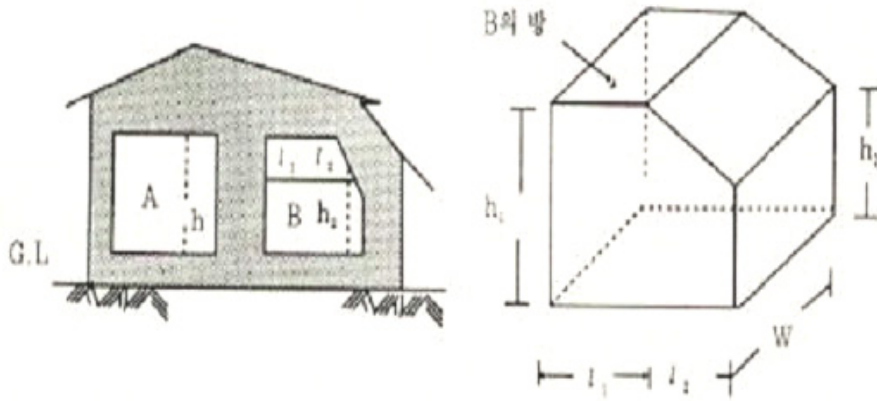
A 방의 반자높이 = h

B 방의 반자높이 = 반자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

여기서 B방의 경우 반자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는 방의 용적을 방의 면적으로 나눈 값이다.

$$\text{즉 } \frac{[h_1 \times l_1 + 1/2(h_1 + h_2) \times l_2]W}{(l_1 + l_2)W} \text{ 가 B방의 반자높이가 된다.}$$

※ 방의 용적 ÷ 방의 바닥면적 = 가상반자높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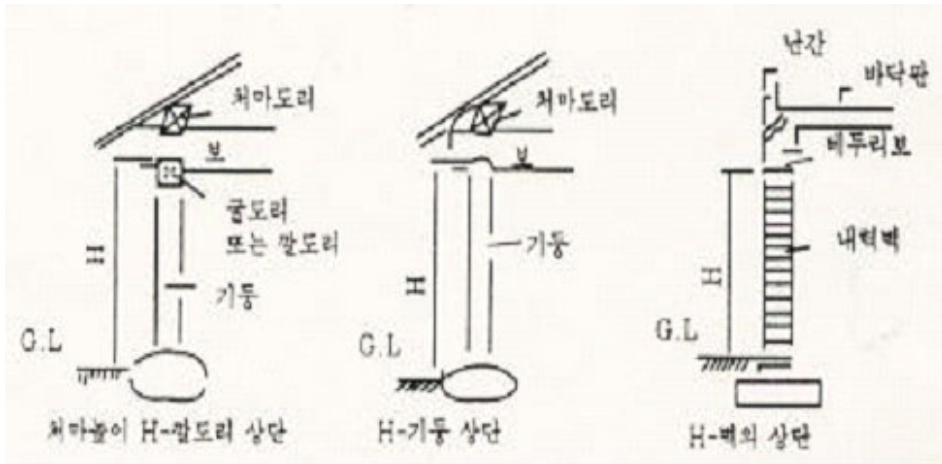
(그림 17) 반자 높이 산정

<표 2-5> 거실의 반자높이

용 도	거실의 반자높이	비 고
(1) 모든 건축물	2.1 미터 이상	
(2)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4.0미터 이상 (노대의 아랫부분의 높이는 2.7미터 이상)	기계환기장치를 설치한 경우는 예외

4. 처마높이 (令 제119조제1항제6호)

목조나 조적조의 높이제한에 사용되는 용어로서, 건축물의 안전(특히 지진으로부터)을 주된 목적으로,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지붕틀 또는 이와 유사한 수평재를 지지하는 벽·깔도리 또는 기둥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



(그림 18) 처마높이 산정

5. 층고 (승 제119조제1항제8호)

- (1) 방의 바닥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 윗면까지의 높이(마감면을 기준).
- (2) 동일한 방에서 층의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의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 평균한 높이로 한다.
- (3) 경사지붕안에 설치하는 다락의 층고 높이산정은 가중평균한 높이로 산정하는 것이며 다락을 설치하지 않는 경사지붕의 높이가 1.5m를 초과 하더라도 높이제한 규정에 적합한 경우 이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는 것임(건설부 건축01254-39419 92. 10 .31)

제3절 층수의 산정 및 제한

1. 층수산정의 원칙 (승 제119조제1항제9호)

- 가. 건축물의 지상층 만을 층수에 산입하며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로 한다.
- 나.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한다.
- 다. 건축물의 옥상부분(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등)으로서 수평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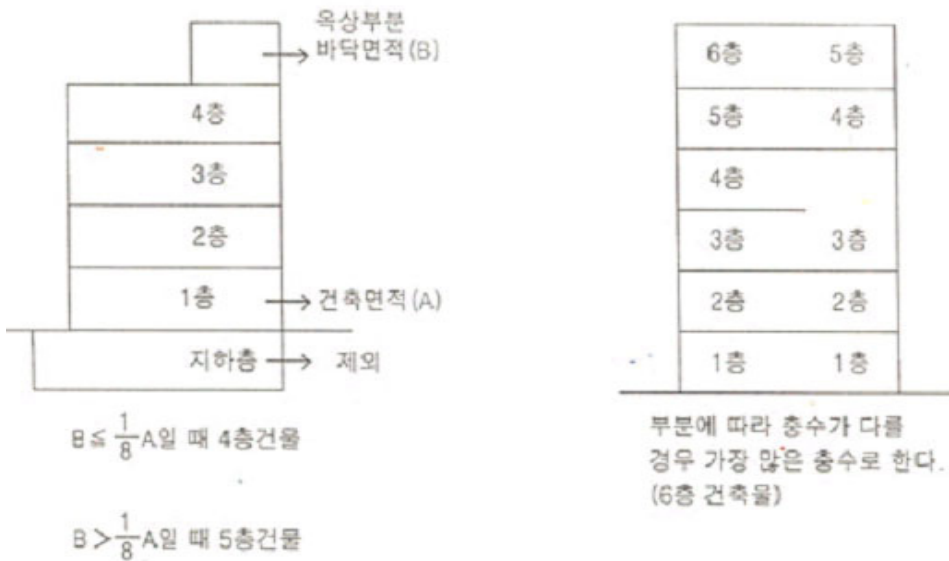
예 방 실 무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1/8(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는 1/6)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라. 지하층은 제외한다.

「참고」

- ▷ 옥상부분의 용도가 거실인 경우 :
 - 규모에 관계없이 층수, 바닥면적, 연면적에 산입함
- ▷ 층수에 의한 제한 : 층수에 의거 승강기 및 배연설비 등이 의무화되어 있다.



(그림 19) 건축물의 층수산정

제3장 방화에 관한 기준

제1절 내화구조·방화구조 및 방화문

1. 내화구조의 기준 (避難防火規則 제3조)

가. 내화구조는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철근콘크리트조·연와조등)로서 주요구조부에 따라 다음표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3-1〉 내 화 구 조 기 준

구 조 부 분		내 화 구 조 의 기 준
벽	(1) 벽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그 바름바탕을 불연재료로 한 것에 한한다) 또는 두께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 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라)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인 것 (마) 고온·고압의 증기로 양생된 경량기포 콘크리트패널 또는 경량기포 콘크리트블록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2) 외벽중 비내력벽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3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 등의 두께가 4센티미터 이상인 것 (라) 무근콘크리트조·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예 방 실 무

구조부분	내 화 구 조 의 기 준
(3) 기둥(작은지름이 25센티미터 이상인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한 경우에는 5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7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골을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4) 바 닷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 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다) 철재의 양면을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로 덮은 것.
(5) 보(지붕틀을 포함한다)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한 경우에는 5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다) 철골조의 지붕틀(바닥으로부터 그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로서 바로 아래에 반자가 없거나 불연재료로 된 반자가 있는 것.
(6) 지 붓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 (다) 철재로 보강된 유리블록 또는 망입유리로 된 것
(7) 계 단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무근콘크리트조·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 (라) 철골조
(8) 기 타	(가)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실시하는 품질시험에서 그 성능이 확인된 것

〈표 3-2〉 내화구조의 성능기준

(국토해양부고시제2005-122호, 2005.5.20)

(단위 : 시간)

용도		구 성 부 재		벽					보 · 기둥	바닥	지붕
				외 벽			내 벽				
				내 력 벽	비 내 력		내 력 벽	비 내 력			
연소 우려가 있는 부분 (가)	연소 우려가 없는 부분 (나)	간막이벽 (다)	샤프트실 구획벽 (라)								
용도구분 (1)		용도 규모(2) 층수/최고높이 (m) (3)									
일 반 시 설	업무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공공용시설 중 군사시설·방송국·발전소·전신전화국·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통신용시설, 관광휴게시설, 운동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묘지관련시설 중 화장장,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정비공장 제외)	12/50 초과	3	1	1/2	3	2	2	3	2	1
		12/50 이하	2	1	1/2	2	1 1/2	1 1/2	2	2	1/2
		4/20 이하	1	1	1/2	1	1	1	1	1	1
주 거 시 설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관, 공동주택, 숙박시설, 의료시설	12/50 초과	2	1	1/2	2	2	2	3	2	1
		12/50 이하	2	1	1/2	2	1	1	2	2	1/2
		4/20 이하	1	1	1/2	1	1	1	1	1	1/2
산 업 시 설	공장, 창고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자동차관련 시설 중 정비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2/50 초과	2	1 1/2	1/2	2	1 1/2	1 1/2	3	2	1
		12/50 이하	2	1	1/2	2	1	1	2	2	1/2
		4/20 이하	1	1	1/2	1	1	1	1	1	1/2

비고 1

- (1) • 건축물이 하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될 경우, 가장 높은 내화시간의 용도를 적용한다
• 건축물의 부분별 층수가 상이할 경우, 최고 높이 또는 최고 층수로서 상기 표에서 제시한 부위별 내화시간을 건축물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 (2) 건축물의 층수와 높이의 산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의하되 다만,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은 건축물의 높이와 층수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비고 2

- (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분
- (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
- (다) 건축법령에 의하여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벽을 말한다
- (라) 승강기·계단실의 수직벽

(1) 철근의 피복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에 있어서 철근은 콘크리트에 두껍게 덮여 부착 되므로써 두 이질재는 일체가 되어 그 힘을 다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철근이 소요의 두께까지 콘크리트에 덮여있지 않으면 부재 내부응력에 의한 균열, 외기의 습기에 의한 철근의 녹슬기 또는 불의의 화재로 철근의 빠른 가열 등의 강도 저하로 구조체는 파괴될 것이다. 따라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내구·내화적으로 유지하려면 적당한 덮임두께 즉 피복(被覆)두께가 있어야 한다.

철근은 200℃정도까지는 상온일 때 강도 또는 그 이상으로 된다고 하지만 그 이상의 온도에서는 갑자기 약하게 되고 600℃정도에서는 상온일 때의 반정도로 저하되는 동시에 몹시 늘어난다. 한편 콘크리트는 경화 후에도 다소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어 온도가 100℃정도가 되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수분은 증발하고 250℃정도부터는 화학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수분인 결정수(結晶水)가 빠지기 시작하고 500℃정도에서는 수산화석회(水酸化石灰)가 열분해하여 콘크리트는 갑자기 약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철근은 콘크리트에 피복되어야 화재시에 안전하고 내구연한도 증대된다.

(2) 내화피복(耐火被覆)

철재의 피복재료에는 벽돌·콘크리트·모르타르·타일·회반죽·암면·기타 바름재료가 있다. 철골기둥에 콘크리트를 피복하면 내화뿐 아니라 콘크리트의 피복단면은 철골기둥 단면을 증가하는 결과가 되므로 유리하고 또 철재의 방청에도 유리하다.

〈표 3-3〉 내화구조 인정업무 처리기간

(국토해양부고시제2005-122호, 2005.5.20)

순번	업 무 명	처리기간	처 리 내 용	비 고
(1)	신청자격검토	1일	(가) 신청자격 및 제한조건 검토	
(2)	수수료통보	3일	(가) 수수료납부요청	
(3)	신청서류 검토	3일	(가) 인정신청시 첨부도서내용 확인 및 검토 1. 내화구조 설계도서 가) 구조설명서, 재료설명서 나) 시방서(시공방법 등) 시공관리 2. 신청자의 영업개요 3. 품질관리 설명서 (나) 자문회의 실시여부 결정	
(4)	공장품질관리 확인 및 시료 채취	6일	(가) 공장품질관리심사 및 시료채취 계획수립 1. 공장품질관리 심사 가) 신청자의 자본 및 시설 나) 구조의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다) 구조의 시공에 관한 사항 2. 시료채취 가) 신청된 구조의 배합비 등 확인 나) 시험에 필요한 시료채취 다) 시험기관에 시료 전달 나) 심사결과 정리 및 보고	
(5)	품질시험성적서 검토 및 인정 세부내용 작성	6일	(가) 시험체제작 및 시험실시	
(6)	수수료정산요청	3일	(나) 수수료정산	
(7)	내화구조 인정 및 공고	3일	(가) 인정 및 세부인정내용 작성 (나) 인정 공고안 작성 (다) 관련기관 통보 (라) 신청업체에 내화구조 인정서 발급	
	계	25일	※ 1개 구조가 추가될 경우 처리기간은 7일씩 증가	자문회의를 실시하는 경우 민원기간 10일 증가

2. 방화구조 기준 (避難防火規則 제4조)

가. 방화구조는 인접화재가 쉽게 번지지 못하도록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다음표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나. 방화구조의 기준

- (1) 철망모르타르로서 그 바름두께가 2센티미터이상인 것
- (2) 석면시멘트판 또는 석고판위에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회반죽을 바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센티미터이상인 것
- (3) 시멘트모르타르위에 타일을 붙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센티미터이상인 것
- (4) 두께 1.2센티미터이상의 석고판 위에 석면시멘트판을 붙인 것
- (5) 두께 2.5센티미터이상의 암면보온판 위에 석면시멘트판을 붙인 것
- (6) 심벽에 흠으로 맞벽치기 한 것
- (7)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방화2급 이상에 해당하는 것

3. 방화문의 성능 (避難防火規則 제26조)

방화문은 갑종방화문과 을종방화문으로 구분되며,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각각 비차열 1시간 이상 및 30분 이상의 성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2절 건축물에 대한 방화 제한

1. 건축물의 방화를 위한 구조 제한 (令 제56조)

건축물<(5)호에 해당하는 2층 이하의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에 한한다> 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 부속 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제외되며, “(1)”호 및 “(2)”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쓰이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그 지붕틀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그 지붕틀을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

- 점영업 및 장례식장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옥외관람석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및 동·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는 체육관·강당,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에 쓰이는 것을 제외한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전신전화국·촬영소, 묘지관련시설 중 화장장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3) 공장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화재의 위험이 적은 공장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 (4)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에 한함),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5) 3층 이상의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다만,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쓰는 시설은 제외), 교도소·감화원 또는 묘지 관련 시설(화장장은 제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과 철강 관련 업종의 공장 중 제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로 증축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2. 건축물의 내부마감 제한 (令 제61조, 避難防火規則 제24조)

수용인원이 많거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큰 건축물 그리고 고층건축물은 화재예방에 특별히 유의하고 화재발생시 피난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단시간내의 연소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그 마감재료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 건축물의 옥내부분의 마감재료는 <표 3-5>에 의한 기준에 따라 방화상 지장이 없도록 하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소화설비를 설치한 부분의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하 같다)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표 3-4〉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 기준

적 용 대 상		마 감 재 료	
건축물 용도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바닥 면적의 합계	거실부분	복도·계단 기타 통로
(1) 문화 및 집회시설(예식장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및 위락시설(단란주점·주점영업 제외)	· 200제곱미터 이상(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일 때 400제곱미터 이상)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 · 불연재료 · 준불연재료 · 난연재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 · 불연재료 · 준불연재료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독서실·고시원,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은 제외한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이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및 장례식장	· 3층 이상의 층으로 200제곱미터 이상(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일 때 400제곱미터 이상)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자가난방·자가발전 등의 용도 시설 포함),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촬영소 또는 발전시설	· 모든 경우		
(4) 5층 이상 건축물	· 5층 이상 층의 거실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		
(5) 공장	· 모든 경우 단, 건축물이 1층 이하이고,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제외		
(6) 창고	3천 제곱미터(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7)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당구장,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예식장,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수련시설, 숙박시설 중 여관·여인숙,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유흥주점영업은 제외한다)	· 모든 경우		

※1) 거실 바닥면적의 산정시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소화설비를 설치한 부분의 바닥면적은 뺀 면적으로 산정

2) 마감재료 중 반자돌림대·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제외

질의·회신 마감부분도 불연재료로 하여야 하는지 (건교부건축 58070-1720. 97. 5. 19)

질의 건축물의 내부마감을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여야 하는 경우 마감을 위한 “바탕”만 불연재료 등으로 하면 되는지 아니면 “마감”도 불연재료 등으로 하여야 하는지

회신 건축법시행령 제61조(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의 규정에 의하여 마감을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도록 한 규정은 건축물의 화재시 연소방지 및 화재진행을 억제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 등의 “마감”을 불연재료 등으로 한 것이므로, “마감”부분이 불연재료 등 이어야 하는 것임.

질의·회신 단란주점의 거실에 대한 마감재료 (건교부건축 58070-2872. 99. 7. 23)

질의 가.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서 영 제61조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쓰이는 거실 등을 지하층에 설치한 경우와 제2호의 단란주점의 거실과 복도 등은 바닥면적과 관계없이 내부 마감재료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하는지
나. 동 규칙 제24조의 규정에서 바닥의 내부마감을 목재로 한 경우 적합여부

회신 가.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서 영 제61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쓰이는 거실 등을 지하층 또는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경우와 동 규칙 제2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노래연습장 또는 위락시설 중 단란주점 및 주점영업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거실은 바닥면적과 관계없이 내부 마감재료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하는 것임.
나. 동 규칙 동조제1항의 규정에서 그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에서 바닥은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제3절 방화구획

1. 방화구획

가.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화재가 건축물 전체에 번지지 않도록 내화구조의 바닥·벽 및 방화문 또는 방화셔터 등으로 구획을 만드는 것으로, 건축물안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건물내부에 수용되어 있는 각종 가연성 물질의 연소로 인하여 많은 유독성 연기와 화염을 발생시키면서 건축물 전체로 화재가 확산되는데 그 경로를 살펴보면, 건물내·외의 온도와 압력 차이로 인하여 각종 수직 개구부인 계단·엘리베이터실·설비샤프트·덕트 등을 통하여 급속하게 전층으로 연소가 확대 된다.

나. 건축물의 화재시 연소확대 경로를 차단하여 피해를 최소로 하기 위한 방법으로 방화구획은 그 효과가 매우 크다. 가장 효과적인 방화구획은 건축물내의 각실이나 점포별로 구획하는 것이겠지만, 경제적인 부담이나 건물이용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면적별구획과 층별구획 그리고 용도별구획 등으로 그 기준을 정하여 놓았다.

다. 방화구획은 건축계획시부터 설계에 반영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이다.

(1) 방화구획 대상 건축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

※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법에 의한다.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나 불연재료가 아닌 건축물(목조건축물)의 방화구획은 본 규정에서는 적용대상이 아니며 영 제57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2) 방화구획 방법

(가) 벽 : 내화구조

(나) 바닥 : 내화구조

(다) 개구부 : 갑종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

(라) 방화구획의 관통부분 : 급수관, 배전관 등이 방화구획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그 틈은 시멘트모르타르 기타 불연재료로 메울 것.

(마) 댐퍼의 구조 : 환기, 난·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다음 각목의 구조에 적합한 댐퍼를 설치할 것. 다만, 반도체공장건축물로서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풍도의 주위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철재로서 철판의 두께가 1.5밀리미터 이상일 것
- 2)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기의 발생, 온도의 상승에 의해 자동적으로 닫힐 것
- 3) 닫힌 때에는 방화상 지장이 있는 틈이 생기지 않을 것
- 4)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상의 방화댐퍼의 방연시험방법에 적합할 것

(3) 방화구획 기준 (승 제46조제1항)

(가) 면적단위 구획

- 1) 10층 이하의 층 : 1천제곱미터(* 3천제곱미터) 이내
- 2) 11층 이상의 층
 - 가) 실내마감재료가 불연재료가 아닌 경우 : 2백제곱미터(* 6백제곱미터) 이내
 - 나) 실내마감재료가 불연재료인 경우 : 5백제곱미터(* 1천5백제곱미터) 이내

※ 위의 ()내 숫자는 방화구획부분에 대하여 스프링클러 또는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의 구획면적 임.

(나) 층단위 구획 : 층마다 구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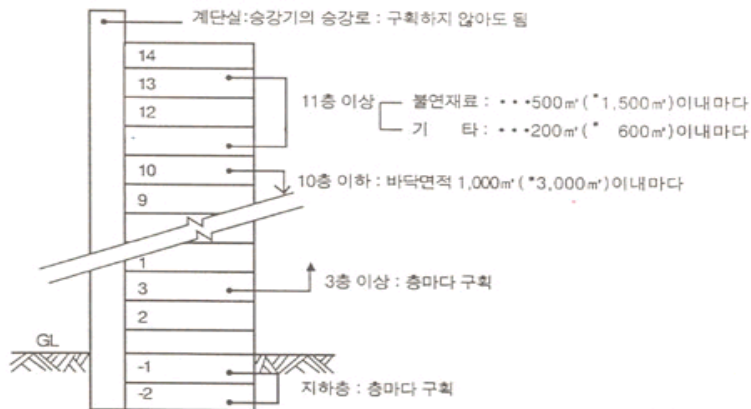
- 1) 3층 이상인 모든 층
- 2) 지하층

(다) 용도단위 구획

건축물의 일부가 그 주요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건축물(건축물의 방화를 위한 구조제한 참조, 영 제5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표 3-5〉 방화구획 설치 기준

단위구획의 종류		구획의 기준	구획의 구조
면적 단위	· 10층 이하의 층	· 바닥면적 1000제곱미터(*3000)이내마다 구획	· 벽 · 바닥 · 갑종방화문(자동방화 샷다 포함)
	· 11층 이상의 층	· 바닥면적 200제곱미터(*600)이내마다 구획하거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이 불연재료인 경우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1500)이내마다 구획	
층단위	· 3층 이상의 층 · 지하층	·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	
용도 단위	· 건축물 용도	· 법제40조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과 그 외의 부분이 같은 건축물안에 있을 때 당해 부분의 경계에 구획	



(그림20) 방화구획 설치기준

14 - 최상층 : 구획하지 않아도 됨(대규모 회의장, 강당, 스카이라운지 등)

1 - 피난층 : 구획하지 않아도 됨(대규모 회의장, 강당, 로비 등)

※() 안의 숫자는 스프링클러설비를 한 경우의 기준임

(4) 갑종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구조

(가) 갑종방화문(避難防火規則 제14조)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나) 자동방화셔터

1) 설치위치

피난상 유효한 갑종방화문으로부터 3미터 이내에 설치한다.

2) 자동방화셔터의 구성

셔터는 전동 및 수동에 의하여 개폐할 수 있는 장치와 열감지기, 연기감지기 및 온도퓨우즈장치 등을 갖추고 화재발생시의 열 또는 연기에 의하여 자동폐쇄되는 장치일체로서 재료, 품질, 개폐장치 및 연동폐쇄장치 등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재료 및 품질 : 한국공업규격의 방화셔터(KSF4510) 중 갑종방화문용 셔터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개폐장치

- ① 전동 및 수동에 의해 수시 작동, 임의의 위치에서 정지할 수 있는 구조, 자중에 의해 폐쇄가 가능
- ② 개폐용 전동기는 한국공업규격의 저압3상유도전동기(KSC4202) 또는 단상유도전동기(KSC4204)에 적합한 한국공업규격 표시품
- ③ 샤프트 로울러체인은 전동용 로울러체인(KSB1407)에 적합

다) 연동폐쇄장치 : 열감지기, 연기감지기 및 온도 퓨우즈에 의하여 자동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 ① 열감지기, 연기 감지기, 온도 퓨우즈, 연동제어기, 자동폐쇄장치 및 예비 전원 구비
- ② 연기감지기는 소방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 합격품
- ③ 열감지기는 검정에 합격한 보상식 또는 정온식 감지기로서 정온점 또는 특종의 공칭 작동 온도가 60~70℃의 것
- ④ 설치방법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기준에 따름
- ⑤ 연동제어기 : 자동폐쇄장치에 가동 지시, 화재시 방열, 유지관리 용이, 점검장치를 부착 할 것
- ⑥ 자동폐쇄구조인 경우 온도 퓨우즈 장치는 50℃에서 5분이내에 작동하지 아니하고 90℃에서 1분이내에 작동하여야 한다.

⑦ 예비전원은 자동충전장치, 시한충전장치를 가진 축전지로서 충전을 하지 않고 30분간 계속하여 셔터를 개폐시킬 수 있어야 한다.

(5) 방화구획 적용의 완화 (승 제46조제2항)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방화구획을 적용하지 않거나 사용상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에 쓰이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나) 물품의 제조·가공·보관 및 운반 등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기기 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다만, 지하층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외벽 한쪽면(지하층의 바닥면에서 지상층 바닥 아래면까지의 외벽 면적 중 4분의 1 이상이 되는 면을 말한다) 전체가 건물 밖으로 개방되어 보행과 자동차의 진입·출입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한다.

(다) 계단실부분·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부분(당해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부분을 포함한다)으로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라)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회의장·강당·스카이라운지·로비 또는 피난안전구역 등의 용도에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당해 용도로의 사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마) 복층형인 공동주택의 세대안의 층간 바닥부분

(바)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의 부분

(사)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집회, 체육,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만 해당한다)로 쓰이는 건축물

※ 방화구획의 완화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완화의 적용범위는 완화부분이 있는 건축물 전체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완화대상이 되는 실의 부분에 한하여 사용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안에서 최소화하여 완화하여야 할 것이다.

질의·회신 피난층의 방화구획 여부(건교부건축 58070-2171. 99. 6.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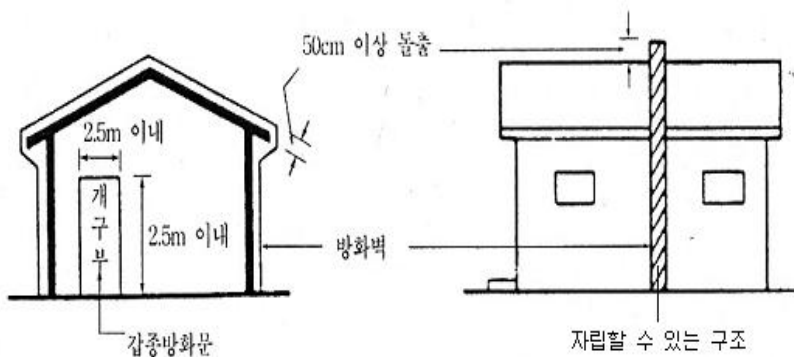
질의 단층 철골조 판매시설로서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피난층이라도 방화구획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건축법시행령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갑종방화문으로 구획하여야 하는 것으로 질의의 건축물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난층에도 방화구획을 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회신 지게차 사용을 위한 공간의 방화구획 여부(건교부건축 58070-2278. 99. 6. 18)

질의 물품의 제조·출고까지 지게차를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동 부분에 대하여 건축법시행령 제46조제1항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건축법시행령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갑종방화문으로 구획하여야 하는 것으로 단순히 지게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난층에도 방화구획을 하여야 하는 것임



(그림 21) 방화벽 설치

2. 방화벽 등

방화벽의 설치 및 구조기준 (令 제57조, 避難防火規則 제21조)

방화벽은 화재시 연소의 확산을 막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규모 건축물 또는 목조건축물에 설치하는 벽으로서 그 설치기준과 구조는 다음 표와 같다.

〈표 3-6〉 방화벽 설치 기준

대상건축물 조건	구 획 단 위	방 화 벽 의 구 조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가 아닌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바닥면적 1,000제곱미터미 만마다 구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화구조로서 홀로 설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 방화벽 양쪽 끝과 윗쪽 끝을 건축물의 외벽면 및 지붕면으로 부터 0.5미터 이상 튀어나오게 할 것 ·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너비 및 높이는 각각 2.5미터 이하로 하고 이에 감중방화문을 설치 할 것

※ 피난방화구획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제2항은 방화벽에 이를 준용한다.

가.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목조건축물 외벽 및 처마밑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방화구조로 하되, 그 지붕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나. 방화벽 설치 제외대상 건축물

-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인 건축물
- (2)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발전시설, 교도소·감화원 또는 묘지 관련 시설(화장장은 제외)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
- (3) 내부설비의 구조상 방화벽으로 구획 할 수 없는 창고시설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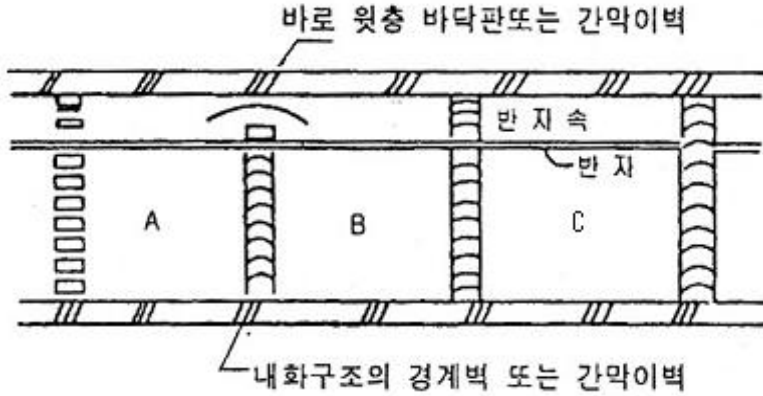
3. 건축물의 경계벽 및 간막이벽 (令 제53조, 避難防火規則 제19조)

건축물의 경계벽과 간막이벽은 방화상 지장이 없도록 다음표와 같이 구획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소리를 차단하는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음 그림에서 B의 방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A의 방으로는 반자속이 공간으로 되어 있어서 쉽게 불이 옮겨 붙거나 연기의 확산으로 큰 피해를 초래할 것이다.

그러나 C의 방으로는 반자속 바로 윗층 바닥판까지 닿게 막은 벽으로 인하여 재해를 방

지할 수 있다.



(그림 22) 경계벽 및 간막이벽의 설치방법

〈표 3-7〉 경계벽 및 간막이벽의 구조

대상건축물	벽의 명칭	경계벽 및 간막이벽의 구조
(1)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각 가구·세대간의 경계벽(발코니 부분은 제외)	(가) 내화구조로 하고, 지붕밑 또는 바로 윗층의 바닥판까지 닿게 하여야 한다. (나) 소리를 차단하는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의 세대간의 경계벽인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2) 기숙사의 침실, 의료시설의 병실, 학교의 교실, 숙박시설의 객실	각 거실간의 간막이벽	1)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2) 무근콘크리트조 또는 석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시멘트 모르타르·회반죽 또는 석고플라스터의 비름두께를 포함한다) 이상인 것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각 호실 간 칸막이벽	3) 콘크리트블록조 또는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인 것
(4)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주택	세대 간 경계벽	4) 제1)호~제3)호의 것 외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실시하는 품질시험에서 그 성능이 확인된 것

지침 샌드위치판넬의 불연성능 확보 (건교부건축 58550-2173. 01.8. 28)

근거 가. 건축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일정규모이상의 다중이용시설·공동주택 및 생활권수련시설·자연권수련시설등은 벽·천정·복도·계단등의 마감재료를 불연재료·준불연재료·난연재료로 하도록 규정 되어 있음.

나. 여기서 불연재료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에 의거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6조에서 정한 콘크리트·석재·철강 등의 불연성 재료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시험 결과 난연1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내용 최근 국토해양부가 대한건축학회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한 『건축물의 방재기준 선진화 방안 연구』 용역결과에 의하면 복합자재로 구성된 샌드위치판넬에서 철판사이 충전재 부분이 전부 또는 상당부분 녹아내려 불연성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향후 철판사이에 스티로폼·우레탄폼 등 충전재를 사용하는 샌드위치판넬 사용을 한국산업규격 KSF2271 불연성 시험방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시·도 및 한국건설감리협회, 대한건축사협회에 통보함에 따라 일선 소방관서의 민원담당자들은 동 사항을 확인하여 예방소방행정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제4절 방화지구내의 제한

건축물이 밀집한 도심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가정할 경우 인명이나 재산피해는 엄청날 것이다. 따라서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인접한 건축물로의 연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 단위부분마다 방화상 필요한 제한이 필요하다.

방화지구는 도시의 화재 및 기타 재해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지정한다.

방화지구 안에서는 특히 연소의 우려가 많은 지붕, 외벽, 개구부 등의 구조 및 재료 등에 대하여 규제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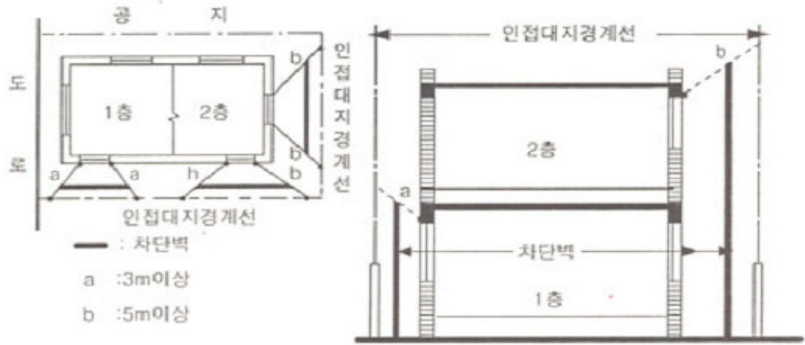
1. 건축물 등에 대한 제한 (승 제58조 避難防火規則 제23조)

가.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과 공작물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표와 같은 구조·재료 및 방화설비를 하여야 한다.

〈표3-8〉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등 제한

방화지구안의 건축물 및 공작물	대 상 부 분	구조 및 재료 제한내용
(1) 모든 건축물	주요구조부 및 외벽	내화구조로 해야 함
(2) 건축물의 지붕	내화구조가 아닌것	불연재료로 해야 함
(3) 간판·광고탑·기타 건축물의 지붕 위에 설치하는 공작물 또는 높이 3미터 이상의 공작물	주요부	불연재료로 해야 함
(4) 지붕, 방화문 및 인접대지 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창문, 출입문, 기타 개구부등)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	방화문 기타 방화설비를 해야 함

- (1) 방화지구안에서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및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가) 연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단층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면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것
 - (나) 도매시장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된 것
- (2) 방화지구안의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 설치하는 방화문 기타 방화설비
 - (가)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
 - (나) 소방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창문등에 설치하는 드렌처



(그림 23) 차단벽 설치

- (다) 당해 창문등과 연소할 우려가 있는 다른 건축물의 부분을 차단하는 내화구조나 불연재료로 된 벽, 담장 기타 이와 유사한 방화설비
- (라) 환기구멍에 설치하는 불연재료로 된 방화카바 또는 그물눈 2밀리미터 이하인 금속망

2. 건축물의 대지가 방화지구에 걸칠 때의 조치 (法 제54조제2항)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안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나 그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의 경계에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에는 그 밖의 구역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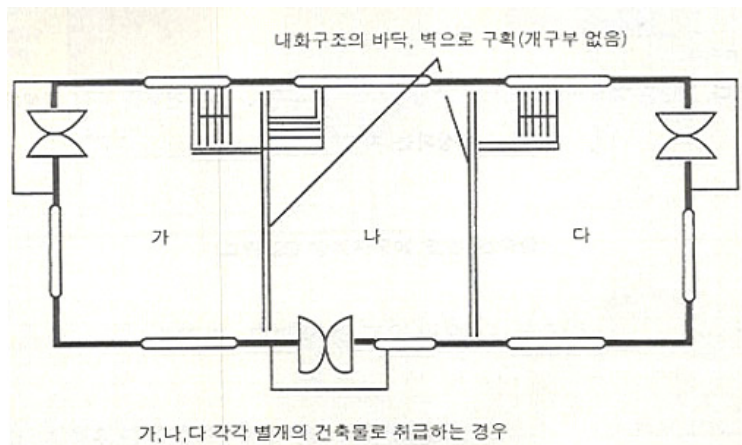
(그림 24) 방화지구에 걸친 건축물

제4장 피난에 관한 기준

제1절 적용범위와 용어

1. 적용범위

피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이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획된 각 부분을 각각 별개의 건축물로 본다.(승 제44조) 가, 나, 다를 각각 별개의 건축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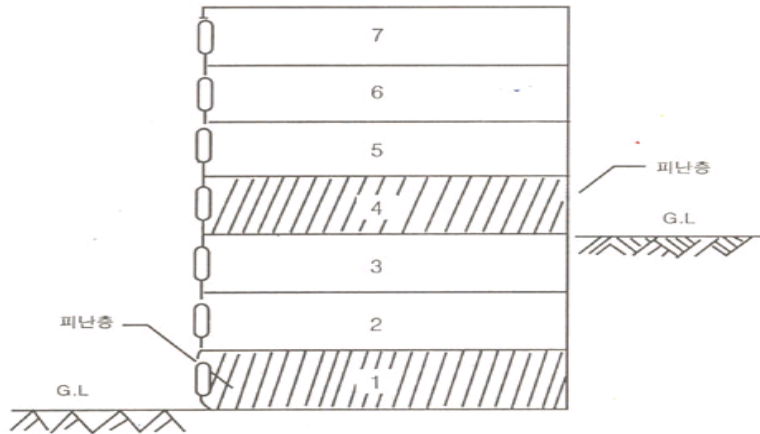


(그림 25) 별개의 건축물

2. 용어

가. 피난층 (승 제34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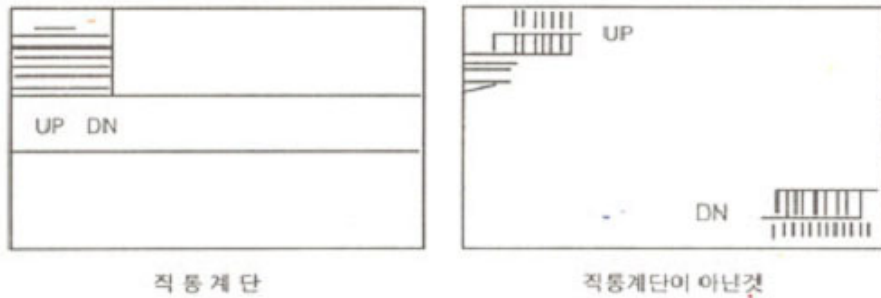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보통의 경우 지상 1층이 피난층이 되겠으나 경사지에 건축하는 경우등 지형에 따라 다음 그림과 같이 하나의 건축물에도 몇 개의 피난층이 있을 수 있다.



(그림 26) 피 난 층

나. 직통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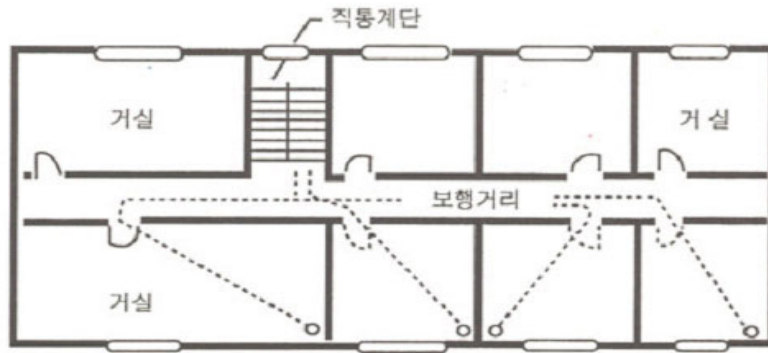
피난층 이외의 층에 있어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계단 중, 어떤 층에서라도 실내를 통과하지 않고 계단실(계단과 계단참)만을 통하여 상·하층으로 연결되는 계단을 말하며 임의의 층에서 일방적으로 상승 또는 하강만이 되는 계단은 직통계단이라 할 수 없다.



(그림 27) 직통계단

다. 보행거리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피난층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의 하나에 이르는 통과거리로서 실제로 보행하게 되는 최단거리를 말하는 것으로 수평거리와 구분된다.



(그림 28) 직통계단까지 보행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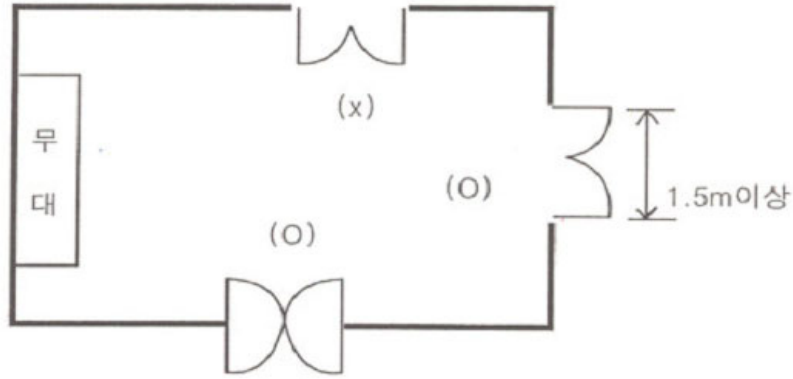
제2절 출구와 복도의 너비

1. 출 구

가. 출구의 문 (令 제38조, 避難防火規則 제10조)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장례식장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단으로 하여서는 안되며,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의 개별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의 출구는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 (1) 관람석별로 2개소 이상 설치할 것
- (2) 각 출구의 유효너비는 1.5미터 이상일 것
- (3) 개별관람석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개별 관람석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마다 0.6미터 이상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 이상으로 할 것



(그림 29) 출구의 문 설치기준

※ 피난시설에 대하여서는 건축법·공연법·소방법 등 관계법령에서 규제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며 관리에 관해서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다.

나. 건축물 바깥쪽에서의 출구 (승 제39조, 避難防火規則 제11조)

(1) 설치대상

다음 건축물에는 당해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 (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 (나) 종교시설
- (다) 판매시설
- (라)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마) 위락시설
- (바)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시설
- (사)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 (아) 장례식장
- (자)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2) 설치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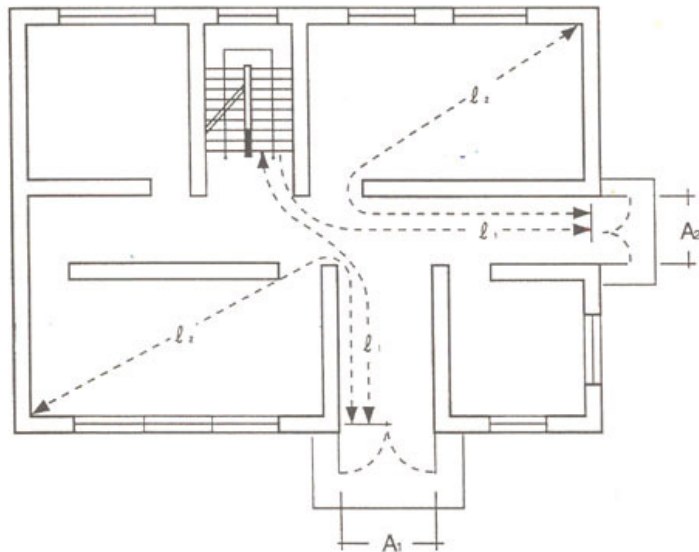
(가) 보행거리

피난층에 있어서 계단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에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

리(가장 가까운 출구와의 보행거리를 말한다. 이와 같다)는 30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에 있어서는 50미터, 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은 40미터) 이하로 하고 거실(피난에 지장이 없는 출입구가 있는 것을 제외한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상기 보행거리의 2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나) 출구의 구조

-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 2)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집회장 또는 공연장에 있어서는 주된 출구외에 보조출구 또는 비상구를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3) 판매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피난층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이 최대인 층에 있어서는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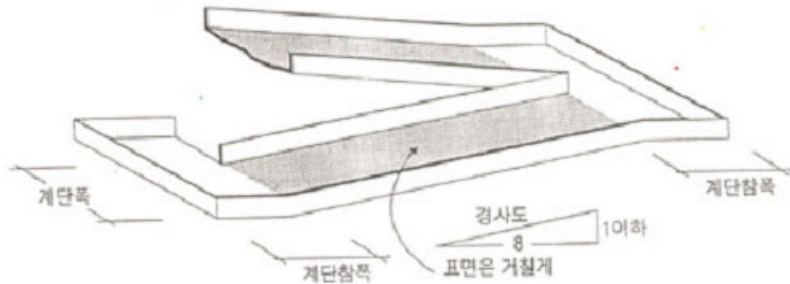
(그림 30) 거실 및 직통계단에서 옥외로의 출구까지 보행거리 기준

(3) 경사로의 설치

(가) 설치대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피난층 또는 피난층의 승강장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에 이르는 통로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파출소·지구대·소방서·우체국·방송국·보건소·공공도서관·지역건강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마을회관·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판장·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3)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판매 및 운수시설
- 4) 교육연구 중 학교
- 5)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6)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그림 31) 경사로의 기준

(나) 경사로의 설치 기준 (避難防火規則 제15조제5항)

경사도는 1 : 8을 넘지 아니하여야 하며 표면을 거친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마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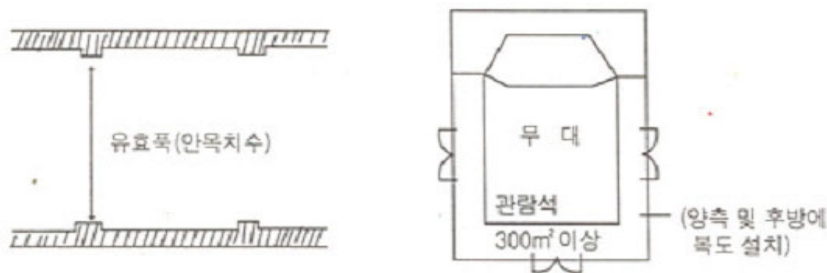
(4) 회전문의 설치기준 (避難防火規則 제12조)

건축물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회전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가)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로부터 2미터이상의 거리를 둘 것
- (나) 회전문과 문틀사이 및 바닥사이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간격을 확보하고 틈 사이를 고무와 고무펠트의 조합체 등을 사용하여 신체나 물건 등에 손상이 없도록 할 것.
 - 1) 회전문과 문틀 사이는 5센티미터 이상
 - 2) 회전문과 바닥 사이는 3센티미터 이상
- (다)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방향으로 회전하는 구조로 할 것
- (라) 회전문의 중심축에서 회전문과 문틀사이의 간격을 포함한 회전문 날개 끝부분까지의 길이는 140센티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마) 회전문의 회전속도는 분당 회전수가 8회를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바) 자동회전문은 충격이 가하여지거나 사용자가 위험한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전자감지장치를 사용하여 정지하는 구조로 할 것

2. 복도의 설치

건축물 내부 또는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에 비·눈 등의 자연조건에 관계없이 다닐 수 있도록 지붕을 씌워 연결해 놓은 통로의 기능과 유사시 재실자들의 피난과 소방활동에 중요한 동선 역할을 하며, 복도가 놓여 있는 형태에 따라서 편복도·중복도·회랑복도 등이 있다.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에 설치하는 복도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림 32) 복도의 유효너비 및 설치기준

- (1) 공연장의 개별 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바깥쪽에는 그 양쪽 및 뒷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할 것
- (2) 하나의 층에 개별 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을 2개소이상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관람석의 바깥쪽의 앞쪽과 뒷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할 것

제3절 계단 등의 설치 기준 및 구조

계단은 층계(層階)라고도 하며, 현대사회의 도시 입체화·고층화가 진전됨에 따라 건축물에서 중요한 요소로서, 통로로서의 주된 기능 외에 건축 디자인의 요소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계단이라 하지만, 이에는 공공용(公共用)의 큰 것에서부터 일반주택 내부의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구조·형식이 있는데, 공공성이 강한 것은 누구나 안전하고 편하게 오르내릴 수 있는 것이라야 하고 주택 내부의 것은 면적이나 경비상의 제약을 받는 경우가 있겠으나, 역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안전하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할 필요가 있다.

계단의 너비 및 단높이(철판의 높이), 디딤판면의 너비 등의 치수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규모 등에 따라 「건축물의 피난·방화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야 한다. 다만, 주계단으로 사용하지 않는 옥외계단의 너비는 60cm 이상으로 할 수 있고, 일반 단독주택의 경우는 단높이 23cm 이하, 단너비 15cm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계단의 종류로는 형태에 따라 곧은계단·굴절계단·중공(中空)계단·원형계단·나선계단(원형계단의 극단적인 형태) 등이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것은 곧은계단이며, 이것은 최소의 면적으로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있는 형식이다.

1. 직통계단의 설치

가. 직통계단까지의 보행거리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 포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보행거리가 50미터(16층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는 40미터)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

나.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직통계단을 한 곳에 집중시키지 않고 분산 배치하여 동선을 균배시키는 것이 보행거리를 단축시킬 수 있으며, 안전하고 효과적이다. 따라서 각 직통계단의 출입구는 서로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지도록 설치하고 직통계단 상호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등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표 4-1〉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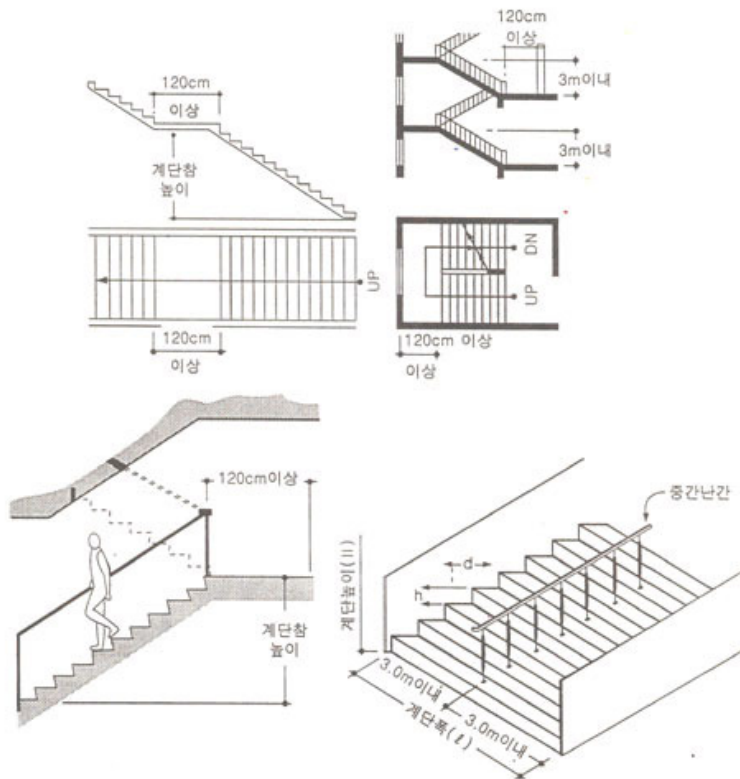
용 도	바 닥 면 적	조 건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장례식장	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200㎡ 이상	당해 용도의 바닥면적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 독서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아동시설·노인복지시설 및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 장례식장의 용도에 쓰이는 층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층 바닥면적의 합계 200㎡ 이상	당해 용도의 거실의 바닥면적
(3) 공동주택,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300㎡ 이상	당해 용도의 거실 예외: 층당 4세대 이하인 공동주택 제외
(4)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400㎡ 이상	3층 이상 층의 거실
(5) 지하층	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200㎡ 이상	거실의 바닥면적

2. 계단의 설치기준 및 구조

가. 계단 등 설치기준

- (1)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은 높이 3미터 이내마다 너비 1.2미터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

- (2) 높이가 1미터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것
- (3) 너비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미터 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계단의 단높이가 15센티미터 이하이고, 계단의 단너비가 3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4) 계단의 유효 높이(계단의 바닥 마감면부터 상부 구조체의 하부 마감면까지의 연직방향의 높이를 말한다)는 2. 1미터 이상으로 할 것
- (5) 제(1) 내지 제(4)의 규정은 승강기계실용계단·망루용계단 등 특수한 용도에만 쓰이는 계단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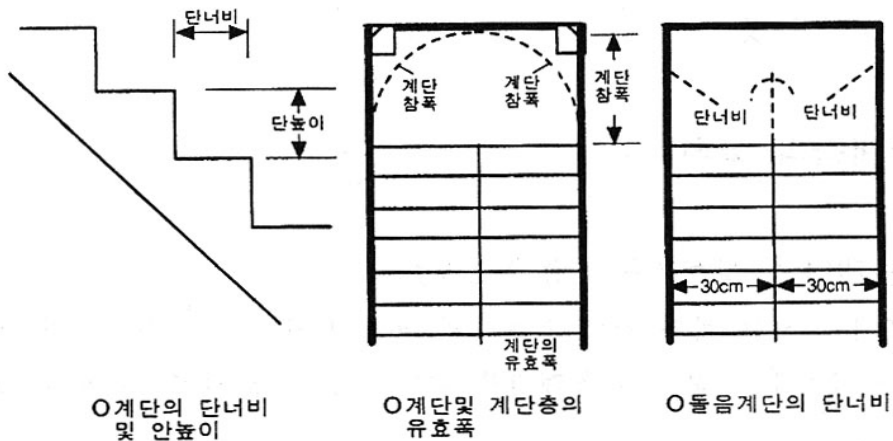
(그림 33) 계단의 설치기준

나. 계단의 구조

〈표 4-2〉 계단의 구조

(단위 : 센티미터)

계 단 의 종 별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	단 높 이	단 너 비
(1) 초등학교	150 이상	16 이하	26 이상
(2)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150 이상	18 이하	26 이상
(3)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및 판매 및 영업시 설중 도매시장·소매시장·상점,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계단	120 이상		
(4) 바로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이거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의 계단	120 이상		
(5) 기타의 계단	60 이상		
(6) 돌음계단의 단 너비는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잦 것으로 한다.			



(그림 34) 계단의 구조

다. 난간의 설치

(1) 설치대상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제1종 근린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위락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및 바닥은 아동의 이용에 안전하고 노약자 및 신체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양쪽에 벽 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설치기준

난간·벽 등의 손잡이와 바닥마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가) 손잡이는 최대지름이 3.2센티미터 이상 3.8센티미터 이하인 원형 또는 타원형의 단면으로 할 것
- (나) 손잡이는 벽 등으로부터 5센티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하고, 계단으로부터의 높이는 85센티미터가 되도록 할 것
- (다) 계단이 끝나는 수평부분에서의 손잡이는 바깥쪽으로 30센티미터 이상 나오도록 설치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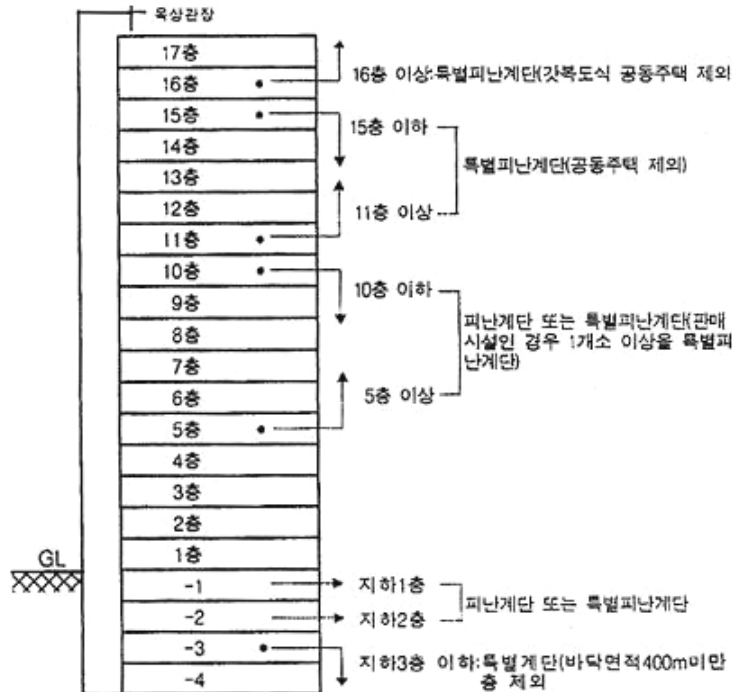
3. 피난계단의 설치

가. 피난계단의 설치기준

다음 표에 정하는 바와 같이 건축물의 용도와 층수에 따라 그 위치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에 통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표 4-3〉 피난계단의 설치기준

구 분	계단의 종류	비 고
(1) 5층 이상 10층 이하의 층 (2) 지하2층 (5층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1층 계단포함) 이하의 층	판매 및 영업시설중도·소매시장과 상점의 용도로 쓰이는 층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5층 이상의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 이거나, 그 이상이라도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판매 및 영업시설시설이외의 용도	
(3) 11층 이상의 층(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 (4) 지하 3층 이하의 층	특별피난 계단	· 갯복도식공동주택은 제외 · 바닥면적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제외



(그림 35) 피난계단 설치기준

-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위락시설,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인 창고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로 5층이상 또는 지하2층이하의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5층 이상의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하인 경우
 - (나) 5층 이상의 층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 (2) 건축물(갯복도식 공동주택을 제외한다)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을 제외한다) 또는 지하 3층 이하의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을 제외한다)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3) (1) 판매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은 그 중 1개소 이상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4) 건축물의 5층 이상의 층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및 동·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 또는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층에는 직통계단 외에 그 층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매 2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4층 이하의 층에 쓰이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 (5) 옥외 피난계단의 설치
건축물의 피난층을 제외한 3층 이상의 층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쓰이는 층의 경우에는 직통계단 외에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 (가)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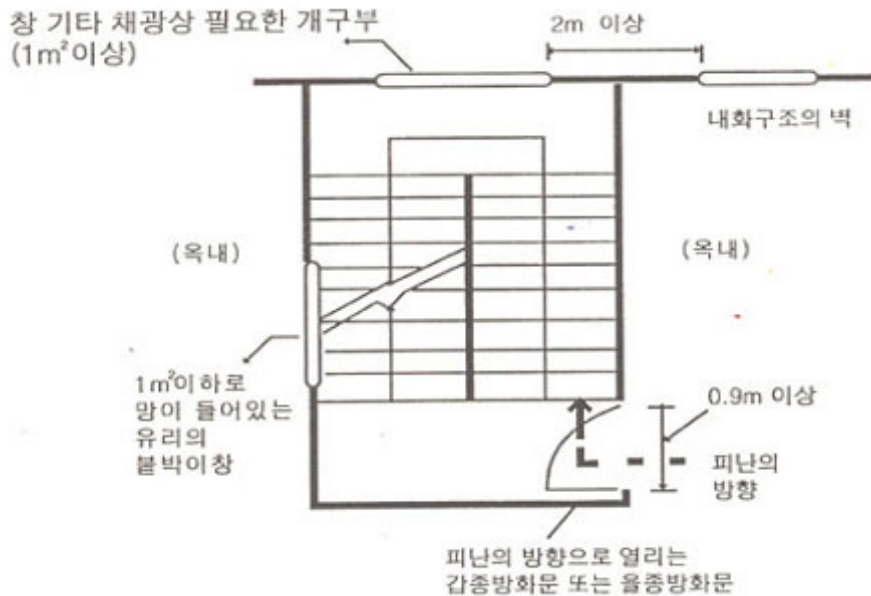
- (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피난계단의 구조

(1)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건축물안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등은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가) 계단실은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이하 “창문등”이라 한다)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 (나) 계단실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그림 36) 옥내피난계단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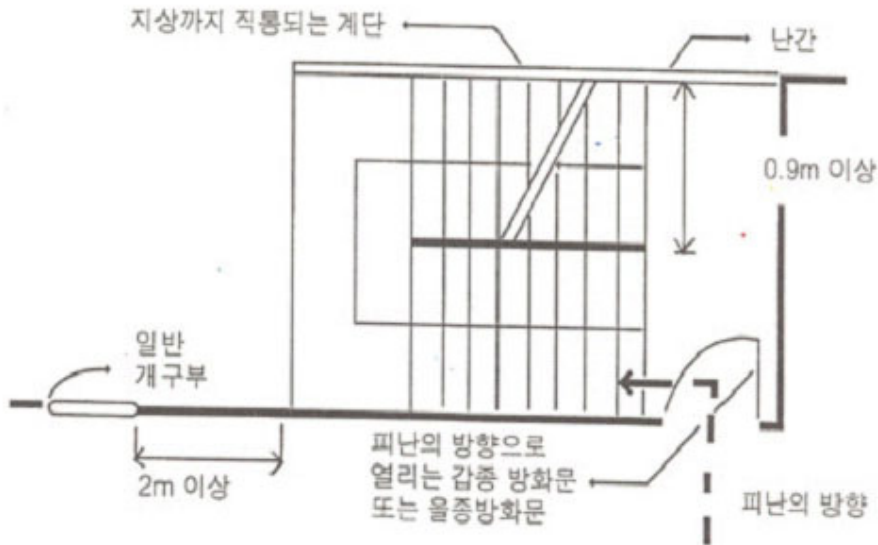
- (다)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 (라) 계단실의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 등(마음이 들어있는 유리의 불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

치하는 창문 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 (마)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계단실의 창문 등(출입구는 제외)은 망이 들어 있는 불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 (바)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감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 (사)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2)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 (가) 계단은 그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 외의 창문등(망이 들어있는 유리의 불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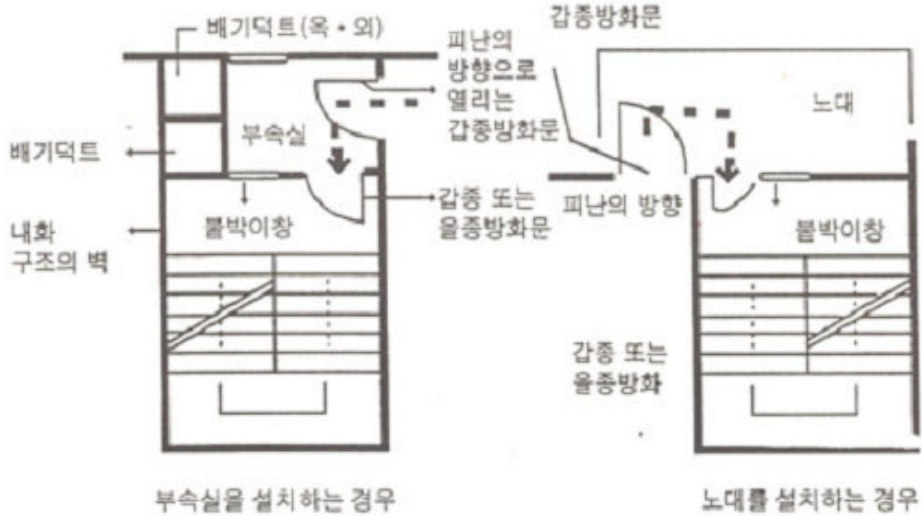
(그림 37) 옥외피난계단의 구조

- (나)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감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 (다) 계단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할 것
- (라)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다.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1)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인 창문(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에 한한다) 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의 배연설비가 있는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 (2) 계단실·노대 및 부속실(「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하는 부속실을 포함한다)은 창문 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각각 구획할 것
- (3) 계단실, 부속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 (4)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 (5) 계단실·노대 또는 부속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 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불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계단실, 노대 또는 부속실 외의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 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 (6) 계단실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부분 외에는 건축물의 안쪽에 접하는 창문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 (7)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불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그림 38)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8) 노대 및 부속실에는 계단실 외의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 등(출입구는 제외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 (9)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한 감종방화문을 설치하고,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감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 (10)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되, 피난층 또는 지상층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 (11)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방향으로 열 수 있을 것
- ※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돌음계단으로 하여서는 아니되며, 영 제40조에 따라 옥상광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해당 건축물의 옥상으로 통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서 피난시 이용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4. 지하층의 설치

가.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은 설치 의무규정이 폐지되었으나, 지하층을 설치할 경우의 그 구조 및 설비에 대한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法 제53조)

나. 지하층의 구조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1) 거실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직통계단 외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을 설치할 것. 다만,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단란주점, 당구장, 노래연습장,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예식장, 공연장,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숙박시설 중 여관·여인숙, 위탁시설 중 단란주점·주점영업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할 것
- (3)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방화구획으로 구획되는 각 부분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되, 이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할 것
- (4)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할 것
- (5) 지하층의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다. 비상탈출구의 구조기준

- (1) 비상탈출구의 유효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유효높이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것
- (2) 비상탈출구의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며, 내부 및 외부에는 비상탈출구의 표시를 할 것

- (3) 비상탈출구는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 (4) 지하층의 바닥으로부터 비상탈출구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벽체에 발판의 너비가 20센티미터 이상인 사다리를 설치할 것
- (5) 비상탈출구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까지 이르는 피난통로의 유효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통로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과 그 바탕은 불연재료로 할 것
- (6) 비상탈출구의 진입부분 및 피난통로에는 통행에 지장이 있는 물건을 방치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 (7) 비상탈출구의 유도등과 피난통로의 비상조명등의 설치는 소방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할 것

제4절 피난에 필요한 옥상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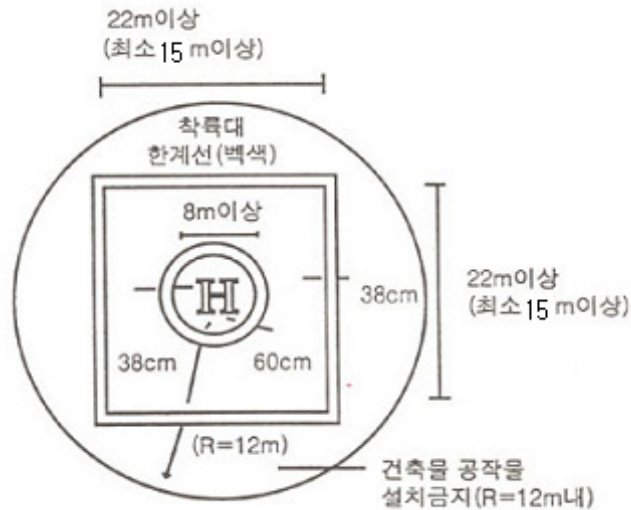
1. 옥상 광장등의 설치(승 제40조)

- 가. 5층 이상의 층이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에 쓰이는 경우에는 피난의 용도에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 나.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의 층에 있는 노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가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노대 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헬리콥터 착륙장의 설치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의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옥상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Heliport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가. 헬리포터의 길이와 너비는 각각 22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건축물의 옥상 바닥의 길이와 너비가 각각 22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헬리포트의 길이와 너비를 각각 15미터까지 감축할 수 있다.
- 나. 헬리포트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12미터 이내에는 헬리콥터의 이·착륙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공작물 또는 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 다. 헬리포트의 주위 한계선은 백색으로 하되, 선의 너비는 38센티미터로 할 것.
- 라. 헬리포트의 중앙부분에는 지름 8미터의 ㉠를 백색으로 하되 “H” 표지의 선의 너비는 38센티미터로, “O” 표지의 선의 너비는 60센티미터로 할 것



(그림 39) 헬리포트의 설치기준

제5장 소방상 필요한 건축 설비

제1절 배연설비의 설치와 구조

1. 배연설비의 설치 기준(設備基準規則 제14조)

가. 6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 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및 장례식장의 거실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건축물에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미터 이내 일 것. 다만, 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2) 배연구의 유효면적은 창문의 종류별로 법규에서 규정한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1 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3)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 (4) 배연구는 예비전원에 의하여 열 수 있도록 할 것
- (5) 기계식 배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

나.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 및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배연설비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1) 배연구 및 배연풍도는 불연재료로 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원활하게 배연시킬 수 있는 규모로서 외기 또는 평상시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골뚝에 연결할 것
- (2) 배연구에 설치하는 수동개방장치 또는 자동개방장치(열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에 의한 것을 말한다)는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 (3) 배연구는 평상시에는 닫힌 상태를 유지하고, 연 경우에는 배연에 의한 기류로 인하여 닫히지 아니하도록 할 것
- (4) 배연구가 외기에 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연기를 설치할 것
- (5) 배연기는 배연구의 열림에 따라 자동적으로 작동하고, 충분한 공기배출 또는 가압능력이 있을 것
- (6) 배연기에는 예비전원을 설치할 것
- (7) 공기유입방식을 급기가압방식 또는 급·배기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할 것

제2절 승용승강기의 설치와 구조

1. 설치기준

가. 층수가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는 다음표의 기준에 의하여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용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6층 이상의 건축물에 1개 층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승용승강기의 승강로를 연장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표 5-1〉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設備基準規則 제5조 별표1)

건축물의 용도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	3천제곱 미터 이하	3,000제곱미터 초과
(1)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 (2) 판매및 영업시설 중 도·소매시장 및 상점 (3) 의료시설 중 병원 및 격리병원		2대	2대에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매 2,000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의 비율 로 가산한 대수 이상
(4)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및 동·식물원 (5) 업무시설 (6) 숙박시설 (7) 위락시설		1대	1대에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매 2,000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의 비율 로 가산한 대수 이상
(8) 공동주택 (9)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10) 기타시설		1대	1대에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매 3,000제곱미터이내마다 1대의 비율로 가산한 대수 이상

※ 승강기의 대수 산정에 있어서 8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강기는 위 표에 의한 1대의 승강기로 보고, 16인승 이상의 승강기는 위표에 의한 2대의 승강기로 본다.

2. 승용승강기의 구조

- 가. 승강기의 각 부분은 안에 탄 사람 또는 물건이 부딪쳤을 때 부서지거나 고장이 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할 것
- 나. 비상시 승강기의 외부로 탈출할 수 있는 비상탈출구를 설치할 것
- 다. 승강기(침대용 승강기 제외)에는 하나의 출입구만을 설치할 것
- 라. 승강기안의 잘 보이는 곳에 당해 승강기의 용도 및 적재하중 또는 최대정원을 표시할 것
- 마. 승강기의 원동기·제어기 및 권상기는 승강기마다 따로 설치할 것
- 바. 승강기 및 승강로에는 다음에 정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 (1) 승강기 및 승강로의 출입문이 모두 닫히지 아니하면 승강기가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하는 장치

- (2) 승강기가 제 위치에 정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강로의 출입문이 열리지 아니 하는 장치
- (3) 승강기의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빨라지는 경우에는 동력을 자동적으로 끊는 장치
- (4) 동력이 끊어진 경우에는 원동기의 회전을 막는 장치
- (5) 승강기의 하강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빨라지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하강을 막는 장치
- (6) 승강기가 승강로의 바닥에 충돌하는 경우에는 승강기안의 사람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충격완화장치
- (7) 비상시에는 승강기 안에서 외부로 연락할 수 있는 장치
- (8) 적재하중을 초과하면 경보가 울리고, 출입문의 닫힘을 자동적으로 막는 장치
- (9) 정전시에 1룩스 이상의 조도로 비출 수 있는 예비조명장치

제3절 비상용승강기의 설치와 구조

1. 설치기준

가.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승용승강기외에 다음 표의 기준에 의한 대수이상의 비상용승강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2대 이상의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시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표 5-2〉 비상용승강기의 설치 기준

구 분		설치대수
높이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중 최대바닥면적	1,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1대 이상
	1,500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1대에 1,500제곱미터를 넘는 매 3천 제곱미터이내마다 1대씩 가산한 대수이상

2.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을 거실 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 나.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 다. 높이 31미터를 넘는 층수가 4개 층 이하로서 당해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200제곱미터(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내 마다 방화구획으로 구획한 건축물

3. 비상용승강기의 구조

- 가. 비상용승강기는 승용승강기의 구조와 마찬가지로 구조의 안전성은 물론 화재 시 인명구조·피난·소화활동 등에 사용되므로 다음과 같은 특수한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 (1) 외부와 항상 연락할 수 있는 전화를 설치할 것
 - (2) 정전시에는 60초 이내에 승강기의 운행에 필요한 전력용량을 자동적으로 발생시키도록 하되, 2시간 이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하며 수동으로도 전원을 바꿀 수 있는 예비전원에 의하여 승강기를 가동할 수 있도록 할 것.
 - (3) 승강기의 운행속도는 분당 60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 가. 승강장의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의 겸용부분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별도로 구획하는 때에는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할 수 있다.
- 나. 승강장은 각 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승강로의 출입구는 제외)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 할 것. 다만, 피난층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다. 노대 또는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창문이나 배연설비를 할 것.
- 라.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는 불연재료로 할 것.

- 마. 채광이 되는 창문이 있거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 바.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비상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옥외에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 피난층이 있는 승강장의 출입구(승강장이 없는 경우에는 승강로의 출입구)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광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한 당해 대지에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에 이르는 거리가 30미터 이하 일 것
- 아. 승강장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당해 승강기가 비상용 승강기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할 것

5.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로의 구조

- 가. 승강로는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할 것
- 나. 각층으로부터 피난층에 이르는 승강로는 단일구조로서 연결하여 설치할 것.

02

예방민원관련질의사항

Gangwondo Fire Service Academy



목 · 차

CONTENTS

제 1 장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1 절	소방시설의 적용	137
제 2 절	방화관리	144
제 3 절	방 염	150
제 4 절	피난, 방화시설	153
제 5 절	다중이용업	162
제 6 절	기 타	178

제 2 장 국가화재안전기준

제 1 절	소화설비	181
제 2 절	경보설비	189
제 3 절	피난설비	193
제 4 절	소화활동설비	196

제 3 장 위험물안전관리법

제 1 절	위험물 허가	202
제 2 절	제조소, 일반취급소	213
제 3 절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217
제 4 절	옥내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235
제 5 절	옥외탱크저장소	239
제 6 절	이동탱크저장소, 이송취급소	243
제 7 절	위험물안전관리자, 자체소방대	246
제 8 절	운반기준, 소화설비, 기타	254

제1장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절 소방시설의 적용

1. 소방시설 설치여부에 대한 질의

질 의

1. 레미콘회사의 골재(자갈, 모래) 보관창고로서 첨부도면과 같이 전면과 옆면 등 사면이 개방된 구조이며, 전기설비가 없고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건축물의 경우에도 경보설비 및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2. 엘리베이터 기계실이 있는 건축물에 5층을 증축할 경우에도 기계실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답 변 (소방방재청 : 2007. 3. 5)

1. 첨부도면과 같은골재 보관창고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구분란 제1호 “화재위험도가 낮은 특정소방대상물”중 “불연성물품을 저장하는 창고”에 해당하나 소화기와 경보설비는 제외되지 아니하므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2. 엘리베이터 기계실은 전기설비와 엘리베이터를 제어하는 설비 등이 있으며,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헤드의 설치제외장소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2. 건축설계변경에 따른 소방법 적용시점 질의

질 의

1. 근린생활시설로 최초 건축허가(2004년.4월)를 받고, 1차 설계변경(2005년10월)을 하였다가 지하2층 용도변경(기계식 주차장→근린생활시설)으로 2차 설계변경(2007년8월)을 하였으나, 건축물 사용승인과정에서 주차장법에 저촉되어 지하2층을 다시 원래의 용도대로 기계식주차장으로 환원할 경우 소방

시설 기준의 적용시점을 1차와 2차중 어느 시점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 변 (소방안전협회 : 2008. 3. 7)

1. 소방시설등의 설치에 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적용은 최초 건축허가 신청일 또는 사업승인 신청일 당시 기준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1차 설계변경 내용을 토대로 건축허가신청 또는 사업승인 신청일 당시의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조선소 도장공장내 옥내소화전 및 발신기 설치관련 질의

질 의

조선소내 도장 공장으로 건물내부에 기둥 및 벽체가 없는 구조이며 공정특성상 작업 공간내 물품 및 기타 구조물을 설치될 수 없는 구조로 옥내소화전과 발신기의 반경25m를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여 공장건물 가운데 부분의 옥내소화전 설치 대신에 건물의 외벽 내측 부분에 옥외소화전을 설치하여도 가능한지 여부

답 변 (소방방재청 : 2008. 3. 7)

옥내소화전설비 대신 옥외소화전을 설치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의와 같은 구조의 경우 옥내소화전 방수구를 기준에 적법하게 설치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로 판단되며, 이와 같은 구조의 경우에는 건축물 외벽의 내측에 옥내소화전을 설치하고 소방호스를 충분히 비치하여 방수구 설치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관할소방서와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4. 법령개정에 따른 법적용에 관한 질의

질 의

1층과 2층이 근린생활시설이며 연면적 700㎡ 이 넘어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되어 있었고, 2010. 1월 1층을 노유자시설(어린이집)로 변경하면서(법적 조치 완료-소방서, 구청 등) 건축물대장에 용도변경 완료(2010년 4월 2일) 되었습니다.

1. 노유자시설은 면적이 300㎡이상 600㎡미만이면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대상인데 어린이집으로 변경할 때 소방서에서 직접 방문하여 소방법에 위반 사항이 없음을 확인(구획별로 소화기가 몇 개 필요한지, 방염상태, 자동화재 탐지설비 이상유무 등)했는데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한다면 2층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화 재탐지설비는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지 여부

답 변 (소방안전협회 : 2010. 4. 15)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15조) 관련 별표 4에 노유자시설 (300㎡ 이상 600㎡ 미만)이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에 적용된 법령개정일은 2008년 2월 15일이며 시행일은 6개월 후인 2008년 8월 16일 입니다. 또한 부칙에서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설치대상으로 포함시키는 적용 시기는 시행일 이후 건축 또는 용도변경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 개정된법령 사항으로 보았을 경우에는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 같으나 자세한 사항은 현장상황을 알 수 있는 소방서에서 확인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2. 용도변경되는 부분이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자동화재 탐지설비 설치 대상은 건축물 전체 연면적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5. 사용 안하는 층의 소방시설 적용에 관한 사항

질 의

전체 4층 상가 중 현재 3층과 지하1층은 사용하지 않는 상태이고, 3층의 경우 평소 방화문으로 폐쇄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3층과 같이 사용하지 않는 층

의 완강기와 지하로 내려가는 층계의 유도등을 항상 정상상태로 유지관리 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 변 (소방안전협회 : 2010. 7. 19)

건축물이 사용승인이 난 경우에는 소방시설을 정상적으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공실인 경우에도 피난기구와 유도등은 정상적으로 설치 작동되는 것이 맞습니다.

6. 스프링클러 헤드의 제외에 관한 사항

질 의

전층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인 건물안 1층 현관 로비에 면적이 120평정도이고 높이가 평균 5m 정도되는 스튜디오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스프링클러 헤드를 스튜디오 내부에 설치해야 되는지 여부와 아니면 별도의 가스계 소화설비를 설치하여도 되는지 여부

답 변 (소방안전협회 : 2010. 2. 2)

1층 현관 로비에 설치되는 스튜디오 내부에도 헤드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스튜디오라는 곳은 통신장비 등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5조 헤드의 설치 제외가 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제외할 수 없다면 헤드를 그 내부도 설치해야 하며, 제외가 가능하다면 그 내부는 가스계소화설비 등을 적용하여 고가의 장비를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7. 가스누설경보기 설치 기준에 관한 질의

질 의

숙박시설로서, 일반전기설계도면에 홈네트워크서비스1)가 설계되어 있으며,

가스누설감지기와 차단기가 연결되어 있고 경보는 홈네트워크 본체에서 울리게 되어있는데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가스누설경보기를 따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홈네트워크 설비로 대체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답 변 (소방방재청 : 2010. 8. 12)

현행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특정시설에 대하여 가스누설경보기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설치기준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여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가스안전시설에 대하여는 관련법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과 그 하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지식경제부령) 별표 1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 2 이상의 소방대상물을 별개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기준에 관한 질의

질 의

1. 2 이상의 소방대상물 연결통로의 양쪽에 화재시 경보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닫히는 구조의 방화문 또는 방화셔터를 설치한 경우 별개의 소방대상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방화문이 상시 닫히는 구조인 경우 화재시 경보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닫히는 시스템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특정소방대상물을 증축하는 경우 기존부분과 증축부분이 갑종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기존부분에는 증축 당시 법령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

1) 공유기(게이트웨이)를 통해 집안의 각종 제품을 원격 조종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이용 고객은 집 밖에서 컴퓨터나 PDA, 휴대폰을 통해 가스나 전자제품을 끄고 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 영화 게임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TV를 통해 접할 수 있다. 또한 침입탐지센서와 주방 TV폰 등을 통해 집안 보안상태를 확인하고 비상시 경찰 등에 연락할 수 있다.

하고 있음. 이 경우 방화문의 구조와 관계없이 방화구획만 되어 있으면 되는지 여부.

답 변 (소방방재청 : 2007. 9. 6)

1. 연결통로 양쪽에 설치된 방화문이 상시 닫히는 구조인 경우 별도로 화재시 경보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닫히는 구조로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2.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방화문의 구조는 건축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합니다.

9. 연결통로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대한 질의

질 의

2개의 특정소방대상물을 길이 10m초과의 연결통로(강화유리와 알루미늄 구조)로 연결된 경우 별개의 소방대상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와 같은 구조가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해당된다면 어떠한 소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별개의 소방대상물로 볼 수 있는지.

답 변 (소방방재청 : 2007. 8. 27)

강화유리와 알루미늄 구조의 연결통로로 연결된 경우에는 연결통로의 길이에 관계없이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해당되며(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2호 나목),

별개의 소방대상물로 보기 위해서는 연결통로 양쪽에 경보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방화셔터 또는 방화문을 설치하거나, 화재시 자동으로 방수되는 방식의 드렌처설비 또는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10. 아케이드²⁾ 설치시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해당 되는 여부 질의

질 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설치하는 아케이드(비가람용 또는 차광용)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비교 제2호 규정의 연결통로에 해당되지는 여부와 아케이드를 건물과 건물을 연결하는 구조로 설치한 경우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 변 (소방방재청 : 2007. 3. 6)

아케이드를 건물과 건물을 연결하는 구조로 설치한 경우에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비교 제2호 규정의 통로(통하여 다니는 길)에 해당되며 이와 같은 구조로 건물과 건물이 연결된 경우에는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해당됩니다

11. 모텔하우스 소방시설 설치 관련여부 질의

질 의

1. 소방법령상 모텔하우스의 용도와 모텔하우스는 방염처리 대상인지 여부
2. 주요구조부가 목재로 지어진 모텔하우스의 경우 주요구조부 내·외부 모두 방염처리 하여야 하는지 여부
3. 모텔하우스에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 변 (소방방재청 : 2007. 10. 25)

1. 모텔하우스의 경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 규정의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전시장)에 해당되며 또한,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라 방염처리대상에 해당됩니다.
 2. 주요구조부가 목재인 경우 주요구조부는 방염처리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내부에 설치되는 칸막이 등 실내장식물은 방염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 2) 여러개의 기둥으로 조성된 형태의 개방된 통로공간을 말한다.

3. 모델하우스는 소방법령상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에 해당되어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요구조부가 목재인 경우 스프링클러설비 등 고정식 소화설비의 설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설치하여야 할 소방시설의 종류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옥외소화전, 소화기등이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소방서와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민원해결을 위해 바람직합니다.

12. 리모델링시 소방법 적용에 관한 질의

질 의

1. 15층 아파트에 1개 층을 증축하면서 전층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전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옥상출입문을 반드시 개방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 변 (소방안전협회 : 2007. 12. 7)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소화설비란 3호 다목에 따라 주택법령에 의하여 기존의 아파트를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층고가 변경되는 11층 이상의 경우 전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하여야 합니다.
2. 화재시 원활한 피난을 위해 개방상태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2절 방화관리

1. 방화관리자 선임대상 소급적용에 관한 질의

질 의

1996.5.3 건축허가, 1998.09.22. 사용승인 된 종교문화집회입니다. 소방시설은 지하층에 옥내소화전만 설치되어 있고 사용승인 당시 방화관리자 선임 대상이 아니었으나 1999.7.29 시행령이 개정(별표2)되면서 방화관리자 선임 대상에 옥

내소화전 설비가 포함되어 방화관리자 선임대상으로 되었습니다. 구법에 2급 방화관리자 대상이 아니었으나, 법이 바뀌어 2급 방화관리자 대상으로 해당된다면 소급적용하여 방화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지요?

답 변 (소방방재청 : 2007. 12. 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9조에 따라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2. 감독할 있는 자의 범위에 관한 질의

질 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3항에서 “방화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방화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를 방화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에서 “감독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재직증명서상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도 “감독할 수 있는 자”로 볼수 있는지 여부

답 변 (소방방재청 : 2008. 5. 17)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서 방화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방화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를 방화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에서 “감독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직위와 관계없이 직제상 또는 업무상 실질적으로 방화관리업무를 담당하며 감독할 수 있는 자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계약직이라도 방화관리업무를 감독할 수 있다면 방화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3. 경매 취득일 관련 방화관리자 선임에 관한 사항

질 의

2008년 3월초 법원 경매로 건물을 취득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기존 건물주가 건물을 인도하지 않아 법원의 인도명령으로 5월 27일 실질적인 입주를

하였는데 방화관리자 선임 기한이 소유권 이전된 3월초부터 30일 이내인지 아니면 인도명령 완료후인 5.27일부터 30일 이내인지 여부

답 변 (소방방재청 : 2008. 5. 30)

경매로 방화관리대상물을 취득하였을 경우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등기부등본 기재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다만, 권리를 취득하였으나 방화관리대상물에 들어 갈수가 없어 실질적인 권리행사가 어려웠고, 종전의 방화관리자가 해임되지 않았다면 방화관리자 선임일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은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4. 공공기관 방화관리자 벌칙 부과에 관한 사항

질 의

공공기관이 자체점검을 늦게 실시하였는데 설치유지법 제25조 위반 자체점검 미실시로 입건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동법 제24조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와 공공기관의 방화관리 규정(대통령령 제 20443호) 방화관리자 업무태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 변 (소방방재청 : 2008. 7. 18)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규정을 적용하여 과태료 부과처분하시기 바랍니다.

5. 공공기관 방화관리에 관한 사항

질 의

1. ○○군 소유의 건물을 다른 단체에서 사용하며 시설물 관리는 군청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방화관리자를 건물에 입주해있는 단

- 체장이 감독적직에 있는 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관리주체인 ○○군에서 감독적직위에 있는 직원을 선임해서 소방서에 통보해야 되는지 여부
2. 공공기관 소유의 체육관, 주차장, 관망탑 등에 대하여 관리는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의 각과에서 관리하며 상주직원이 있을 경우 상주직원이 감독적직위에 해당되지 않으면 관리부서의 감독적직에 있는 자를 방화관리자로 선임해야 되는지 아니면 상주직원을 방화관리자로 선임해도 되는지 여부,
 3. 만약 질문1, 2의 경우 관리하는 과의 감독적직에 있는 자를 방화관리자로 선임해야 한다면 1개과에서 2~3개 시설을 관리할 때 감독적직에 있는 과장 또는 담당을 1개 시설에 1인씩 선임해야 되는지 여부

답 변 (소방방재청 : 2009. 5. 30)

1. 관리주체인 ○○군에서 감독적직위에 있는 직원을 선임해서 소방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2. 공공기관의 건축물이 2개 이상의 구역에 분산되어 위치한 경우에는 각각의 건축물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감독적 직위에 해당하는 자로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다만 분산되어 있는 건축물에 근무하는 직원 중 감독적직위에 해당 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하위직의자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6. 자진 소방시설 방화관리자 선임대상 여부 질의

질 의

1989년 이전에 완공된 1동의 연면적이 1755 m² A학교에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이때에는 법정시설이었음). 그러나 최근 교육연구시설은 2000m² 이상일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게 됩니다.
자진설비일 경우 방화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여부

답 변 (소방방재청 : 2009. 7. 22)

공공기관 방화관리자 선임의무는 없습니다.

7. 방화관리자 중복 선임에 관한 질의

질 의

현재 2급건물에 방화관리업무대행을 받고 있는 중인데 방화관리업무대행을 받고 있으면 누가(방화관리대행업체 아니면 방화관리 선임자)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여부

답 변 (소방방재청 : 2009. 7. 22)

2급 방화관리자 선임대상에서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대행자가 건물에 상주하며 대행하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가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행자를 감독하는 방화관리자 선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8. 종합정밀점검 결과를 기한 내 미제출시 벌칙 부과에 관한 질의

질 의

일반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종합정밀점검 실시결과 보고를 늦게 하는 경우 제53조 의거 100만원의 과태료처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공기관의 경우 사용승인일 2005.02.21.일 경우 종합정밀점검을 6월25일 시행하고 그 결과보고를 8월 25일 보고시 벌칙규정을 어떻게 적용할지 궁금합니다.

답 변 (소방방재청 : 2010. 9. 9)

1. 공공기관의 종합정밀점검 결과 제출을 늦게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2. 종합정밀점검 결과제출 지연에 대하여 방화관리자 업무태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방화관리자의 업무 범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9. 방화관리자 중복 선임에 관한 사항

질 의

기존 건물은 2중 방화관리대상이고 건물주는 A입니다.

같은 부지 내에 B가 건물을 신축하였고 두개의 건물 사이에 담은 없고 건물간의 거리는 10M 정도. A건물과 B건물은 대표이사는 같으나, 법인이 다르다면 A가 B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할 경우 기존 A건물의 방화관리자를 신축건축물 방화관리자로 겸임 가능한지, 아니면 별도의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 변 (소방안전협회 : 2010. 9. 9)

관리권원이 서로 다른 경우 각 각의 소방대상물에 각 각의 방화관리자가 선임되어야 합니다.

10. 방화관리자 공석에 따른 재선임에 여부에 관한 질의

질 의

공공기관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자로 선임/신고된 자가 6개월간 해외 어학연수를 간다면 방화관리자가 해임된 것으로 보아 30일 이내에 새로운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6개월간 직무대행자를 한시적 방화관리자로 원장이 선임하고 소방관서에 신고한 후 연수가 종료 후 다시 방화관리자로 복귀가능한지 여부

답 변 (소방안전협회 : 2010. 8.27)

6개월 동안 해외연수로 방화관리자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방화관리자를 30일 이내 재선임하여야 합니다.

또한 감독적직위자로 선임되어야 합니다.

감독적직위자는 방화관리자로서 자격으로 선임이 되어야 하며, 소방관련 기술자격이 없는 경우, 공공기관방화관리자 교육을 이수하여야합니다.

제3절 방업

1. 방염대상 관련법 조항 해석 질의

질 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1호의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로서" 의 문구 해석을 근린생활시설 중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로 해석하는지 아니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제5조관련) 3.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의 분류로 해석하는지 여부.

답 변 (소방방재청 : 2008. 4. 15)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1호의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로서" 규정의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은 동시행령[별표 2] 제3호 규정의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이 해당합니다.

2. 지하철역사내 광고물 방염 관련 질의

질 의

지하철역사내 설치하는 광고물을 소방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실내장식물로 보아 방염성능기준이상의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 변 (소방방재청 : 2007. 11. 23)

지하철 역사에 설치하는 광고물은 방염처리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만 최근 지하철역사내 가연성 광고물 설치증가로 화재발생 위험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광고물 연소 시 발생하는 유독가스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됩니다. 따라서 가연성 광고물 사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방염 선처리된 제품의 설치 관련 질의

질 의

1. 건축자재인 MDF판넬을 제조과정에서 방염처리한 후 PVC필름을 접착하여 방염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그 제품을 한국소방검정공사에서 방염성능 검사결과 합격되어 각 제품 1장마다 방염합격필증을 붙여 출고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같이 출고된 방염선처리 제품을 현장에서 시공할 경우, 현장방염처리 물품과 같이 시료 채취하여 다시 방염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답 변 (소방방재청 : 2007. 6. 15)

1. 방염대상물품인 MDF판넬을 제조·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선처리)한 다음 한국산업기술연구원의 방염성능검사 시험에 합격되어 합격필증을 붙인 제품은 방염 선처리 된 물품입니다.
2. “1”의 방염 선처리된 물품을 영업장의 인테리어 등에 가공하여 사용할 경우 그 자체가 방염 선처리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가 적법한 것이며, 현장방염처리물품(후처리)처럼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 후 다시 방염성능확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4. 노유자시설 방염범위에 대한 질의

질 의

바닥에 설치하는 화학매트, 붙박이장, 천장에 설치한 모기장, 베란다에 설치한 버티컬 블라인드(커튼류)가 방염처리 대상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 변 (소방방재청 : 2007. 5. 29)

붙박이장, 천장에 설치하는 모기장, 바닥에 설치하는 화학매트는 방염처리 대상물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베란다에 설치한 버티컬 블라인드의 재질이 합성수지류·섬유류 또는 목재·합판의 제품인 경우에는 방염성능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5. 실내장식물의 범위와 방염처리 관련 질의

질 의

1. 가구류인 붙박이장과 집기류인 응접실 소파, 의자가 실내장식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이동용 카페트와 방석은 방염처리대상물품인지 여부.
3. 합판으로 만든 이동용 무대나 이동용 합창대는 방염처리대상 물품 인지 여부.
4. 종교시설에서 사용하는 스크린이 방염처리 대상 물품인지 여부
5.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와 제53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와 벌금을 한번만 납부하는지와 과태료와 벌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은?
6.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와 제53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와 벌금을 납부하고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가중처벌 여부.

답 변 (소방방재청 : 2007. 1. 30)

1. 가구류인 붙박이장과 집기류인 응접실 소파, 의자가 실내 장식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카페트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방염처리대상물품이며, 방석은 방염처리대상물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무대용 합판의 경우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서 방염처리대상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동용 무대나 이동용합창대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거나 화재 예방상 방염처리를 하고 사용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종교시설에서 사용하는 스크린은 방염처리대상물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5. 질의사항의 경우 소방서장이 관련법령에 처리해야 하는 사항이나 경우에 따라 사법부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제4절 피난·방화시설

1. 노유자시설 비상구 폐쇄에 관한 사항

질 의

요양시설의 건물 층수가 3/1층이고 양쪽으로 계단 2개와 방화문이 설치되어 있으며 엘리베이터가 1대 있는데 치매노인의 사고 방지를 위해 2층과 3층 방화문에 전자 잠금장치를 별도로 설치하였고 내부에서 계단으로 나가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이 잠금장치가 소방관계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 노인복지법 관련규정 참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의 4

사. 그 밖의 시설 (2).(4) 목을보면

(2)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하면, 치매노인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잠금장치를 하여야한다.

(4) 주방등 화재위험이 있는 곳에는 치매노인이 임의로 출입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배회환자의 실종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출입구에 적절한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답 변 (소방방재청 : 2008. 12. 11)

노유자시설의 출입문 잠금장치설치에 대하여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 감지기와 연동하여 화재발생 시 자동으로 개방되는 구조 및 수동으로 개방되는 구조의 시설을 설치하시고 각 층별로 근무자를 상주시켜 화재등 안전사고 발생시 수용되어 있는 노유자들을 안전하게 피난 및 대피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2. 공동주택 계단의 적치물 비치에 관한 질의

질 의

아래의 사진은 아파트 자전거 보관상태를 찍은 사진으로 보관이 잘 된 경우 (첫 번째), 잘못된 경우(두 번째 사진)를 정확하게 알고자 질문.

1. 공동주택의 자전거 보관 상태는 어느 부분까지 허용이 되는지 여부
2. 복도에 잡다한 물건들이 나와 있는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3. 비상계단 쪽의 비상문은 항상 닫혀 있어야 되는지의 여부

[그림 1]



(보관이 잘된 경우)

(보관이 잘못된 경우)

답 변 (소방안전협회 : 2010. 9. 7)

소방방재청 비상구 시설 등 신고대상위반행위에 대한 세부 기준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동주택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에 해당되는 경우와 해당되지 않은 경우 확인하세요.

그리고 철문으로 된 비상구 방화문은 도어체크가 있어야 하며, 평상시 닫힌 상태(고임쇠, 열린 상태 고정 등은 불가)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별 첨

신고대상에 대한 위반행위별 세부기준 지침

피난·방화시설 등의 범위

- * 소방시설설치유지법 제10조 제1항
 - 건축법 제49조
 - 계단(직통계단·피난계단·옥외피난계단), 복도, 출입구(비상구 포함), 옥상광장, 기타 피난시설, 피난과 소화상 필요한 통로, 방화구획(방화문 포함), 거실반자, 거실채광등(창문, 배연설비 포함)
 - 건축법 제50조 - 건축물의 내화구조, 방화벽
 - 건축법 제51조 - 방화지구안 건축물(방화구조, 간판, 지붕, 방화문 등)
 - 건축법 제52조 - 내부마감재료(방화상 지장이 없는 재료)
 - 건축법 제53조 - 지하층의 구조

위반행위별 세부기준

- * 동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 기준

1. 피난·방화시설 등의 폐쇄(잠금을 포함)행위

- 건축법령에 의거 설치한 피난·방화시설을 유사시 사용 할 수 없도록 폐쇄하는 행위
- 계단, 복도 등에 방범철책(창) 등을 설치, 시건장치 등으로 잠금을 하는 행위
- 비상구 등에 용접, 조적, 쇠팅살, 석고보드 또는 합판등으로 폐쇄하거나 개방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행위
- 기타 객관적인 판단하에 누구라도 폐쇄라고 볼 수 있는 행위

예외 : 피난·방화시설 폐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1) 옥상이 설치된 건축물 최상층에 주택이 있는 경우 당해층 등의 계단에 방범 철책(창)을 설치하고 잠금장치를 설치한 경우로서,
⇒ 주택을 제외한 타 영업장의 관계인이 방범철책(창)의 잠금장치를 유사시 개방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 경우
 - 2) 정신병동등 특수시설이 있는 의료시설에서 당해 층의 복도 및 계단 등에 방범철책(창)을 설치하고 잠금장치를 설치한 경우로서,
⇒ 건물 관계인이 상주하면서 방범철책(창)등의 잠금장치를 유사시 개방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 경우
 - 3) 고시원 등에서 영업상 도난방지 및 출입통제를 위하여 출입문을 전자도어잠금장치(카드사용 포함) 또는 자동번호키 도어를 설치한 경우로서,
⇒ 건물 관계인이 상주하면서 유사시 문 개방이 가능한 경우
 - 4) 영화상영관 다중이용업소 등에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출입문에 잠금장치가 설치된 경우, 또는 연구실험실 등 방문자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잠금장치를 설치한 경우로서,
⇒ 건물 관계인이 상주하면서 유사시 문 개방이 가능한 경우
- ※ 피난·방화시설 관리로 인정되는 경우 : 1), 2), 3), 4) 공통
- 화재등 비상시 자동 개방되는 KFI인증 비상문자동 개방장치 설치
 - 방재실에서 원격조작에 의해 자동 개방되는 구조
 - 화재 또는 정전시 자동 개방되는 구조

2. 피난·방화시설 등의 훼손행위 2

- 방화문을 철거(제거)하는 행위나 방화문에 고임장치(도어스톱)등 설치 또는 자동폐쇄장치를 제거하여 그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 옥외 피난계단 파손 또는 훼손으로 피난상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
- 동일층에 두개 이상의 영업장을 운영하며 영업의 편의를 위하여 내부 출입문 등 설치로 방화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방화문의 문틀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 등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우 제외.
- 기타 객관적인 판단하에 누구라도 피난·방화시설을 훼손하였다고 볼 수 있는 행위(구조변경 등으로 훼손되어 사용이 곤란한때)

예 외 : 피난방화시설 등의 훼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건물주 또는 건물관계인 등이 피난·방화시설 등의 수리를 위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사전 신고 후 피난·방화시설 등을 임시 제거한 경우

3.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행위

- 계단, 복도(통로) 또는 출입구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또는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 2방향 이상에서 찍은 사진 및 (동)영상 등 그 폭의 넓이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 인정
- 계단 또는 복도에 방범철책(문)등을 설치하는 행위
 - 방범철책에 고정식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는 피난·방화시설의 폐쇄행위에 해당
- 방화셔터 작동범위 내 물건 또는 장애물을 설치하여 그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전원차단 등 고장상태 방치하는 행위
- 비상탈출구로 통하는 피난통로를 구획하거나 보조문을 설치하여 피난에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

예외 -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 공동주택

- 복도에 자전거 등을 질서있게 일렬로 정비하여 복도(통로)폭을 2사람 이상이 피난 가능하도록 확보한 경우
- 상시보관이 아닌 일시보관 물품으로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생활용품 등이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
- 복도 끝이 막힌 구조로 그 끝쪽에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

2) 공동주택 이외의 특수장소

-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면적,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즉시 현시정정이 가능한 경우(현장상황에 따라 소방관서장 판단)
- 계단참 구석에 휴지통 등을 고정하여 설치하는 경우(내화성능의 재료로 피난에 지장이 없는 소규모의 것)
- 자판기 등이 벽등에 고정 설치되어 객관적으로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현장상황에 따라 소방관서장 판단)
- 상시보관이 아닌 일시보관 물품으로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생활용품 등이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

4. 피난·방화시설 등의 변경 행위

- 방화구획 및 내부마감 재료를 임의로 변경하여 건축법령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 행위
 - 임의구획으로 무창층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 방화구획에 개구부를 설치하여 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
- 방화문을 철거하고 목재, 유리문 등으로 변경하는 행위
- 기타 객관적인 판단하에 누구라도 피난·방화시설 변경으로 인하여 대피가 곤란하다고 볼 수 있는 행위

5. 피난·방화시설등 용도장애 또는 소방활동 지장 초래행위

- 상기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적시한 행위로 피난·방화시설등의 용도에 장애를 유발하거나, 화재시 소방호스 전개상 걸림·꼬임현상 등 소방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행위
- 상기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적시하지 아니한 행위로 피난·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행위

옥상광장 등의 출입문 개방에 대한 지침

□ 옥상광장 설치대상 * 건축법시행령 제40조제2항

- 5층 이상의 층이 다음의 용도로 쓰이는 대상물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 종교시설
 - 판매시설
 -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 장례식장

□ 헬리포트 설치대상 * 건축법시행령 제40조제3항

-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의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만 해당)

□ 옥상광장 및 헬리포트 출입문 개방 기준

- 옥상광장 및 헬리포트 설치 의무가 있는 대상물의 경우,
 - 옥상광장 등의 출입문 상시 개방 원칙
- 옥상광장 및 헬리포트 설치 의무가 없는 대상물의 경우,
 - 소방안전상 옥상출입문의 개방 필요성을 홍보·지도하고, 방법 등의 이유로 상시 개방이 불가능한 대상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비상문을 설치하도록 권고함.

◀ 옥상출입문 등의 설치 및 관리방법 권고사항 ▶

- 24시간 관리인이 상주하면서 비상시 옥상출입문의 개방이 가능하도록 관리
- 화재 등 비상시 자동 개폐되는 KFI인증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 자동소화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작동시 자동 개방되는 구조
- 관리사무소(방재실)에서 원격조작으로 자동 개방되는 구조
- 옥상 출입문 직근에 열쇠보관함을 설치하여 보관함 개방시 관리실에 경보되는 구조
- 옥상출입문 열쇠를 각 세대에 미리 지급하여 유사시 직접 개방이 가능하게 관리(공동주택의 경우)

3. 방화문 고정장치 설치에 관한 질의

질 의

방화문이 출입이 빈번하여 말발굽을 설치하면 비상구 폐쇄등 불법행위에 지적될 것 같고 해서 열감지 휴즈가 장착된 ○○업체의 방화용 도어체크로 교체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은지?

답 변 (소방안전협회 : 2010. 7. 2)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에 의해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합니다. 본 질의의 사항은 방화문이 신속하게 닫히는 구조가(휴즈타입) 아니라고 판단이 되

므로 별도의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방화문이 폐쇄 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4. 건물 옥상 비상구 열쇠함 설치에 관한 질의

질 의 (2010. 7. 2)

동별 옥상이 광장형으로 되어 있어 비상문을 개방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자살 등 사고와 관련하여 관리가 어려워 "비상문 열쇠함"을 옥상문 내부 쪽에 설치한 후 표지를 부착하여 비상시 파손하고 열쇠를 꺼내어 열수 있도록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비상문 개방 관련법에 저촉 되는지 여부

답 변 (소방안전협회 : 2010. 7. 2)

열쇠함 파손 시 경비실에 경보가 울리는 구조이어야 합니다.

5. 옥상 비상구 폐쇄시 위반여부에 관한 질의

질 의

초등학교의 경우 호기심 많고 장난꾸러기들이 많아 옥상으로 올라가서 어떤 장난을 할지 몰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옥상 문을 잠가놓고 열쇠는 관리실에서 따로 관리하려고 하는데 관련법 저촉 여부 (언제든 열수 있도록 열쇠를 인근에 보관한다는 건 열려 있는 상태와 같은 것인데.....좋은 방법은?)

답 변 (소방안전협회 : 2010. 6. 20)

소방시설설치유지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10조 관련 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및 비상구 등 포상제 관련으로 비상구는 상시 개방할 수 있는 구조로 관리하셔야 됩니다.

다만, 다음과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 잠금상태로 관리가 가능합니다.

- 가. 화재 등 비상시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개방되는 비상자동개폐장치
- 나. 방재실 등에서 원격조작에 의해 자동 개방되는 구조
- 다. 정전 시 자동으로 개방되는 구조

6. 출입관리시스템의 소방법 저촉여부 질의

질의

< 시스템 개요 >

- 가. 입실이 가능하다고 인증된 경우에 개폐장치를 자동개방
- 나. 퇴실을 위한 개방버튼을 조작하면 개폐장치를 자동개방
- 다. 화재시 비상문의 개폐장치를 자동개방
- 라. 방재실 등의 관리실에서 원격조작에 의해 개폐장치를 자동개방
- 마. 화재 발생시(또는 정전시) 소방시설과 연동하여 개폐장치를 자동개방하는 구조로 화재수신반 또는 화재경보기와 연동하여 화재감지기로 부터 화재이상 신호 수신시 비상문 등의 출입문을 자동으로 개방하는 기능을 보유

위와 같은 출입문시스템을 건축물 출입문 등에 설치할 경우 소방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동 제품을 한국소방검정공사의 FI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답 변 (소방방재청 : 2008. 2. 12)

출입관리시스템이 화재 또는 정전시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등 소방시설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개방되는 구조로 내부에서 수동으로도 개방이 가능하고 방재실 등에서 원격조작의 기능이 있는 경우에는 소방법에 위반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제품에 대한 성능확인을 위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인증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5절 다중이용업

1. 다중이용업소 계단설치에 관한 질의

질 의

1997년 10월 준공된 근린생활시설에 교육연구시설인 학원을 임대하려고 하는데 학원의 경우 주출입구의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건축물의 경우 계단을 설치할 경우 건폐율 초과로 계단설치가 불가하여 학원 용도로 임대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던지 다른 시설보완으로 학원을 임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변 (소방방재청 : 2007. 1. 10)

학원 등 다중이용업소에 비상구를 설치하도록 한 이유는 주출입구 쪽에서 화재발생시 반대방향에 설치된 비상구를 통해 원활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 우리청에서는 건설교통부와 협의하여 2006년 5월 8일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기존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1.5미터 이하의 옥외피난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한 바 있으며, 또한,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안전기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서 4층 이하의 경우에는 부속실 또는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건물임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동 건물을 이용하는 이용객에 대한 안전확보를 위해 최소한의 규제임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계단 설치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소방서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2. 다중이용업소 주출입구 방화문 설치에 관한 질의

질 의

1. 다중이용업소의 주출입구에 불연재로 만들어진 출입문을 설치하고 방화셔터로 구획할 수 있는가?

2. 영업장의 3면벽은 내화구조이나 주 출입문이 설치된 벽의 일부가 불연재료인 경우에 불연재료 문을 설치할 수 있는지?

답 변 (소방방재청 : 2007. 3. 23)

1.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안전기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중이용업소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경우 주 출입구의 문은 방화문으로 설치하여야 하므로 불연재료 만들어진 출입문이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방화문의 구조)에서 정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면 설치할 수 있으나 방화셔터로 구획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합니다.
2. 주 출입문이 설치된 벽의 일부가 불연재료인 경우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안전기준 제5조제1항제2호 단서규정에 의거 불연재료의 문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3. 다중이용업소 실내장식물 마감처리에 관한 질의

질 의

1. 황토·백토·전분이 함유된 불연재료(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불연·준불연재료를 말함)의 제품을 사용하여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되는 실내장식물에 마감처리 할 경우 별도로 방염처리 또는 불연화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가”와 같은 방법을 처리한 경우 방염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답 변 (소방방재청 : 2007. 3. 6)

1. 황토·백토·전분이 함유된 불연재료의 제품을 사용하여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되는 실내장식물에 마감처리 할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합니다.
가. 황토·백토·전분이 함유된 제품을 준불연재료 이상의 실내장식물에 처리한 경우에는 면적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로 방염 또는 불연화처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나. 황토·백토·전분이 함유된 제품을 합판·목재위에 처리한 경우에는 영업장의 천정과 벽면적 합계의 3/10(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 5/10) 이하의 범위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이 경우 별도로 방염성능시험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 2. 황토·백토·전분이 함유된 제품으로 실내장식물에 마감처리를 한 경우 별도로 방염성능시험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4.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설치 관련 질의

질 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이므로 기존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비상구 등 안전시설 설치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건의.

답 변 (소방방재청 : 2007. 4. 2)

기존다중이용업소의 경우 2007년 5월 30일까지 비상구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이유는 비상구 등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기존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기존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2004년 5월 29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여 2006년 5월 29일까지 현행 법령에 적합한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기존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안전을 확보하여 이들 업소를 이용하는 국민을 화재로부터 보호하는 한편,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정부의 정책임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정부에서 2006년 5월 29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비상구 등 설치기간을 금년 5월 30일까지 1년 연장한 바 있으며,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또 다시 설치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5.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에 관한 질의

질 의

기존다중이용업소에 연결살수설비가 설치된 경우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건의

답 변 (소방방재청 : 2007. 4. 24)

지하층에 위치한 다중이용업소로서 당해 영업장의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경우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한 이유는 화재를 자동으로 진화할 수 있는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하여 이들 업소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따라서, 귀 협회에서 건의한 사항을 수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 발급에 관한 질의

질 의

2004년 5월 29일 이전에 소방시설 등을 설치하고 완비증명을 받지 아니한 경우 현행기준에 적합하게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고 관할 소방서장이 직권으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답 변 (소방방재청 : 2007. 4. 24)

기존다중이용업소의 경우 비상구 등 안전시설을 현행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관할 소방서장이 소방검사 등을 통해 확인 후 직권으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7. 다중이용업소 비상구에 관한 질의

질 의

1. 1개의 층에 중앙복도를 기준으로 동일인 소유의 고시원업 영업장의 경우 2개의 영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02. 4. 13일 사용승인을 받은 고시원업으로서 가로98센티미터×세로69센티미터의 피난구 및 피난기구가 설치되어있는바, 기존의 다중이용업소의 완화지침에 따라 비상구로 같음이 가능한지 여부

답 변 (소방방재청 : 2007. 11. 15)

1. 복도를 기준으로 하여 각각 영업장이 분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동일인 소유의 동일한 업종인 경우 하나의 영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인 경우 피난 시에 유효한 발코니 또는 부속실을 설치하고 그 장소에 유효한 피난기구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비상구 등 안전시설에 대하여는 현장 확인 등이 가능한 관할소방서의 자문을 받아 처리하시는 것이 민원해결에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8. 영업주 변경에 따른 소급법 적용에 관한 질의

질 의

2004년 5월 이전부터 영업을 해오던 단란주점으로서 휴업상태에서 영업주가 변경될 경우 기존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설치 완화지침(바닥면적이 33제곱미터이하인 경우 영업장 내부에 구획된 실이 없는 개방된 영업장일 경우 비상구 설치 같음 처리)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신규영업 대상으로 비상구를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답 변 (소방방재청 : 2008. 1. 22)

기존 다중이용업소로서 구조변경 및 용도변경이 없이 단순히 영업주만 변경되는 경우 기존 다중이용업소의 완화지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9. 완비증명 발급관련 공사업체와 민원발생 관련 질의

질 의

- 민원상황
 - 신규 고시원 공사건으로, 고시원 업주와 인테리어업자와 공사계약 체결
 - 인테리어업자는 소방시설 공사를 위하여 A소방 공사업자와 소방시설 공사계약 체결
 - 공사중도에 고시원 업주와 인테리어업자 간 공사 포기계약에 따라 A 소방 공사업자는 체불금으로 인해 공사 완료 후 완비증명서 발급대행을 중단하였으며 영업주가 직접 완비증명을 소방서에 요청하려고 함
- 영업주가 직접 공사업자를 A업체로 기록 후 소방서에 완공신고서 완비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답 변 (소방방재청 : 2010. 7. 23)

안전시설 등의 설치신고의무는 다중이용업 영업주이므로 인테리어업체 공사 포기 및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업체 완비증명서 업무대행 포기된 경우에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가 안전시설 등 완공신고서에 공사업체 내용을 기재하여 완비증명서 신청하는 경우 안전시설 등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완비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10. 완비증명 재발급에 관한 질의

질 의

1. 3층에 학원 1개소(2007년 완비증명발급), 4층에 학원2개소(각각 2004년, 2005년 별도 완비증명서 발급)가 있습니다.
각각 학원의 명칭과 운영권자(원장)가 다릅니다.
이 학원을 금번에 새로운 사람이 인수하여 3층과 4층 총3개의 학원을 하나의 명칭과 한사람의 운영권자로 소방시설 및 면적을 합산하여 완비증명서를

- 재교부 할 수 있는지 여부. 다만 각각 학원의 내부구조변경이나 소방시설의 변경은 없으며, 관할 서에서 각 부분 부분의 소방시설 평면도만 있습니다.
2. 2007년 3월 24일 이후에 완비증명서를 교부받은 대상은 현행법과 소방시설이 일치합니다. 이 경우 폐업이 있었다 하더라도 면적의 증감, 구조변경등이 없고, 현행법과 소방시설등이 일치하면 폐업과 상관 없이 재교부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답 변 (소방방재청 : 2010. 8. 12)

1. 3층과 4층의 학원 영업주가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3층과 4층의 학원 면적을 모두 포함하여 1건으로 안전시설 완비증명서를 영업주 변경 재발급 방식으로 교부하시면 되며,
2. 기존의 학원 영업주는 학원영업을 하지 않게 되므로 세금 납부의무 면제를 위하여 세무서나 관한 구청에 폐업신고절차를 거치게 되나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은 내부구조나 실내장식물의 변경이 없으면 재교부방식으로 완비증명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11.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소급적용 시점에 관한 질의

질 의

99년에 완비증명을 받은 다중이용업소로서 지하층에 소재한 간이스프링클러 소급대상에 대하여 현시점에서 법적용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답 변 (소방방재청 : 2010. 9. 6)

- 기존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며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2007. 3. 6.시달된 [기존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소급설치의무의 이행에 관한 지침시달]을 참고하여 설치하시면 됩니다.

기존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등 소급설치의무의 이행에 관한 지침 (2007.3.2)

제1조(지침제정 배경 및 목적)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방시설 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기존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 등을 가능한 신속하게 설치하게 함으로써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로 인한 피해발생을 최소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등) 이 지침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 다중이용업소 및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용한다.

제3조(업종별 기존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여야할 소방시설 등의 종류)

① 영업개시 일을 기준으로 기존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여야하는 소방시설 등의 종류·방염처리물품 사용 및 실내장식물 불연화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

영업개시일	설치해야 할 소방시설등의 종류	방염물품 사용	실내장식물 불연화
1995. 12. 13이전	1. 소화설비 : 소화기, 간이스프링클러설비(해당업소에 한함) 2. 영업장안의 임의 구획된 실에 추가해야하는 설비 -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용구 - 유도등·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중 하나 - 휴대용비상조명등 - 비상경보설비·비상방송설비 또는 단독경보형감지기 중 하나 3. 방화시설 : 방화문 및 비상구 4. 그 밖의 시설 : 영상음향차단장치, 누전차단기 및 피난유도선	방염처리대상물품에 대해서는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	해당없음
1995. 12. 13.부터 1997. 3. 7.까지	상 동	상 동	해당없음

예방실무

영업개시일	설치해야 할 소방시설등의 종류	방염물품 사용	실내장식물 불연화
1997. 3. 8.부터 2002. 3. 30까지	상 동	상 동	해당없음
2002. 3. 31.부터 2004. 5. 28까지	상 동	방염물품 사용 면적 제한규정 적용받음 30%이하만 허용	실내장식물 불연화 적용 받음 70% 또는 50%이상 불연화 의무

2. 단란주점 · 유흥주점, 비디오감상실

영업개시일	설치해야 할 소방시설등의 종류	방염물품 사용	실내장식물 불연화
1996. 3. 30이전	1. 소화설비 : 소화기, 간이스프링 클러설비(해당업소에 한함) 2. 영업장안의 임의구획된 실에 추가해야하는 설비 -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용구 - 유도등·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중 하나 - 휴대용비상조명등	방염처리대상물품에 대해서는 방염성능 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	해당없음
1996. 3. 30이전	- 비상경보설비·비상방송설비 또는 단독경보형감지기 중 하나 3. 방화시설 : 방화문 및 비상구 4. 그 밖의 시설 : 영상음향차단장치, 누전차단기 및 피난유도선		해당없음
1996. 3. 31.부터 1997. 3. 7.까지	상 동	상 동	해당없음
1997. 3. 8.부터 2002. 3. 30까지	상 동	상 동	해당없음

영업개시일	설치해야 할 소방시설등의 종류	방염물품 사용	실내장식물 불연화
2002. 3. 31.부터 2004. 5. 28까지	상 동	방염물품 사용 면적 제한 규정 적용받음 30%이하만 허용	실내장식물 불연화 적용 받음 70% 또는 50% 이상 불연화 의무

3. 휴게음식점 · 일반음식점(지하 66㎡이상, 지상 100㎡이상), 게임제공업소

영업개시일	설치해야 할 소방시설등의 종류	방염물품 사용	실내장식물 불연화
2001. 3. 20이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화설비 : 소화기, 간이스프링 클러설비(해당업소 한함) 2. 영업장안의 임의 구획된 실에 추가해야 하는 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용구 - 유도등 · 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중 하나 - 휴대용비상조명등 - 비상경보설비 · 비상 방송설비 또는 단독 경보형감지기 중 하나 3. 방화시설 : 방화문 및 비상구 4. 그 밖의 시설 : 영상음향차단장치, 누전차단기 및 피난유도선 	방염처리대상물품에 대해서는 방염성능 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	해당없음 해당없음
2001. 3. 21.부터 2004. 5. 28까지	상 동	방염물품 사용면적 제한 규정 적용받음 30%이하만 허용	실내장식물 불연화 적용 받음 70% 또는 50%이상 불연화 의무

예방실무

4. 찻집방업, 산후조리원업, 고시원업, 전화방업, 화상대화방업, PC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신종다중이용업소)

영업개시일	설치해야 할 소방시설등의 종류	방염물품 사용	실내장식물 불연화
2003. 1. 17이전	1. 소화설비 : 소화기, 간이스프링클러설비(해당업소에 한함) 2. 영업장안의 임의 구획된 실에 추가해야 하는 설비	방염처리대상물품에 대해서는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	해당없음
2003. 1. 17이전	-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용구 - 유도등·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중 하나 - 휴대용비상조명등 - 비상경보설비·비상방송설비 또는 단독경보형감지기 중 하나 3) 방화시설 : 방화문 및 비상구 4) 그 밖의 시설 : 영상음향차단장치, 누전차단기 및 피난유도선		해당없음
2003. 1. 18.부터 2004. 5. 28까지	상 동	방염물품 사용면적 제한 규정 적용받음 30%이하만 허용	실내장식물 불연화 적용 받음 70% 또는 50%이상 불연화 의무

5. 학원(독서실)·목욕장업·영화상영관(수용인원 100인 이상)

영업개시일	설치해야 할 소방시설등의 종류	방염물품 사용	실내장식물 불연화
2004. 5. 29이전	1. 소화설비 : 소화기, 간이스프링클러설비(해당업소에 한함) 2. 영업장안의 임의 구획된 실에 추가해야 하는 설비 -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용구 - 유도등·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중 하나 - 휴대용비상조명등 - 비상경보설비·비상방송설비 또는 단독 경보형감지기 중 하나 3. 방화시설 : 방화문 및 비상구 4. 그 밖의 시설 : 영상음향차단장치, 누전차단기 및 피난유도선	방염처리대상물품에 대해서는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	해당없음

②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선정기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2006년 12월 7일 이전에 이미 영업 중인 기존다중이용업소의 경우에는 공유면적을 포함하지 아니 하는 당해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내부면적(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의 경우에 영업허가증에 기재된 면적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2006년 12월 7일 이후에 지하층에 새로이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유면적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③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은 공유면적을 제외한 당해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중이용업소의 해당여부를 선정한다.

제4조(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등)

① 소방방재청 고시

2006-8호 「기존다중이용업소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고시」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그 밖에 관할 소방서장이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업장이 지하층에 위치한 경우로서 영업장의 출입구가 설치된 벽면을 제외한 3면이 옹벽 또는 내력벽으로 된 경우
2. 건축물 외벽이 통유리의 구조로 창문을 통한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3.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할 위치 또는 장소에 도시가스배관 주배관이 통과하고 있는 경우
4. 5층 이상에 위치한 다중이용업소로서 비상구에 연결하는 계단을 설치하여도 비상구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인 경우
5. 벽화 등 중요문화재(「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를 말한다)가 설치되어 비상구 설치가 곤란한 경우
6. 한식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경우로서 비상구를 설치할 경우 벽·기둥 등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부분이 훼손되는 경우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으로서 피난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비상구 설치에 갈음할 수 있다.

1. 비상구가 출입구로부터 장변의 1/2이상의 위치에 설치되어 있으나 영업장 내부구조상 불가피하여 화장실 등을 경유 하는 구조이외의 방법으로

는 설치할 수 없는 경우

2. 화재시 다중이용업소의 출입구 반대방향의 창문(피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창을 말한다) 또는 비상구를 통하여 인접 건축물의 옥상 등으로 피난이 가능한 구조인 경우
 3. 영업장 4면이 건축물로 둘러싸여 있는 지하층의 영업장으로서 비상구를 경유하여 영업장 밖으로 피난하여 지상에 이르면 대피공간이 확보된 경우
 4. 건축물 신축당시부터 비상구 계단 통로폭이 75cm 이하로 확장공사가 어려운 구조로서 비상구 폭이 75cm이하인 경우
 5. 건축물 신축당시부터 비상구 계단의 높이가 150cm이하로서 확장공사가 어려운 경우
 6. 이미 설치된 비상구가 1/2 이격거리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7. 영업장의 구조가 H자 형태 등으로 영업장 어느 위치에 비상구를 설치하더라도 장변의 1/2 이격거리에 미달되는 경우
 8. 지하에 2개 이상의 영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영업장과영업장이 벽으로 경계를 이루고 있는 구조로서 주출입구와 비상구 모두 하나의 계단을 통해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
 9.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33㎡이하인 경우로서 영업장 내부에 구획된 실(룸)이 없는 영업장 전체가 개방된 구조의 영업장 또는 영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주출입구(출입문의 중심선)까지의 직선거리가 10m이하인 경우
 10. 건축법령상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5층 이상의 층에 위치한 다중이용업소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상구가 설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가. 비상구에 연결된 계단이 건축물 옥상으로 연결된 경우
 - 나. 비상구에 연결된 계단이 사다리 구조가 아닌 원형구조의 계단인 경우
- ③ 4층 이하에 있는 다중이용업소로서 창문 등을 이용하여 비상구를 설치하는 경우 가로(폭) 75cm의 2/10의 범위 내에서 규격조정이 가능하며, 세로(높이) 150cm에서 2/10의 범위 내에서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방법 등) 기존다중이용업소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설치 할 수 있다.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 급수배관 관경은 25mm의 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결송수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상수도와 직결하거나 옥상수조와 연결하여 헤드 말단에서의 압력이 0.1MPa(1kg/cm²)이상인 경우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수원과 알람밸브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습식 연결살수설비가 설치된 경우로서 헤드 말단 압력이 0.1MPa (1kg/cm²) 이상인 경우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 갈음할 수 있다.
4. 건식 연결살수설비를 습식으로 전환하고 자연낙차가 10m이상인 옥상물탱크에서 연결살수설비의 입상배관까지 급수배관을 연결거나 연결살수설비의 입상배관에 상수도를 직결하여 헤드말단 압력이 0.1MPa(1kg/cm²)이상인 경우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폐쇄형헤드는 스프링클러설비헤드로 설치할 수 있다.

제6조(비상경보설비 설치 방법 등) 기존다중이용업소에 비상경보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1.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내 임의 구획된 실에 추가하여야할 비상경보설비 대신에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연동되는 방식으로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2.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내 구획된 실 마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가 설치되고 감지기와 연동하여 경종(벨)이 작동되는 방식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방화문 설치 방법) 기존다중이용업소에 방화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피난계단 및 방화구획에 해당하지 않는 기존다중이용업소(1998년 5월 12일 이전의 업소를 말한다) 출입문과 비상구의 문은 강화유리의 문으로 설치할 수 있다.
2. 지하1층에 설치된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가 지상 주차장 등 건축물외부의 지면으로 곧바로 나갈 수 있는 계단에 연결된 경우로서 연소 확대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방화문이 아닌 다른 문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8조(현장방염처리물품에 대한 방염처리 방법 등)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

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방염처리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방염처리 할 수 있다.

1. 2002. 3. 30. 이전에 영업을 개시한 다중이용업소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중 방염처리면적에 관한 규정(벽과 천정을 합한 면적의 3/10, 5/10)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2003. 1. 17 이전에 영업을 개시한 찜질방업, 산후조리원업, 고시원업, 전화방업, PC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의 경우에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중 방염처리면적에 관한 규정(벽과 천정을 합한 면적의 3/10, 5/10)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합판·목재에 선처리된 방염필름 또는 벽지로 방염처리하는 경우 가스유해성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2004년 5월 29일 이전에 설치한 방음 또는 흡음재의 경우 현장에서 방염처리 할 수 있다.
5. 2004년 5월 29일 이전에 현장방염처리를 완료한 방염대상은 영업주의 신청 없이 소방관서에서 시료채취 후 방염성능시험 결과 합격한 경우에는 방염성능시험성적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 방염성능시험에 따른 수수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9조(기존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등 설치·완공신고 등) 2004년 5월 29일 이전에 이미 영업허가 등을 받고 영업을 하고 있는 다중이용업소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방시설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등의 설치·완공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재개발·재건축 및 도시계획에 의한 수용지역에 있는 다중이용업에 대한 업무처리) 재개발·재건축 및 도시계획에 의한 수용지역에 있는 다중이용업소가 2007년 12월 31일까지 철거가 확정된 경우로서 구획된 실이 있는 경우 각 실마다 자동확산소화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설비 등의 설치를 철거시까지 유예할 수 있다.

1. 비상구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
3. 방염물품에 대한 방염처리

부 칙

- ① (시행일) 이 지침은 시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 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 제4조제3항, 제5조,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기존지침 및 질의회신 폐지) 이 지침 시행 전에 이 지침내용과 관련된 지침 및 질의회신(인터넷 질의를 포함한다)은 이를 폐지한다.

기존다중이용업소(옥내권총사격장·골프연습장·안마시술소)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기준

기존다중이용업소(옥내권총사격장·골프연습장·안마시술소)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331호)』 부칙 제3조제4항 규정의 기존다중이용업소(2010년 11월 11일 이전에 이미 영업을 하고 있는 다중이용업소)의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비상구 설치를 위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 규정의 주요구조부를 관통하여야 하는 경우
2.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영업장이 인접건축물과의 이격거리(건축물 외벽과 외벽 사이의 거리를 말한다)가 100센티미터 이하인 경우
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비상구 설치를 위하여 당해 영업장 또는 다른 영업장의 공조설비, 냉·난방설비, 수도설비 등 고정설비를 철거 또는 이전하여야 하는 등 그 설비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나. 비상구 설치를 위하여 인접건물 또는 다른 사람 소유의 대지경계선을 침범하는 등 재산권분쟁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영업장이 도시미관지구에 위치하여 비상구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 미관을 훼손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 당해 영업장으로 사용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관할 소방서장이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시행일) 이 기준은 2010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6절 기 타

1. 소방점검 책임소재에 관한 질의

질 의

1. 아파트 준공에 필요한 세대 내 소방시설 점검 여부 및 점검기관은?
2. 아파트 준공시 세대내 소방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이에 따른 책임은?
3. 아파트 입주 당시 스프링클러헤드가 노출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4. 아파트 입주 후 세대내 소방점검 누가실시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5. 입주당시부터 스프링클러헤드 설치에 하자가 있었으나 해당 세대에서 민원 제기를 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해 어떤 행정조치를 하는지.

답 변 (소방방재청 : 2007. 10. 18)

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 감리자가 소방공사감리결과 보고서 제출시 소방시설에 대한 성능시험 조사표를 제출하도록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회신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자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입주 후 아파트 세대내 소방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이 하여야 합니다.
5. 아파트 세대내에 설치된 소방시설이 적법하지 않는 경우 소방관서에서 관계인에게 과태료부과와 함께 시정보완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2. 건축허가 동의에 관한 질의

질 의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이미 건축허가동의를 받았으나 추후 설계도서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건축허가 동의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답 변 (소방방재청 : 2007. 10. 4)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건축허가 등의 동의 제도는 건축물의 신축 등의 건축행위에 대해 설계단계부터 소방안전에 관한 사항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건축허가청이 건축허가 등을 하기 전에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안전전문가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사전에 검토를 받도록 한 행정기관 상호간의 협의제도입니다.

관할 소방서장이 건축허가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미 허가동의를 한 사항에 대해 추후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건축허가 동의 이후 관련법령에 적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소방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불이행에 관한 질의

질 의

- 소방법령 위반자에 대해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호를 적용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 관계자가 시정하지 않아 위반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2차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은 상태임

예방실무

1. 이와 같은 경우 2차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는?
2. 소방법령 위반자가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고도 위반상태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이행확보 수단은?

답 변 (소방방재청 : 2008. 3. 26)

1.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의 다수 의견이며, 또한,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해 2차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형사처벌에 관하여 소방관계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형사처벌을 받고도 위법상태를 치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 2조에 따라 대집행의 수단을 통하여 이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아파트 층수 산정에 관한 질의

질 의

1. 건축물 개요
 - 층 수 : 지하2층 지상 4층 건물
 - 연면적 : 2,493.02 M² , 19세대
 - 용 도 : 지하2층(주차장), 지하1층 ~ 지상 4층(주택)
2. 질의요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별표4 8호 가목의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위에서 지하층의 주택 부분도 층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답 변 (소방방재청 : 2009. 10. 22)

건축법령에서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므로 4층의 공동주택으로 아파트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제2장 국가화재안전기준

제1절 소화설비

1. 공동주택 발코니내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질의

질 의

1. 새시(Sash)를 설치한 아파트 발코니가 건축법령상 바닥면적 및 연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서비스부분일 경우에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2. 아파트 후면 발코니 보일러 설치부분에 자동확산소화용구가 설치된 경우에도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답 변 (소방방재청 : 2007. 8. 8)

1. 아파트 발코니가 건축법령상 바닥면적 및 연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서비스부분일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2. 아파트 후면 발코니의 보일러 설치부분이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5조제1항 제9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2. 스프링클러설비 송수구에 관한 질의

질 의

1.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1개층 바닥면적이 19,000㎡인 지하 2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경우에 송수구에서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의 위치를 반드시 유수검지장치 2차측에 연결하여야 하는지?
2. 질의 1)과 관련하여 송수구를 7개 설치하는 경우에 송수구의 설치위치를 소방차의 진출입이 수월하고 식별이 용이한 단지 출입구 근처에 모아서 설치할 수 있는지?

답 변 (소방방재청 : 2007. 10. 26)

1.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6조제5호에서 규정한 송수구배관의 연결 위치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의미는 반드시 2차측에 연결하라는 의미는 아니며, 유수검지장치 설치수가 작거나 2차측 연결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연결 하도록 하는 의미로 사료되므로 세부사항은 관할 소방서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스프링클러설비 송수구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1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되, 송수구를 모아서 설치할 경우는 송수구역을 표시하여 화재시 해당 방호구역에 직접 송수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3. 스프링클러설비관련 질의

질 의

1. 화재안전기준(NFSC 103)제10조 제7항 제9호의 규정“ 상부에 설치된 헤드의 방출수에 따라 감열부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헤드에는 방출수를 차단할 수 있는 유효한 차폐판을 설치 할 것”과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행자부고시 1999-29, 1999.8.3)제2조제25호에서 랙크형 스프링클러헤드라 함은 “ 랙크식창고에 설치하는 헤드로서 상부에 설치된 헤드의 방출된 물에 의해 작동에 지장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보호판이 부착된 헤드를 말한다”와의 내용이 같은 것을 의미하는지 여부?
2. 질의1 내용에서 서로 다르다면 어떤 것을 말하는지?
3.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0조제7항제9호에서 차폐판이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 이름은 무엇인지?
4. 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B) 제10조제9호의 차폐판을 설치한 경우 스프링클러 헤드의 이름은 ?

답 변 (소방방재청 : 2007. 3. 12)

1. 화재안전기준(NFSC 103)제10조제7항제9호의 의미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헤

드 설치방법 기준을 제시한 내용으로 헤드를 설치함에 있어 상부에 설치된 헤드 방출수로 인하여 감열부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헤드(동 공간내 상·하형이 설치된 경우 등)에는 방출수를 차단할 수 있는 유효한 차폐판을 설치하여 감열체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 헤드설비 방법 기준에 대한 내용이며,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제2조제25호의 “랙크형스프링클러헤드”는 상부 헤드방출수의 증발감열이 그 하부에 설치된 감열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차폐판을 일체화시킨 헤드제품에 대한 용어를 정의한 사항입니다.

2. 회신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동 설비의 기준에서 차폐판의 의미는 상부 헤드의 방출수로 인한 하부 헤드의 감열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항으로 특정헤드를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4. 동설비의 기준 제10조제9호는 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의 헤드설치 방법등에 대한 기준으로서 상부 헤드 방출수에 의해 하부에 설치된 헤드 감열체에 영향을 줄 우려(일명 Skipping 현상)가 있는 경우 차폐판을 설치하도록 한 것인바, 스프링클러 헤드이름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4. 별도 건축물 소방펌프 겸용에 대한 질의

질 의

A동, B동 대지 및 건축물 관리운영은 동일 소유자이나 도로가 건축물 사이에 있어 건축물 관리대상상 분리될 경우에 A동 건축물에 설치된 소화용수 및 펌프를 B동 건축물과 겸용(B동 건축물에 요구된 소화용수 및 소방펌프 용량은 충족)할 수 있는지?

답 변 (소방방재청 : 2007. 5. 29)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어 건축법령에 의한 건축물관리대상상 분리된 경우에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볼 수 없으므로 소화용수 및 소방펌프를 겸용할 수 없습니다.

5.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 압력스위치 관련

질 의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의 프리액션밸브 압력스위치에 전압이 체크가 되지 않는데 프리액션 밸브 압력 스위치는 수신반에서 직접 프리액션밸브로 연결되는지 아니면 슈퍼비조리판넬을 거친 후 연결되는지 여부

답 변 (소방안전협회 : 2010. 10. 28)

프리액션밸브의 압력스위치 전원은 수신반에서 전원이 공급되어 슈퍼비조리 판넬을 거친 후 압력스위치로 연결됩니다.

6. 옥내소화전의 수동과 자동방식 겸용에 관한 질의

질 의

공장에 설치되는 옥내소화전을 자동기동 방식과 수동기동방식(ON/OFF방식) 두 가지를 겸용하여 설치할 경우 수동기동방식으로 사용시 배관내 압력저하로 인한 펌프의 동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압력챔버에 연결되어 있는 간선을 분리 하거나 배관에 게이트 밸브 등을 연결하여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와 좀더 효율적인 설치 방법이 있는가의 여부

답 변 (소방안전협회 : 2010. 10. 20)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5조 관련 겸용으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한 조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전 관할소방서 및 감리업체와 협의하여 겸용설비의 설치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시고 자동기동방식의 경우에는 옥상수조,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펌프 자동기동 등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성능을 유지하여야 하며, 동절기에는 배관등 물을 빼고 자동기동과 관련된 배선을 차단하는 방법 등은 유지관리 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은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7. 옥내소화전 배관에 개폐밸브 설치가능 여부 질의

질 의

지하3층/지상9층 건물에 지상 3층이 주차장이며 옥내소화전이 겨울만 되면 동파로 파손되고 있어 배관에 전동밸브(솔레노이드)를 설치 하고자 하는데 법적으로는 개폐밸브 설치가 금지되어 있기에 수신반에서 화재발생시 전동 밸브가 자동으로 열려 방수가 되는 구조로 설치 가능한지 여부

답 변 (소방안전협회 : 2010. 9. 15)

옥내소화전 습식의 경우 동파문제는

1. 부동액주입
2. 히팅코일(열선)의 설치
3. 보온재
4. 배관 내 물의 순환방식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며,

문의하신 대로 이런 방법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동파가 계속된다면 관할 소방서와 협의하여 건식방법 등으로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관서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8. 스프링클러 배관 시공방법에 관한 질의

질 의

20층 이상인 아파트의 최상층과 다락층(옥탑층)의 스프링클러배관 시공시 최상층의 가지배관에서 티분기하여 다락층으로 연장하여 다락층에 측벽형헤드를 설치한 상태임.

다락 층에 헤드 4개, 최상층에 헤드 6개로 합이 10개가 되며, 스프링클러 설비 가지배관의 헤드 기준개수 8개를 초과하여 시공되어져 있음.

(당초 설계당시 헤드개수는 8개였는데 다락층의 평면(칸막이)이 변경이 되어 헤드개수가 10개로 되어 2개가 추가됨으로써 이런 상황이 발생하였음)
소방법 관련기준에 예외조항 또는 해결방법이 있는지 여부

답 변 (소방안전협회 : 2010. 7. 23)

“스프링클러 화재안전기준 8조 9항”

⑨ 가지배관의 배열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1. 토너먼트(tournament)방식이 아닐 것
2. 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반자 아래와 반자속의 헤드를 하나의 가지배관 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반자 아래에 설치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기존의 방호구역안에서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여 1개의 헤드를 증설하는 경우

나. 습식스프링클러에 격자형 배관방식(2 이상의 교차배관 사이를 가지배관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말한다)을 채택하는 때에는 펌프의 용량, 배관의 구경 등을 수리학적으로 계산한 결과 헤드의 방수압 및 방수량이 소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항으로 설치할 경우 추가설치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1. 루프형 배관(Looped system)

- 교차배관이(Cross main)서로 연결되어 스프링클러 작동시 두 방향이상으로 급수가 공급되나 가지관은 연결되지 않는다.

2. 격자형 배관(Gridded system)

- 가. 평행 교차배관이 다중 가지관에 연결되며, 가지관이 연결되어 스프링클러 작동시 가지관의 양 끝으로 물이 공급되며 다른 가지관은 물 이송을 보조한다.
- 나. 유수의 흐름이 분산되어 압력손실이 적고 공급압력차이를 줄일 수 있으며 고른 압력분포가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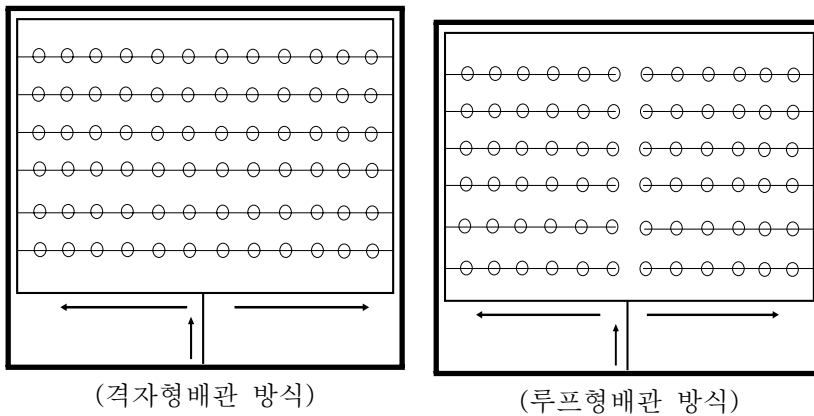
다. 국내에서는 발화위험이 높은 반도체 공장 등의 공정지역 스프링클러설비에 많이 적용하고 있다.

라. 공기압축으로 유수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어 NFC에서 준비작동식 및 건식배관에서의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3. 트리형 배관

- 주배관→교차배관→가지관→헤드의 단일방향으로 유수되며, 소방시설기준에 따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스프링클러 배관방식

(그림2)



(격자형배관 방식)

(루프형배관 방식)

9. 스프링클러 설비의 음향장치에 관한 사항

질 의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9조“

『음향장치는 경종 또는 사이렌(전자식 사이렌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주위의 소음 및 다른 용도의 경보와 구별이 가능한 음색으로 할 것. 이 경우 경종 또는 사이렌은 자동화재탐지설비·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의 음향장치와 겸용할 수 있다.』

위 내용에서 스프링클러 지역에 발신기 경종음향이 미달되지 않으면 사이렌이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 변 (소방안전협회 : 2010. 7. 14)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종을 음향장치로 겸용가능하게 2006년 12월 30일 개정되었습니다. 사이렌은 설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0. 설계도면과 다른 헤드의 설치에 관한 질의

질 의

지하1층/지상1층의 건물에 폐쇄형 간이스프링클러 설비의 헤드가 간이스프링클러 헤드(50LPM 이상) 혹은 표준형헤드(80LPM 이상)로 설계되어 있는 것을 플러쉬 헤드(주거형, 간이형, 파라다이스 제품)-50LPM의 제품으로 시공했는데 무방한지 여부.

답 변 (소방안전협회 : 2010. 3. 3)

간이형과 표준형은 그 목적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였습니다.

우리 기준에서는 두 가지 모두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 사용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설계도서상에 간이형으로 설계가 되어있다면 간이형 헤드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플러쉬 타입의 표준형 헤드를 설치시에는 화재안전기준에 의거 설계부터 변경이 된 후에 시공되어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스프링클러 헤드 종류 변경에 관한 질의

질 의

공사중인 아파트의 실외기실에 도면상에는 조기반응형 (폐쇄형), 측벽형 79도 미만, 드라이펜던트 typ이 설계되어 있는데 시공상 어려움이 있어서 메탈피스형 72도 일반형 헤드를 사용하였고 세대에는 조기반응형 후래쉬헤드를 사용하였습니다.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와 수정을 해야 한다면 드라이펜던트형으로 바꾸어야 하는지 아니면 조기반응형 유리벌브헤드로 바꾸어야 하는지 여부

답 변 (소방안전협회 : 2010. 2. 1)

내용으로만 보자면 실외기실은 난방이 되지 않으므로 설계자가 드라이 펜던트 타입으로 설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메탈피스든 유리벌브든 간에 종류는 무관하리라 생각됩니다. 문제는 드라이 펜던트의 사용여부가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이는 일차적으로 감리자와 상의하여 가부여부를 판단하시면 감리자가 해당 관서와 협의하는 수순으로 일처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2. 자동식소화기 제외에 관한 질의

질 의

아파트 주방에 내부인테리어를 하면서 가스렌지를 사용하지 않고 전기렌지로 설치하여 사용할 경우 기 설치되어 있는 자동식소화기(소화기, 가스감지기, 가스차단밸브, 수신부)의 설치 제외가 가능한지 여부

답 변 (소방안전협회 : 2010. 1. 25)

귀하께서 말씀하신 자동식소화기는 아파트에 주방에 설치하셔야 합니다.

가스렌지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동식소화기를 면제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단지 가스누설탐지부 및 차단밸브의 의미는 없어집니다.

약간은 애매한 부분은 있으나 면제조항은 없는 관계로 설치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제2절 경보설비

1. 연기감지기 및 바닥통로유도등 설치에 대한 질의

질 의

1. 연기감지기를 보로부터 0.6m이상 떨어지도록 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

안전기준 제7조제3항제10호마목의 규정에 따라 설치할 수 없는 장소의 경우 어떻게 설치하여야 하는지?

2. 바닥통로유도등 설치장소가 지게차의 이동통로에 있어 하중에 의해 파손될 수 있으므로 통로 양측기둥에 유도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답 변 (소방방재청 : 2007. 8. 22)

1. 상기 도면과 같이 연기감지기를 설치할 수 없는 장소의 경우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7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별표 1(설치장소별 감지기적응성:연기감지기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을 적용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2. 바닥통로유도등 설치하는 지게차 하중에 의해 파괴되지 않도록 설계 및 유지관리하시기 바랍니다.

2.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에 대한 질의

질 의

인접한 두개의 공장에 별도로 설치된 화재속보설비 속보기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비실로 이설이 가능한지 여부

답 변 (소방방재청 : 2007. 3. 14)

관리권한이 동일한 공장 2개동(예: 가동, 나동)이 같은 부지내에 있는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비실에 자동화재속보설비 속보기를 이설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3. 감지기의 설치 제외에 대한 질의

질 의

축사를 운영하던중, 축사안에 필요에 의해 발효기(기계)를 설치하게 되었는데

데..... 기계로부터 나오는 열이 너무 강하여, 설치되어 있는 감지기(자동화재 탐지설비)가 다 녹아 없어집니다. 임의로 설치를 제거 하여도 되는건지, 아니면 제외를 시키기 위한 또 다른 절차가 필요한지 여부

답 변 (소방방재청 : 2010. 6. 8)

온도가 높아 감지기의 기능이 정지되기 쉽거나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에 해당되어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4. 감지기의 적응성에 관한 질의

질 의

콘도의 객실에서 음식을 조리 하게 되면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 차동식 감지기가 오작동하여 관리가 어려운데 정온식 감지기로 교체하여도 상관없는지 여부

답 변 (소방안전협회 : 2010. 7. 8)

감지기는 설치장소별 적응성에 따라 부착하기 때문에 다른 감지기로 교체하시는 것보다는 오동작의 우려가 있는 행동을 자제하게 하시고 감지기를 다른 부분으로 이설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온식감지기는 동작온도가 높아 실내에 설치할 경우 실제 화재시에는 동작이 다소 지연될 우려가 있어 조기경보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5. 이온화식 감지기의 폐기처분에 관한 질의

질 의

방사능물질이 들어있는 2001년도에 구입한 이온화식 감지기 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

답 변 (소방안전협회 : 2010. 6. 17)

이온화식 연기감지기 속에는 아메리슘 241이 들어 있으며, 감지기를 쓰는 동안 피폭되는 방사선 양은 자연상태 바다에서 받는 방사선 양의 1/1,000정도 밖에는 안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감지기에 사용되는 방사선 원 소량이 매우 극소량이며 또한 반감기³⁾가 433년으로 매우 길기 때문입니다. 다만 폐기되었을 때 쓰레기에서 나온 아메리슘이나 방사성 물질이 자연에 퍼질 위험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도 생물에 흡수되지 않는 중금속인지라 체내에 잔류할 가능성은 매우 적고 또 일부러 농축하지 않는 한 자연 상태에서 나오는 방사선 양도 매우 적을 것이기에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6. 수신기의 연동에 관한 질의

질 의

한 부지안의 공장에 5동의 건물이 있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가 A,B동은 A동에 C,D,E동은 C동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 경우 A동과 C동에 설치되어 있는 수신기는 서로 연동이 되어야 하는지 여부
(과거에 A,B동이 한 공장이고 C,D,E는 다른 업체가 사용하던 공장이었으나 A,B동을 사용하던 공장이 C,D,E 까지 인수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음)

답 변 (소방안전협회 : 2010. 6. 9)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5조제3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수신기를 상호간 연동하여 화재발생 상황을 각 수신기 마다 확인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어떤 특정 방사성 핵종(核種)의 원자수가 방사성 붕괴에 의해서, 원래의 수의 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

제3절 피난설비

1. 아파트 완강기 설치에 관한 사항

질 의

아파트는 2002. 2. 28 사용 사용검사 승인을 받았고 7층~15층사이의 세대에 완강기 설치가 되어있지 않은데 관계 법령에 의해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답 변 (소방안전협회 : 2010. 7. 28)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를 참조하시면...

- 제5조(설치제외) 영 별표 5 제7호 피난설비의 설치면제 요건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는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편복도형 아파트 또는 발코니 등을 통하여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계단실형 아파트
위 내용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완강기 설치에 관한 질의

질 의

1. 타인 지상권에 대한 사용, 점용 동의나 승낙없이 완강기 발판을 부착할 수 있는지(임차한 건물 2층 벽면에 1.5m×0.75m의 발판을 설치하고 철거에 불응하고 있음)?
2. 완강기는 건축물 외부 또는 내부 어디에 설치하여야 하는지?
3. 완강기 사용이 1회에 1명씩 제한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긴급상황 발생시 실효성이 의문시되는데도 설치를 하여야 하는지?
4. 완강기 설치를 폐지하고 옥외계단(비상구)을 설치하는 것이 어떤지?
5. 완강기를 설치하는 법적 근거는?

6. 상기 질의 1)에 대하여 민원인이 취할 법정 대응책은?

답 변 (소방방재청 : 2007. 12. 7)

1. 소방관계법령에서 타인 지상권 사용, 점용사용에 관한 동의나 승낙 등 사인간에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답변이 곤란합니다.
2. 완강기는 화재시 원활하게 피난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장소는 건축물의 구조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설계자 등이 결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3. 완강기 설치는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별표 1(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에 따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완강기의 경우에도 건축물에 따라 실효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구조 등에 따라 완강기가 적응성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고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4. 화재시 다수인이 원활하게 피난하기 위해서는 옥외계단을 설치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 될 수 있으나 건축물의 구조에 따라 완강기가 적응성이 있는 경우에는 완강기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완강기 설치기준을 폐지하는 문제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명확한 답변이 곤란합니다.
5. 상기 답변 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상기 회신 1)과 같이 사인간의 관계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므로 답변이 곤란합니다.

3. 공기안전매트 설치에 관한 질의

질 의

1. 아파트 단지(1단지 : 지하 1층, 지상 15층 3개동 180세대, 2단지 : 지하 1층, 지상 13층 1개동 지상 15층 4개동 377세대)에 4.5m×7.5m×3m 규격의 에어매트를 설치하면 적법한지?
2. 1개의 관리주체가 2개 단지를 통합 관리하는 경우 공기안전매트는 1개만 있어도 가능한지?

답 변 (소방방재청 : 2007. 4. 25)

1. 공기안전매트의 성능시험기술기준 제4조의 규정에서 사용 높이 15m이하인 경우 3.5m×3.5m×1.7m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국소방검정공사의 성능시험에 합격한 제품의 경우는 적법합니다.
2.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공기안전매트는 하나의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아파트 구역마다 1개 이상을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 아파트의 경우 각 단지별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4. 피난구유도등 설치기준 질의

질 의

구로승무원사업소 복지관 건축물의 숙소에 설치된 피난구유도등이 기관사의 숙면에 지장이 되고 있어 철거하여도 가능한지 여부

- 건축물 크기 : 7.5m × 20.6m, 지하1층 지상4층 건물
- 용도 : 기관사의 취침을 위한 장소
- ☞ 숙소규모 : 6m × 3.3m(내부화장실 포함)

답 변 (소방방재청 : 2008. 2. 12)

피난구유도등은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합니다.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쉽게 도달 할 수 있는 출입구”는 제10조제1항제2호에 의거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관계인 및 종사원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는 제9조제3항제2호다목에 의거 배선을 3선식으로서 상시 충전되는 구조로 하는 경우 항상 점등상태를 유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난구유도등의 제외 또는 설치방법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구조, 설비 등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관할소방서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제4절 소화활동설비

1. 연결살수설비 헤드의 개방형과 폐쇄형의 차이 질의

질 의

1. 연결살수설비의 헤드를 폐쇄형을 사용하는 경우 옥내소화전 설비의 주배관도 같이 연결되어 있는지 여부?
2. 폐쇄형 헤드를 교체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부?
3. 만약 옥내소화전설비 배관과 같이 묶여있다면, 헤드를 교체할 때 경보가 울리는지 여부?

답 변 (소방안전협회 : 2010. 1. 7)

1. 연결살수설비의 폐쇄형 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옥내소화전 주배관 및 수도배관 또는 옥상에 설치된 수조에 접속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폐쇄형 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자동식 소화설비로 인정되며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연기가 체류하여 소방대의 활동이 곤란하므로 소방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소화 활동설비입니다.
2. 습식 설비인 경우는 헤드를 교체하실 때 밸브 폐쇄 등 충분한 사전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3. 옥내소화전설비 주배관 연결살수설비의 주배관이 설치되어있고 유수검지장치가 설치되어 있다면 유수검지장치의 유수검지(물의흐름)에 의해 경보가 울립니다. 현장 여건에 따라 설비가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2. 건축물 연결살수설비 설치에 관한 질의

질 의

건축물 준공('87.12.29)시 지하층(면적 : 1,216㎡, 용도 : 통제소) 연결살수설

비 대신 하론소화설비를 설치하였으나 통제소 이전에 따른 사무실 구조변경이 있어 하론소화설비의 일부 배관을 철거하고, 철거한 부분에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답 변 (소방방재청 : 2007. 11. 5)

통제소 이전에 따른 사무실 구조변경이 있어 하론소화설비의 일부 배관을 철거하고, 철거한 부분에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제연설비의 외기취입구 설치 질의

질 의

특별피난계단부속실 제연설비의 외기취입구를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 배기구 등으로부터 수평거리 5m 이상, 수직거리 1m 이상 떨어져야 하는데, 이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배기구에 전동댐퍼를 설치하거나 또는 외기취입구 앞에 역류방지 경계벽을 설치하여 유해가스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설치하여도 가능한지 여부?

답 변 (소방방재청 : 2008. 3. 24)

제연설비의 외기취입구는 건물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제연구역으로 공급해야 하므로 화재의 위험성 등이 없는 장소로서 지하층 또는 지상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외기취입구를 옥상에 설치할 경우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취입구는 배기구 등으로부터 수평거리 5m 이상, 수직거리 1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사가 제시한 배기구에 전동댐퍼를 설치하거나 또는 외기취입구 앞에 역류방지 경계벽을 설치하여 유해가스를 차단하는 방안은 충분한 법적, 기술적 검토를 거쳐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4. 갓복도식 공동주택의 복도에 미단이창 설치 시 제연설비 설치에 관한 질의

질 의

갓복도식 아파트의 갓복도에 미단이창을 설치할 경우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답 변 (소방방재청 : 2007. 7. 24)

소방관계법령에서 갓복도식 아파트는 제연설비 설치제외대상에 해당하므로, 아파트 갓복도에 미단이 창을 설치한 경우에도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에 관한 규칙 제9조제4항에서 규정한 갓복도식 아파트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의 자문을 받은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청에서는 아파트 갓복도에 새시 등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건설교통부에 요구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아파트 특별피난계단 부속실 제연설비 관련 질의

질 의

1. 현 특별피난계단의 화재안전기준 제21조에서 말하는 자동 폐쇄장치와 소방제도팀 특별피난계단 부속실 제연설비관련 문제점개선사항 추가통보 사항에서의 자동폐쇄장치에 대한 차이점이 무엇이며, 정확한 용어의 정의는?

답 변 (소방방재청 : 2007. 7. 3)

1. 동 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21조에서 말하는 자동폐쇄장치는 정상적인 닫힘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 것으로 출입문 개방시 스스로 닫힘 상태를 유지시켜 주는 도어클로저도 자동폐쇄장치에 포함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국정 감사시 및 일부언론과 전문가 등이 도어클로저가 제연설비 성능확보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제기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일선소방관서에 관할소방서

장이 건축물의 시공정도 등을 고려 행정지도를 통하여 문제점을 개선토록 한바있으며, 자동폐쇄장치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현 국가화재 안전기준 (NFSC501A)상에 없어 향후 동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개정 등을 통하여 자동폐쇄장치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기준을 범제화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질 의

2. 일반적으로 말하는 도어클로저도 자동폐쇄장치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 변 (소방방재청 : 2007. 7. 3)

2. “회신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 의

3. KFI인정 자동폐쇄장치만 해당하는지 여부?

답 변 (소방방재청 : 2007. 7. 3)

3. 자동폐쇄장치인 경우 아파트 각 세대 출입문 및 계단실 출입문에 있어 제연성능 확보에 필요한 시설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제연성능을 확보함에 있어 자동폐쇄장치가 차압등에 불구하고 폐쇄력 등이 있는 것이 검증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는 한국소방검정공사 또는 소방시설설치유지법 제42조제1항에 의거 성능시험기관으로부터 검증받은 제품을 자동폐쇄장치로 볼 수 있다고 시도 소방본부에 통보(소방제도팀-2842, 2007.6.8)한바 있습니다.

질 의

4. 자동폐쇄장치 KFI 인정기준이 2005.10.20일 제정되었는데 이전에 설치된 대상물의 경우 일반 도어클로저도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답 변 (소방방재청 : 2007. 7. 3)

4. 그동안 동 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자동폐쇄장치에 대한 시설 기준이 없었던 관계로 자동폐쇄장치에 도어클로저도 포함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추후 시·도 및 전문가등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개선할 계획임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질 의

5. 준공이 임박한 당해 아파트의 경우에도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 변 (소방방재청 : 2007. 7. 3)

5. 이와 관련 아파트 특별피난계단 부속실 제연설비 관련 문제점 개선사항을 일선 소방관서에 기 통보(소방제도팀-2842, 2007.6.8)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공중이거나 건축허가 신청 사항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관할 소방서장이 행정지도 하도록 하였음 으로 관할 소방서와 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6. 연결송수관설비의 가압송수장치 질의

질 의

1. 연결송수관설비의 가압송수장치를 종전 기준인 “건축물의 높이 70m이상”에 해당되어 설치토록 설계되어 있었으나, 화재안전기준 제정으로 “지표면에서 최상층 방수구의 높이가 70m 이상인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68.5m 일 경우 가압송수장치 설치를 제외하여도 가능하지 여부?
2. 연결송수관설비의 가압송수장치를 소화설비(옥내소화전 및 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와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연결송수관설비에 가압송수장치를 설치시 수원을 확보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 변 (소방방재청 : 2008. 3. 18)

1. 화재안전기준 제정으로 설치기준이 완화된 경우 현행기준에 따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동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8조제3호에 따라 연결송수관 설비의 가압송수장치는 전용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어 겸용이 가능합니다.
3. 연결송수관설비에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펌프의 성능시험 등을 위한 수원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7. 비상콘센트설비의 배선에 대한 질의

질 의

비상콘센트설비 내화배선의 사용전선(200V 2중 비닐절연전선, FR-8 케이블)을 금속관, 금속제 가요전선관에 수납하여 노출로 공사할 수 있는지

답 변 (소방방재청 : 2007. 4. 20)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200V 2중 비닐절연전선, FR-8 케이블을 금속관, 2중 금속제 가요전선관에 수납할 경우는 노출로 공사할 수 없으며, 내화구조로 된 벽 또는 바닥 등에 벽 또는 바닥의 표면으로부터 25mm이상의 깊이로 매설하여야 합니다.

제3장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절 위험물 허가

1. 관세법상 보세구역에서의 위험물 취급 질의

질 의

1. 관세법상 보세구역에서 통관절차중인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저장소 설치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에 보관하는 것이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적법한지 여부
2.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설치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보관한 경우에 적용되는 처벌조항
3. 지속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고자 하는 경우 임시저장취급의 절차에 의하여 가능한지 여부

답 변 (소방방재청 : 2007. 1. 11)

1.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은 허가를 받은 저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관세법상 보세구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제1호 및 제2호입니다.
3.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취급할 수 있는 기한은 90일 이내이며,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조소등 설치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하여야 합니다. 끝.

2. 위험물 규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질의

질 의

자동차 충돌시 안전벨트의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한 용도의 가스발생기(Gas

Generator, 추진제로 니트로셀룰로스 등 1,250mg을 사용하며 전기충격에 의하여 가스를 발생함)가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로 규제되는지 여부

답 변 (소방방재청 : 2007. 3. 20)

설문과 같이 소량의 위험물을 기기속에 기밀·차폐상태로 내장하여 만든 제품은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로 규제하지 않습니다.

3. 농협 유류취급소의 위험물 취급종류 질의

질 의

농협에서 운영하는 유류취급소에서 휘발유를 판매하는 것이 위험물안전관리법상 금지되는지 여부

답 변 (소방방재청 : 2007. 3. 20)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의 판매행위에 관한 제한은 없습니다. 휘발유를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충전하는 일반취급소 및 탱크 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아 관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4. 설치허가전 공사의 관련법 위반여부 질의

질 의

1. 경질유 판매업을 영위하고자 지하유류탱크 전용실의 바닥터고르기 작업과 전용실 벽체를 시공한 행위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전공사인지 여부
2. 통상 어떠한 내용의 공사를 사전시공으로 보는지

답 변 (소방방재청 : 2007. 3. 30)

1. 설문의 지하유류탱크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정하는 위험물의 품명별 지정수량(휘발유의 경우 200리터, 경유·등유의 경우 1,000리터) 이상의 용량이고, 소방서장으로부터 위험물제조소등 설치허가를 받지 않고 설문과 같이 시공하였다면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위반됩니다.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의 규정은 위험물안전을 위하여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시설의 설치행위를 금지하고 소방서장으로부터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금지를 해제함으로써 무분별한 위험물시설의 설치를 통제하고자 하는 취지임에 비추어, 행위자가 위험물시설의 설치를 인식하고 객관적으로 위험물시설로 볼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시공하면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를 위반한 사전시공으로 볼 수 있습니다.

5. 용도폐지전 타 용도시설 허가 가능여부 질의

질 의

주유취급소가 설치되어 운영중인 부지에 주후 주유취급소를 용도폐지 하는 것을 조건으로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 사업을 허가하는 것이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답 변 (소방방재청 : 2007. 9. 11)

본 사안은 주유취급소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소를 설치하는 것과 관련한 물리적 가능성, 안전거리 저축 문제 및 기존 주유취급소 철거조건이 이행된 상태를 토대로 허가심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해석문제인 것으로 사료되며, 설문과 같은 상태에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를 하여도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저촉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기존의 주유취급소가 용도폐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을 위한 시설을 시공하는 행위는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주유취급소의 기술기준에 저촉될 수는 있습니다. 끝.

6. 위험물 지정수량에 관하여 질의

질 의

1.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의 위험물안전관리법상 품명 및 지정수량
2. 위험물시설의 허가는 대물허가이므로 행정청에 대한 별도의 허가신청 없이 양수인이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지 여부

답 변 (소방방재청 : 2007. 10. 12)

1.

명 칭	품 명	지정수량
톨루엔	제4류 제1석유류 (비수용성)	200리터
메탄올	제4류 알코올류	400리터
솔벤트	솔벤트(Solvent)는 용제(溶劑)라는 의미로서 물질 명칭이 아니며, 용제를 구성하는 물질의 인화점에 따라 품명과 지정수량이 구분됨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위험물시설을 양수한 자는 당연히 종전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하며,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실을 관할소방서장에게 신고(보고적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즉, 허가받은 위험물시설을 양수한 자는 별도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이 허가받은 자의 지위를 취득합니다.

7. 위험물 지정수량에 관하여 질의

질 의

1.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적합한 포소화설비를 설치한 부상지붕식 옥외저장탱크의 소화 보조설비로 다음의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약 제 : CFI(트리플루오로이오다이드)
 - 제조사 : Saval BV

예방실무

- 구조 : 탱크상부의 Rim Seal Area에 원형 스테인레스 파이프를 설치하고 파이프에 2m 간격으로 온도감지기와 스프링클러 형태의 스프레이를 장착하여 폰툰에 설치된 CFI용기(20kg)로부터 약제를 공급받는 구조
 - 작동원리 : 화재발생시 온도감지에 의하여 CFI가스가 분사됨
2. 상기의 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한국소방검정공사로부터 소화설비 형식승인을 득하여야 하는지 여부
 3. 상기의 설비를 기존 옥외탱크저장소에 설치하기 위하여 소방서장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득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 변 (소방방재청 : 2007. 11. 29)

1. 설문의 설비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적합한 옥외탱크저장소의 소화설비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적법한 포소화설비가 설치된 옥외저장탱크에 소화기능을 보조하기 위한 설비로 추가 설치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2. 설문의 설비는 소화설비가 아니므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소화설비 형식승인 대상은 아닙니다.
3. 변경허가를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8. 설치허가 대상이 되는지 여부

질 의

발전소의 터빈설비의 유회작용을 위한 설비(펌프, 유회유탱크)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I 제5호의 규정(발전소등의 특례적용)에 의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답 변 (소방방재청 : 2008. 8. 27)

상기의 설비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I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례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발전소의 터빈설비, 유회장치 및 유회유탱크는 위험물 취급량이 지정수량 이상인 경우 위험물 일반취급소에 해당하며, 유회유탱크는 취급탱크에 해당합니다. 끝.

9. 법령 위반행위의 형태, 회수 등에 따른 기준 질의

질 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자에게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벌금형을 부과하는 경우에 위법행위의 형태와 회수 등에 따른 벌금부과 기준 및 구체적인 벌금액수

답 변 (소방방재청 : 2008. 10. 14)

동일한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반복적으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행위는 계속범 · 연속범으로서 전체 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범죄행위로 봅니다. 다만, 위법행위의 형태와 회수 등은 구체적인 벌금액수를 정하는데 판단근거가 될 수는 있으며, 개별적 사안에 있어서 구체적인 벌금액수는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판단합니다. 끝.

10. 안전거리 기준 적용대상에 관한 질의

질 의

기존의 위험물 일반취급소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위치에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안에 관한 건축허가 심사를 함에 있어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I.1.나.4)의 규정에 의한 안전거리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 변 (소방방재청 : 2009. 9. 28)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정한 위험물시설과 보호대상이 되는 시설 간의 안전거리 규제는 위험물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큰 대상의 위치를 위험물시설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는 취지이므로 위험물시설의 설치자 뿐 아니라 보호대상이 되는 시설의 설치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안전거리 기준은 위치에 관한 규제로서 상대방의 존재를 바탕으로 하는 .

개념이며 상호간 적용하지 않고 위험물시설의 설치의 경우에만 적용하면 규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참조 판례 >

대법원 1995.1.12. 선고 94누3216 판결 【석유판매업허가반려처분취소】

[공1995.2.15.(986),914]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제1항에 근거한 구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1993.9.27. 대통령령 제139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은 공동주택 등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이를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공동주택 등을 건설할 때 기존 위험물저장시설 등으로부터 50m 이상을 유지하여야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이미 건설된 공동주택 등이 있다면 위험물저장 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도 그 공동주택 등으로부터 50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1. 이동탱크저장소의 매매에 관한 질의

질 의

이동탱크저장소를 자동차매매상이 상품용으로 매입한 경우에 당해 이동탱크저장소가 위험물제조소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 변 (소방방재청 : 2009. 9. 13)

위험물제조소등이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시설로서 소방서장의 설치허가를 득하여 설치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용도폐지 되기 전까지는 위험물제조소등으로 규제대상이 되며 소유자가 바뀌거나 일시 사용을 중지하는 경우에도 위험물제조소등 임은 변함없습니다.

질 의

이동탱크저장소를 자동차매매상이 상품용으로 매입한 경우에 위험물제조소등 지위승계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

답 변 (소방방재청 : 2009. 9. 13)

지위승계란 위험물제조소등이 매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에 종전의 소유자가 가지고 있던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제조소등의 설치자의 지위가 새로운 소유자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0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효과이며 지위승계의 성립을 위하여 승계인이 별도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승계인에게 부과된 의무는 지위승계가 성립한 후 일정기한 내에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는 지위승계 신고의무입니다.

질 의

이동탱크저장소를 최초로 제작한 자동차제조사도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제조소등과 관련된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답 변 (소방방재청 : 2009. 9. 13)

이동탱크저장소는 설치허가를 받고 완공검사필증을 교부 받은 때부터 성립되는 개념이며 자동차제조사가 탱크로리를 제작한 상태에서는 아직 이동탱크저장소가 아니므로 이동탱크저장소와 관련된 의무가 없습니다.

질 의

위험물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위험물 운송의 목적으로 이동탱크저장소를 매입한 경우에 위험물제조소등의 지위승계에 해당하고 지위승계신고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

답 변 (소방방재청 : 2009. 9. 13)

이동탱크저장소를 매입하거나 지위승계 할 수 있는 조건으로 다른 위험물제조소등을 이미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지위승계의 요건으로 위험물을 수송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질 의

위험물제조소등의 지위승계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신고의무의 기산일은 승계인이 결정한 날에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

답 변 (소방방재청 : 2009. 9. 13)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지위승계의 성립요건이 규정되어 있고 동조제3항에 지위승계신고의무의 기산일은 지위승계한 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지위승계의 성립요건과 신고의무 및 그 기산일은 법률에 의하여 규정된 것이며 관계인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12. 위험물의 해당 여부에 관한 질의

질 의

다음의 제품이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동법상 허가대상인지 여부

- 제품명 : 낙하산신호, 신호홍염, 발연부신호, 조연식신호, 자기발연부신호
- 용 도 : 조난 선박 신호탄
- 구 성 : 점화제(Gunpowder), 추진제(니트로셀룰로오스, 금속분, 질산염 등), 발색제(금속분, 질산염 등) 및 외장기기

답 변 (소방방재청 : 2009. 12. 10)

설문과 같이 두 종류 이상의 화약이 혼합되어 기기 속에 기밀·차폐상태로 내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로 규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험물안전관리법상 허가대상이 아닙니다. 끝.

13. 원자력발전소의 특례적용에 관한 질의

질 의

원자력발전소의 원자로 안전정지를 위한 비상발전기에 공급하는 연료 저장

탱크(경유 28만 ℓ)를 지반면 아래의 탱크전용실(다른 용도 부분이 없는 독립된 지하구조물) 내에 옥내탱크저장소 형태로 설치하는 경우에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I 제1호라목에 정한 용량제한 기준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참고 사항〉

- 연료저장탱크는 원자력법에서 요구하는 가동중 검사를 위하여 탱크가 노출되어 있어야 하므로 지하탱크저장소의 형태로 할 수 없으며, 미사일 등의 공격으로부터 방호를 위하여 옥외탱크저장소의 형태로도 할 수 없음
- 미국국가규격(ANS 59.51)에 의하여 연료저장탱크의 용량은 7일간의 연속 가동에 소요되는 용량을 확보하여야 함
- 건축기준, 내진설계기준, 소화설비 기준 등은 원자력법 및 미국원자력위원회 기술기준에 의함
- 영광 3·4·5·6호기, 울진 3·4·5·6호기 및 신고리 1·2호기 원자력발전소의 연료저장탱크는 이와 유사한 규모로 설치허가를 받음[舊내무부 질의회신(예방01254-85, 92.4.15)에 따름]

답 변 (소방방재청 : 2010. 2. 4)

설문의 위험물 저장탱크는 지하탱크저장소의 외형을 가진 특수한 형태의 옥내탱크저장소로 볼 수 있으며,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옥내탱크저장소의 용량제한 기준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자력발전소에 설치하는 비상발전기용 연료저장탱크인 점, 원자력법과 미국원자력위원회 기술기준에 적합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에 의한 특례적용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14. 선박안전법의 규제대상 해당 여부 질의

질 의

중고 유조선을 연안에 정박하고 당해 유조선의 유창에 위험물을 저장하고자 하는 경우의 위험물안전관리법상 규제

답 변 (소방방재청 : 2010. 3. 17)

설문의 유조선이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제대상이 아닙니다(선박안전법 규제대상임). 만약 선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상의 구조물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 경우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제대상으로서 해상 옥외탱크저장소에 해당하며, 그 기술기준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XIII.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기술기준에 의하면 설문의 유조선의 구조는 해상 옥외탱크저장소로서 적합하지 아니합니다.

15. 사용정지 처분의 표시 부착여부 질의

질 의

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2조에 의한 제조소등에 대한 사용정지처분을 함에 있어서 사용정지처분과 관련한 내용을 공시하는 표지를 제조소등에 부착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2조에 의한 제조소등의 사용정지처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사용정지처분의 원인이 된 설비에 국한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 변 (소방방재청 : 2010. 5. 10)

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정지처분은 제조소등의 관계인에게 사용정지를 명하고, 명령위반 시에는 법 제3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함으로써 사용정지의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제조소등 관계인의 위법행위를 제3자에게 공시하는 것은 당해 관계인에게 수인(受忍)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법적 근거 없이 제조소등 관계인의 위 법사항을 제3자에게 공시하는 표지를 부착하는 것은 적법 하지 않습니다.
2. 제조소등의 일부에 대하여 사용정지처분을 하는 것은 제조소등의 설치상황, 위험요소 등을 감안하여 사용정지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며 반드시 사용정지처분의 원인이 된 설비에 국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2절 제조소, 일반취급소

1. 일반취급소의 격벽에 개구부 설치 가능여부

질 의

건축물의 일부를 구획하여 일반취급소를 설치하고 나머지 부분에 당해 일반취급소와 연속되는 공정을 설치하는 경우에 일반취급소와 다른 공정을 구획하는 격벽에 공정상 필수적인 개구부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답 변 (소방방재청 : 2006. 8. 7)

일반취급소 및 이와 작업공정상 연속되는 다른 공정을 동일한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에 일반취급소와 다른 공정을 구획하는 격벽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II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만, 설문과 같이 작업공정상 격벽에 개구부를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일반취급소에서 발생한 화재가 인접한 다른 공정으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자동방화셔터, 소화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자동방화셔터, 소화설비 등의 구체적인 기술기준은 관할 소방서의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통기관의 겸용 사용 가능여부 질의

질 의

비상발전설비에 부착된 취급탱크(경유 490ℓ 3기)의 통기관을 설치함에 있어서 당해 취급탱크에 공급하는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탱크저장소의 통기관과 연결하여 통기관의 선단을 겸용하는 구조로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답 변 (소방방재청 : 2006. 11. 21)

설문의 경우와 같이 옥내탱크저장소의 통기관과 당해 옥내탱크저장소로부터 위험물을 공급받는 취급탱크의 통기관을 연결하여 통기관의 선단을 겸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둘 이상의 탱크의 통기관을 겸용하는 구간의 배관은 유증기 또는 외기의 원활한 소통에 필요한 충분한 직경을 확보하여야 하며, 통기관 접속부분에 유증기의 체류 우려가 있는 굴곡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3. 일반취급소에서 자동차량에 주유 가능여부 질의

질 의

소주공장 내에 경유저장탱크를 설치하여 소주운반 트럭에 주유하는 것이 위험물안전관리법상 가능한지 여부 및 해당 제조소등의 구분

답 변 (소방방재청 : 2007. 4. 23)

소주를 제조하는 공정이 설치된 건축물은 일반취급소에 해당하므로 동건축물 내에 경유 저장탱크를 설치할 수 없으며, 동건축물이 설치된 사업장 내의 다른 장소(일반취급소의 보유공지 밖의 장소)에 자가용주유취급소를 설치하여 사업장에 출입하는 운반트럭에 주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4. 일반취급소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질 의

다음과 같이 포소화설비를 구동하기 위한 펌프설비가 위험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 위험물의 최대취급량 산정기준 및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일반취급소 해당여부

가. 연료소비량 : 매시간당 경유 83리터

나. 포소화약제 소진 소요시간 : 30분

답 변 (소방방재청 : 2007. 8. 24)

소화설비의 구동을 위한 위험물취급설비의 위험물 최대 취급량은 위험물안

전관리법령에 규정된 소화설비의 기술기준과 설계용량을 감안하여 산정하며, 설문의 경우는 펌프를 45분 가동하는 것을 전제로 지정수량 미만을 취급하는 설비이므로 일반취급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 발전소의 특례적용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질 의

발전소의 터빈설비의 유회작용을 위한 설비(펌프, 유회유탱크)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I 제5호의 규정(발전소등의 특례적용)에 의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답 변 (소방방재청 : 2008. 8. 27)

상기의 설비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I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례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발전소의 터빈설비, 유회장치 및 유회유탱크는 위험물 취급량이 지정수량 이상인 경우 위험물 일반취급소에 해당하며, 유회유탱크는 취급탱크에 해당합니다

6. 발전소의 특례적용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질 의

1. 발전소의 터빈설비의 유회작용을 위한 설비(펌프, 유회유순환탱크 등)에 공급되는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가 옥외에 설치되는 경우에 옥외탱크저장소에 해당하고, 옥내에 설치되는 경우에 옥내탱크저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 변 (소방방재청 : 2008. 9. 3)

1. 그렇습니다.

질 의

2. 발전소의 터빈설비의 유힬작용을 위한 설비에 부속된 유힬유순환탱크가 지정수량 이상인 경우에 일반취급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 변 (소방방재청 : 2008. 9. 3)

2. 유힬유순환탱크가 지정수량 이상인 경우에 당해 탱크와 유힬유순환배관 등 관련설비를 포괄하여 일반취급소에 해당하며, 유힬유순환탱크는 일반취급소의 취급탱크에 해당합니다.

질 의

3. 발전소의 터빈설비의 유힬작용을 위한 설비의 위험물 취급량 산정기준

답 변 (소방방재청 : 2008. 9. 3)

3. 유힬유순환탱크의 용량과 유힬유순환배관의 최대정체량 중 큰 것을 위험물 취급량으로 합니다.

질 의

4. 발전소의 터빈설비의 유힬작용을 위한 설비에 대한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I 제5호의 규정(발전소등의 특례적용)의 적용관계

답 변 (소방방재청 : 2008. 9. 3)

5. 발전소의 터빈설비의 유힬작용을 위한 설비는 동규칙 별표16 I 제5호의 후단에 정한 설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동규칙 별표 16 I 제5호의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동규칙 별표 4 중 I·II·IV 및 VII의 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규정을 적용합니다.

7. 제조소등의 설비에 해당되는지 질의

질 의

건축물 내에 설치된 제조소의 공정에 연결된 가열설비 및 악취방지 설비가 당해 건축물의 외부에 인접하여 설치되는 경우에 가열설비 및 악취방지 설비가 제조소의 부속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 변 (소방방재청 : 2009. 3. 30)

설문의 경우는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공정과 건축물 외부에 설치된 설비가 일련의 제조공정이므로 전체를 포괄하여 하나의 제조소가 됩니다. 그러므로 가열설비 및 악취방지 설비는 제조소의 부속설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 제조소의 보유 공지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지의 폭을 산정하는 기준은 제조소 범위의 최외측선(가열설비 및 악취방지 설비가 있는 방향은 가열설비 및 악취방지 설비의 외측선)이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3절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1. 주유취급소 담의 설치여부 질의

질 의

주유취급소의 인접부지를 주유차량 진입감속차로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인접부지에 있는 자동차정비소에 면한 주유취급소의 부지경계선에 담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인접부지를 주유취급소의 부지로 편입하지 않음)

답 변 (소방방재청 : 2006. 6. 30)

주유취급소의 부지경계선 중 주유차량이 출입하는 방향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담을 설치하여야 하며, 자동차정비소에 면한 주유취급소의 부지경계선에 설치하는 담은 도로경계선까지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감속차로의 기능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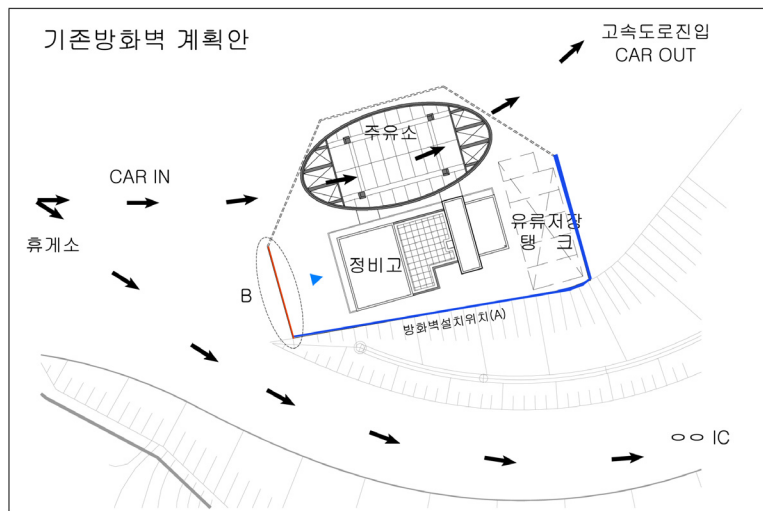
감안하여 화재예방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일부 단축할 수도 있습니다.(지하전용탱크의 주입구, 고정주유설비 등 주유작업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자동차정비소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관할 소방서장이 판단함). 끝.

2. 주유취급소 담의 설치여부 질의

질 의

가. 주유취급소에 설치된 자동차정비소에 출입하는 차량의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주유취급소의 측면(자동차가 통행하는 방향)에 설치된 담을 철거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첨부그림의 방화벽 계획안에서 B 부분의 담을 철거함)

(그림 3)



답 변 (소방방재청 : 2006. 6. 7)

변경허가를 받아 철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질 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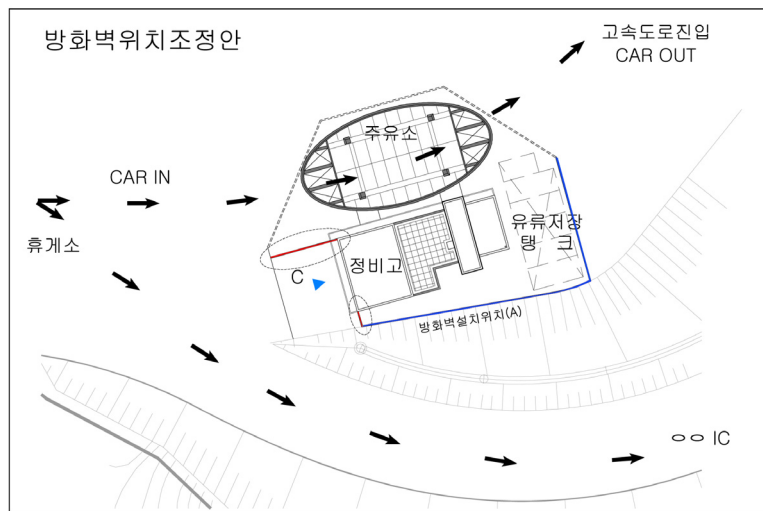
주유취급소에 설치된 자동차정비소에 출입하는 차량의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주유취급소의 측면(자동차가 통행하는 방향)에 설치된 담을 철거하고, 자동차정비소 건축물의 벽 및 이를 연장한 담으로써 주유작업장 · 주유사무실 등 주유취급소 내부와 구획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첨부그림의 C 부분의 담을 신설함)

답 변 (소방방재청 : 2006. 6. 7)

변경허가를 받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정비소는 주유취급소의 범위에서 제외되며, 자동차정비소와 주유취급소(주유작업장 · 주유사무실 등) 사이의 벽은 개구부 없이 구획되어야 합니다.

(그림 4)



3. 통기관의 상호 연결사용 가능 여부 질의

질의

1. 둘 이상의 지하탱크에 설치된 통기관의 중간부분을 배관으로 연결하여 지하탱크 내압변화를 지하탱크 상호간 보정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주유 중 자동차연료 탱크로부터 증발하는 유증기를 흡입하여 지하탱크로 회수하는 장치(STAGE-II)의 운용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가”의 내용이 가능한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상 변경허가를 받아야하는지 여부

답 변 (소방방재청 : 2006. 6. 30)

1. 가능합니다.
2. 변경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4.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의 설치여부 질의

질 의

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에 주유중 발생하는 유증기를 회수하기 위한 설비(STAGE-Ⅱ)를 설치함에 있어서 유증기 회수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지하전용탱크에 대기밸브부착 통기관을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는 특례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STAGE-Ⅱ의 시행에 앞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것임)

답 변 (소방방재청 : 2006. 7. 12)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주유취급소의 지하전용탱크에 부착하는 통기관은 밸브 없는 통기관만 허용됩니다. 추후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STAGE-Ⅱ가 시행될 경우 유증기회수 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지하탱크저장소에도 대기밸브부착 통기관의 설치를 허용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설문과 같이 STAGE-Ⅱ의 시행에 앞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범적으로 지하전용탱크에 대기밸브부착 통기관을 설치하는 것은 특례적용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니 관할 소방서의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설치를 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기술기준은 옥외탱크저장소의 대기밸브부착 통기관의 기술기준을 준용하여야 합니다.

5. 주유취급소의 벽 제거시 관련법 저촉여부 질의

질 의

주유취급소의 점포와 주유취급소의 나머지 부분과의 사이에 담 또는 벽으로 개구부 없이 구획한 후 당해 점포의 도로쪽 벽(주유취급소의 외부에 있는 벽)을 제거하는 것이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답 변 (소방방재청 : 2006. 7. 25)

설문과 같이 주유취급소와 점포를 담 또는 벽으로 개구부 없이 구획하는 경우 당해 점포는 주유취급소의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주유취급소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당해 점포의 도로쪽 벽을 제거하여도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6. 담에 방화셔터 설치 가능여부 질의

질 의

주유취급소 부지에 인접하여 설치된 다른 제조소등에 자동차 등이 출입하기 위하여 주유취급소의 담의 일부를 철거하거나 주유취급소의 담에 방화셔터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답 변 (소방방재청 : 2006. 11. 2)

주유취급소 부지에 인접하여 다른 제조소등이 설치된 경우 그 경계선에는 담을 설치하여야 하며 주유취급소의 담에 인접한 다른 제조소등에 출입하기 위한 방화셔터의 설치는 불가합니다.

7. 담에 방화문 설치 가능 여부 질의

질 의

1. 주유취급소와 그에 인접한 사무실(주유업무 외의 용도)과의 통행을 위하여

- 주유취급소의 담에 방화문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2. 주유취급소의 인접부지가 공지인 경우 당해 인접부지에 접하는 방향에 담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답 변 (소방방재청 : 2006. 11. 2)

1. 주유취급소의 운영과 직접관계 없는 사무실로 통행하기 위하여 주유취급소의 담에 출입문을 설치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2. 주유취급소의 주위에는 주유차량이 출입하는 방향을 제외하고 담을 설치하여야 하며, 인접한 부지에 다른 건축물 등이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끝.

8. 도로경계선의 의미에 대한 질의

질 의

1.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의 규정의“도로경계선”이 도시계획선을 의미하는지 차도와 인도의 경계선을 의미하는지
2. 도시계획의 변경으로 고정주유설비의 도로와의 이격거리가 저축되는 경우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답 변 (소방방재청 : 2007. 4. 16)

1. 동규칙상의“도로경계선”이란 현재 자동차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의 경계선을 의미하며, 도로는 차도와 인도로 구성됩니다. 즉, 인도가 있는 도로인 경우에는 인도와 주유취급소의 부지의 경계선을 의미합니다.
2.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시설의 기술기준은 현재의 도로를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도시계획의 변경이 위험물시설의 기술기준의 적용에 영향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이 시행되어 도로경계선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도로경계선을 기준으로 고정주유설비를 이격거리 기준에 적합하게 이전하여야 합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 제14조 참조)

9. 주유취급소의 방화벽 설치에 관한 질의

질 의

1. 주유소부지와 인접부지는 별개의 부지로 별도 분리하여 경계선에 방화벽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인접부지가 주유소와 동일 소유자라면 방화벽을 쌓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여부

답 변 (소방방재청 : 2007. 12. 4)

1. 주유취급소로 출입하는 측은 방화담을 쌓지 않을 수 있으며 그 인접부지가 동일소유자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질 의

2. ○○클럽과 주유소의 건축부지가 필지분할이 되지 않아 동일 필지내 2개의 사업장 허가를 득하였는데 이것이 가능한지 여부

답 변 (소방방재청 : 2007. 12. 4)

2.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주유취급소 허가는 필지분할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질 의

3. 주유취급소 출구를 기존 농로(계획도로)상에 주유취급소 설치자가 포장하여 완공검사를 득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답 변 (소방방재청 : 2007. 12. 4)

3.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주유취급소의 허가된 설계도면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 완공검사가 가능하며 계획도로의 완공여부 및 시공자와는 무관합니다.

질 의

4. ○○시청 지역경제과에서 관련법령과 관련한 등록사항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완공검사와 유류 사업이 가능한지 여부

답 변 (소방방재청 : 2007. 12. 4)

4.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 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 완공검사가 가능하며 위험물 저장·취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위험물의 판매에 관해서는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법에서 정하는 별도의 등록과정을 거쳐야합니다.

10. 허가된 품목외의 다른 종류의 위험물 저장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질 의

이동탱크저장소로부터 주유취급소의 지하전용탱크로 휘발유를 주입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유증기를 회수하여 냉각응축하는 설비(바닥면적 1㎡ 미만, 높이 1m 미만)를 주유취급소내에 설치하는 경우 변경허가 대상인지 여부

답 변 (소방방재청 : 2007. 12. 6)

설문의 설비는 변경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문의 설비를 설치하는 과정에 지하전용탱크의 전용실 보수공사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유증기 회수 설비의 변경허가 대상 여부

질 의

1. 주유취급소에 3만ℓ 경유 지하저장탱크에 바이오디젤 혼합유(BD 20)을 저장 및 경유차량에 주유가 가능한지 여부

답 변 (소방방재청 : 2007. 12. 17)

1. 가능합니다.

질 의

2. BD 20은 인화점이 54℃로 제4류 제2석유류에 해당하는데 관할소방서에서 품명변경신고를 해야되는 지 여부

답 변 (소방방재청 : 2007. 12. 17)

2. 기존의 경유를 저장·취급하는 탱크의 경우 제4류 제2석유류로 같은 품명이므로 품명변경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질 의

3. 주유취급소의 이동탱크저장소로 제3의 장소에서 판매가 가능한지 여부

답 변 (소방방재청 : 2007. 12. 17)

3.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위험물 판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 의

4. 고정주유설비 주유기 BD 20 전용주유기로 변경할 경우 기타 변경허가 대상이 되는지 여부

답 변 (소방방재청 : 2007. 12. 17)

4. 기존에 설치한 고정주유설비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 대상입니다. 다만, 동일한 구조 및 형식의 것으로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질 의

5. 기허가된 주유취급소에 BD 20을 저장·취급이 가능한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주유취급소와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 및 영업이 가능한지 여부

답 변 (소방방재청 : 2007. 12. 17)

5. 위험물안전관리법상의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주유취급소 허가가 가능하며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에 관한 사항은 관할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 지하저장탱크 전용실 배관 관통 가능여부 질의

질 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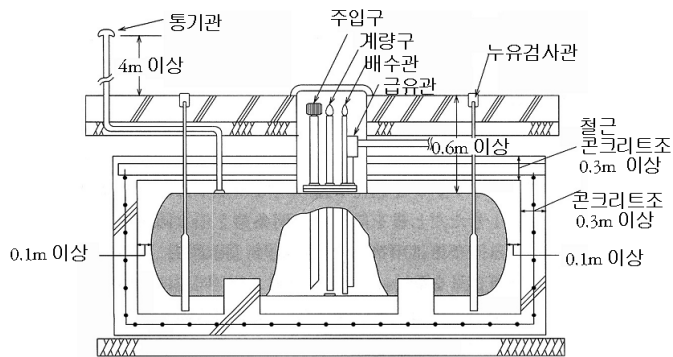
지하저장탱크 전용실에 배관이 관통할 수 있는지 여부

답 변 (소방방재청 : 2008. 1. 15)

지하탱크 전용실은 외부로부터 탱크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서 배관의 관통은 불가합니다.

참고로 탱크전용실을 설치하는 지하탱크의 예를 아래 그림과 같으며 지하탱크의 배관은 탱크 윗부분에 설치되어 맨홀부분을 통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림 5)



13. 지하저장탱크 유증기 회수에 관한 질의

질 의

1. 무연과 고급무연 2개의 지하저장탱크가 있을 경우, 고급 무연 유증기를 무연 지하저장탱크로 회수해되 되는지 여부
2. 같은 품명의 지하저장탱크가 여러 기 설치된 경우 각 탱크의 유증기를 하나의 탱크로 회수해도 되는 지 여부
3. 하나의 탱크로 회수하는 경우 과도한 유증기로 인하여 탱크압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통기관을 서로 병합하여 사용가능한 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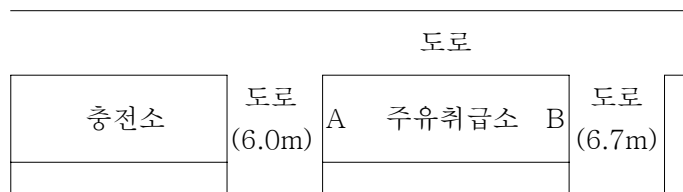
답 변 (소방방재청 : 2008. 6. 4)

1. 위험물안전관리법상 가능합니다. 다만, 휘발유 품질에 관한 사항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식경제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위험물안전관리법상 가능합니다.
3. 위험물안전관리법상 가능합니다. 다만, 각각의 통기관을 병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유체저항을 고려하여 통기관의 단면적 등을 유효하게 확보하여야 합니다.

14. 주유취급소 방화담 설치 제외 여부 질의

질 의

아래 그림과 같이 주유취급소의 주위에 도로가 설치되는 경우 주유취급소와 충전소 사이의 도로에 접한 방화담 A와 주유취급소의 옆면의 도로에 접한 방화담 B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답 변 (소방방재청 : 2008. 7. 15)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VII 담 또는 벽 규정에 의거 자동차 등이 출입하는 쪽 외의 부분에 담 또는 벽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의 경우에는 A와 B쪽 모두 담을 쌓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허가청인 관할 소방서장이 현장상황을 판단하여 공공의 안전유지 또는 재해의 발생방지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담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15. 자가용주유취급소에 관한 질의

질 의

1. 자가용주유취급소의 정의(여객용 버스를 주유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관련) 및 허가명칭

답 변 (소방방재청 : 2008. 7. 22)

1.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주유취급소의 관계인이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주유행위를 하는 장소를 자가용주유취급소라 하며, 여객용 버스의 차고지 등에서 여객용 버스에 연료를 주유하는 장소는 자가용주유취급소에 해당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상 허가명칭은 “주유취급소” 또는 “자가용주유취급소”입니다.

질 의

2. 주유공지 및 급유공지의 개념과 자가용주유취급소에서의 적용관계

답 변 (소방방재청 : 2008. 7. 22)

2. 보유공지는 자동차의 연료탱크에 위험물을 주유를 하기 위한 공지(空地)를 의미하며, 급유공지는 용기 등에 위험물을 주입하기 위한 공지를 의미합니다.

자가용주유취급소에는 특정의 자동차에 대하여 주유를 하는 관계로 주유공지 또는 급유공지의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 의

3. 자가용주유취급소의 설치장소의 제한 유무

답 변 (소방방재청 : 2008. 7. 22)

3.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시설의 설치장소에 대한 규제는 위치기준에 의하여 규제하며, 자가용주유취급소의 경우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의 도로경계선 또는 부지경계선과의 이격거리 기준에 의하여 규제합니다. 즉, 자가용 주유취급소의 설치장소의 제한은 이격거리 기준에 의하여 이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설치장소와 관련하여 적법 합니다.

질 의

4. 주유취급소의 지하전용탱크 용량 제한 5만ℓ의 의미(탱크 기수의 제한 여부)

답 변 (소방방재청 : 2008. 7. 22)

4. 주유취급소에 설치할 수 있는 지하전용탱크는 용량이 5만ℓ 이하이어야 하며, 이는 탱크의 용량에 관한 제한기준입니다. 즉, 용량기준에 적합한 지하전용탱크를 여러 기 설치하는 것은 제한 없습니다.

질 의

5. 고정주유설비의 중심선과 도로경계선과의 이격거리 4m의 의미와 이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허가취소가 가능한 지 여부(지하전용탱크와 이격거리 기준과의 관계)

답 변 (소방방재청 : 2008. 7. 22)

5.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의 중심선으로부터 도로경계선까지 4m 이상 이격하여야 하며, 개별적인 사안에 있어서 허가청(관할소방서)에서 현장사정을 감안하여 일부 기술기준의 적용을 완화할 수 있는 특례기준(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을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즉, 법령상 규정된 기술기준과 허가도면이 상이한 경우에는 허가를 한 경위에 따라 당해 허가처분의 위법성여부 및 허가취소처분의 타당성을 판단하여 결정하며 이는 1차적으로 허가청의 권한에 속하며 이에 대한 감독권한은 해당 시도지사에게 있습니다. 참고로, 고정주유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은 고정주유설비에 적용되는 것이며 지하전용탱크와는 무관합니다.

16. 주유취급소의 방화담 설치 제외 여부 질의

질 의

주유취급소와 가스충전소가 폭 4m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인접하는 경우에 당해 도로와 접하는 주유취급소 부지경계선에 방화담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답 변 (소방방재청 : 2008. 9. 3)

주유취급소에 접한 폭 4m의 도로가 주유차량이 출입하는 도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도로와 접하는 주유취급소의 부지경계선에 방화담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유차량이 출입하는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유공지와 고정주유설비의 배치상황 과 차량통행 상황 등 현장상황을 확인하여 관할 소방서장이 판단합니다.

17. 주유취급소에 화단 설치 여부 질의

질 의

주유취급소의 주유차량이 진입하는 방향의 부지경계선을 따라 차량진입에

필요한 공간 외의 부분에 화단을 조성하는 경우에 당해 화단을 따라 담을 설치하여 하는지 여부

답 변 (소방방재청 : 2008. 9. 30)

주유취급소의 부지경계선 중 주유차량이 출입하는 방향에는 담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당해 부분에 화단이 조성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18. 주유취급소의 자동차정비점에 윤활유보관 설비 설치에 관한 질의

질 의

1. 주유취급소의 자동차정비점에서 자동차엔진오일을 교환하기 위하여 윤활유 보관·주입설비와 폐윤활유 보관설비를 다음과 같이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위험물안전관리법상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윤활유 보관·주입설비 개요〉

가. 활유 보관용기 : 용량 900리터의 강철제로 된 용기로서 내부를 구획하여 윤활유를 보관함

나. 윤활유 주입설비 : 윤활유 보관용기로부터 윤활유를 인출하여 자동차의 엔진오일 주입구에 윤활유를 주입하기 위한 펌프와 호스로 구성됨

다. 부스 : 윤활유 보관용기와 주입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강철제의 공작물

(그림 6)



[윤활유 보관
· 주입설비 형상]

[윤활유 보관 주입설비 형상]

〈윤활유 교환설비 개요〉

- 가. 윤활유 교환을 위한 Pit(도크) : 자동차의 하부에서 작업을 하기 위하여 지반면 아래에 설치하는 공간(길이 2미터/폭 0.8미터/깊이 1.5미터 정도)
- 나. 폐윤활유 수용용기 : 용량 400리터의 강철제로 된 용기

답 변 (소방방재청 : 2008. 11. 9)

- 1. 설문의 설비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정하는 주유취급소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스의 바닥면적이 4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질 의

- 2. 상기의 “①윤활유 보관용기”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용기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답 변 (소방방재청 : 2008. 11. 9)

- 2. 설문의 용기는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용기검사 대상이나, 동법시행규칙 별표 18 V.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등이 설치된 부지와 동일한 부지 내 (설문의 경우는 주유취급소의 부지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기의 성능기준 및 수납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용기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동 법시행규칙 별표 19 II제8호의 규정에 의한 경고표시는 부착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질 의

- 3. 자동차엔진오일을 교환하기 위하여 Pit(도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유증기 회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 변 (소방방재청 : 2008. 11. 9)

3.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 의

4. 자동차엔진오일을 교환하기 위한 Pit(도크)내에 400리터 용량의 폐윤활유 보관 용기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답 변 (소방방재청 : 2008. 11. 9)

4.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질 의

5. 본 사안과 관련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유의하여야 할 사항

답 변 (소방방재청 : 2008. 11. 9)

5. 설문과 같은 설비를 설치하는 위치는 주유공지 또는 급유 공지를 침범하지 않아야 하며, 주유차량이 진출입하는 동선에 장애가 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윤활유(폐윤활유 포함)는 제4석유류로서 지정수량이 6천리터 이므로 윤활유 보관용기 및 폐윤활유 수용용기에 수납 된 윤활유(폐윤활유 포함)의 총량이 6천리터에 달하지 않도록 윤활유의 수급과 폐윤활유의 반출주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9. 주유취급소 부지외의 장소에 지하탱크 설치가능 여부 질의

질 의

1. 주유취급소의 부지 밖(방화담의 외부)의 지반면 아래에 지하전용탱크를 매설할 수 있는지 여부

2. 부득이 한 사유로 주유취급소의 부지 밖에 지하전용탱크를 매설하고자 하는 경우에 안전조치를 강구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특례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답 변 (소방방재청 : 2009. 12. 10)

1. 주유취급소의 주요한 설비인 지하전용탱크는 주유취급소의 부지 내에 매설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주유취급소의 부지 밖에 지하전용탱크를 매설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2. 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은 법령상 기술기준과 동일하게 설계하지 않아도 법령이 추구하는 안전성 이상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치를 허용하는 취지이며, 이는 현장사정과 설계조건을 감안하여 허가청(관할 소방서장)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설문의 경우는 지하전용탱크의 설계기준 강화, 주유취급소 내부와 지하전용탱크 주위의 소화설비기준 강화, 지하전용탱크의 맨홀 주위의 안전조치 등을 특례적용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주요 착안 사항으로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허가청이 판단하기 곤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위험물시설 안전성 평가”를 받아 허가청의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끝.

20. 주유취급소에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설치가능 여부 질의

질 의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는 설비를 주유취급소내에 설치하는 것이 위험물안전관리법상 가능한지 여부의 검토

답 변 (소방방재청 : 20010. 3. 6)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는 설비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V 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자동차 등의 점검 및 간이정비를 위한 작업장”또는 동호사목 및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배터리충전을 위한 작업장”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기충전설비의 위치선정 시 주유 자동차의 동선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제4절 옥내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1. 옥내저장소의 바닥 높이에 관한 질의

질 의

경사진 부지에 설치된 건축물(건축법상 지하1층·지상3층)의 지하1층에 옥내저장소를 설치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옥내저장소의 외벽의 두면 중 한면의 일부가 지면보다 낮고 다른 한면은 지면보다 높은 경우(나머지 두면은 건축물 내에 접함)에 옥내저장소의 바닥을 지면보다 높게 설치하도록 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III제2호의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

답 변 (소방방재청 : 2005. 7. 8)

옥내저장소의 바닥을 지면보다 높게 설치하여야 하는 취지는 빗물 등에 의한 옥내저장소 내부의 침수 우려·유증기의 체류우려·화재시 진압곤란 등의 사유를 근거로 한 것이며, 건축법에 의한 층 구분상 지하층에 해당하여도 상기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III제2호의 규정에 저촉되지는 아니합니다. 설문의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할 소방서장이 현장사정을 확인하여 할 사항입니다. 끝.

2. 옥내저장소의 특례적용에 관한 사항

질 의

기존의 건축물(“ㄷ”자형)을 이용하여 건축물의 양단에 각각 옥내저장소 1개소를 설치함에 있어서 2개의 옥내저장소 사이의 건축물의 벽과 지붕중 벽만 철거하고 지붕을 남겨두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다음과 같은 안전조치를 강구할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특례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1. 소화설비를 충족한 후 포소화전 2개 및 대형소화기 5대 추가설치
2. 자체소방대(소방차 1대 및 대원 5명 확보) 설치

3. 2개의 옥내저장소 사이에 연소확대 방지용 살수설비 설치
4. 2개의 옥내저장소 사이에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폭 22미터의 공지 확보

답 변 (소방방재청 : 2007. 7. 30)

설문의 경우는 2개 옥내저장소 사이에 연결지붕이 있어 보유공지 기준에 저촉될 수 있으나, 상기와 같은 안전조치를 강구하고 옥내저장소의 주위에 소방차의 접근이 가능한 경우에는 특례적용의 여지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특례적용 여부의 판단은 관할 소방서장의 권한이므로 관할 소방서의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3. 옥내저장소의 위험물 저장높이에 관한 질의

질 의

옥내저장소에 제4류제4석유류를 수납한 철제용기(20ℓ)를 팔레트(Pallet)에 올려서 겹쳐 쌓는 방법으로 저장하는 경우에 높이의 상한은?

답 변 (소방방재청 : 2009. 7. 31)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 III제6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겹쳐 쌓은 용기의 최상단이 4미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원자력발전소 특례적용 질의

질 의

원자력발전소의 정전시 원자로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가동되는 비상발전기에 연료(경유)를 공급하는 옥내탱크저장소를 설치함에 있어서 전원차단에 따른 연료공급의 신뢰성 및 소요발전량을 감안하여 19,000ℓ의 옥내저장탱크를 건물의 2층에 설치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반드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I제2호차목의 규정(건물의 2층에 설치하는 경우 옥내탱크저장소의 용

량은 5,000 ℓ 이하일 것)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단, 비상발전기 관련 설비는 원자력법 및 미국원자력위원회기준에 의한 건축기준 및 소방기준을 준수함)

답 변 (소방방재청 : 2005. 8. 29)

설문의 경우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특례적용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특례적용에 있어서 구체적인 설치기준은 관할 소방서의 지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5. 옥내탱크저장소의 출입문에 관한 질의

질 의

1. 옥내탱크저장소의 전용실 출입을 위한 출입구(갑종방화문 부착)가 소화난이도등급의 판정에 있어서 개구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갑종방화문을 개구부로 보는 근거
3. 옥내탱크저장소(경유 15,000 ℓ)의 전용실 출입구가 건축물의 내부에서 출입하는 구조인 경우 소화난이도등급 I 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 변 (소방방재청 : 2005. 10. 14)

1. 개구부에 해당합니다.
2. 개구부란 건축물의 벽 등에 뚫려 있는 부분을 의미하며 당해 부분에 창문 또는 출입문의 부착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방화구획에 있어서 출입구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외의 개구부가 없는”으로 기술하며, 이는 곧 출입구가 개구부에 포함됨을 의미합니다.
3. 그렇습니다.

6. 옥내탱크저장소의 통기관 겸용 질의

질 의

비상발전설비에 부착된 취급탱크(경유 490 ℓ 3기)의 통기관을 설치함에 있

어서 당해 취급탱크에 공급하는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탱크저장소의 통기관과 연결하여 통기관의 선단을 겸용하는 구조로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답 변 (소방방재청 : 2006. 11. 21)

설문의 경우와 같이 옥내탱크저장소의 통기관과 당해 옥내탱크저장소로부터 위험물을 공급받는 취급탱크의 통기관을 연결하여 통기관의 선단을 겸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둘 이상의 탱크의 통기관을 겸용하는 구간의 배관은 유증기 또는 외기의 원활한 소통에 필요한 충분한 직경을 확보하여야 하며, 통기관 접속부분에 유증기의 체류 우려가 있는 굴곡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끝.

7. 옥내탱크저장소의 특례적용에 관한 질의

질 의

원자력발전소의 원자로 안전정지를 위한 비상발전기에 공급하는 연료 저장탱크(경유 28만ℓ)를 지반면 아래의 탱크전용실(다른 용도 부분이 없는 독립된 지하구조물) 내에 옥내탱크저장소 형태로 설치하는 경우에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I 제1호라목에 정한 용량제한 기준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참고 사항>

- 연료저장탱크는 원자력법에서 요구하는 가동중 검사를 위하여 탱크가 노출되어 있어야 하므로 지하탱크저장소의 형태로 할 수 없으며, 미사일 등의 공격으로부터 방호를 위하여 옥외탱크저장소의 형태로도 할 수 없음
- 미국국가규격(ANS 59.51)에 의하여 연료저장탱크의 용량은 7일간의 연속 가동에 소요되는 용량을 확보하여야 함
- 건축기준, 내진설계기준, 소화설비 기준 등은 원자력법 및 미국원자력위원회 기술기준에 의함
- 영광 3·4·5·6호기, 울진 3·4·5·6호기 및 신고리 1·2호기 원자력발전소의 연료저장탱크는 이와 유사한 규모로 설치 허가를 받음[舊내무부 질의회신(예방01254-85, 92.4.15)에 따름]

답 변 (소방방재청 : 2010. 2. 4)

설문의 위험물 저장탱크는 지하탱크저장소의 외형을 가진 특수한 형태의 옥내탱크저장소로 볼 수 있으며,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옥내탱크저장소의 용량제한 기준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자력발전소에 설치하는 비상발전기용 연료저장탱크인 점, 원자력법과 미국원자력위원회 기술기준에 적합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에 의한 특례적용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5절 옥외탱크저장소

1. 옥외탱크저장소의 보유공지에 관한 질의

질 의

옥외저장탱크의 외측으로부터 3미터 이내에 물탱크와 담이 있고, 5.15미터 이격된 장소에 건물이 있는 경우 당해 옥외저장탱크의 위치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적합한지 여부

답 변 (소방방재청 : 2006. 2. 1)

지정수량의 500배 이하인 옥외저장탱크는 그 주위에 3미터 이상의 폭을 갖는 보유공지를 확보하여야 하며 보유공지 내에는 물탱크, 담 등 일질의 구조물이 있어서는 아니되므로 설문과 같은 경우는 옥외저장탱크의 보유공지 기준(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II)에 저촉됩니다. 또한, 인접한 건물이 안전거리 기준의 적용을 받는 대상인 경우에는 해당하는 거리만큼 안전거리를 이격하여야 합니다(동규칙 별표 6 I 참조). 참고로, 설문과 같은 위치에 위험물 저장탱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하저장탱크를 설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옥외탱크저장소의 저장위험물에 종류 질의

질 의

제2석유류의 옥외탱크저장소에 경유와 바이오유를 각각 주입하여 제2석유류에 해당하는 바이오디젤유를 생성하여 저장하는 것이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제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 변 (소방방재청 : 2006. 7. 12)

옥외탱크저장소에 위험물을 주입하는 것은 저장에 수반한 취급행위로서 위험물제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2석유류로 허가받은 옥외탱크저장소에 품질이 상이한 제2석유류를 각각 주입하거나 제2석유류 외의 위험물 또는 비위험물을 주입하여 제2석유류에 해당하는 물질을 저장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3. 옥외탱크저장소의 보유공지 단축 질의

질 의

옥외탱크저장소의 보유 공지를 단축하기 위한 물분무설비의 기술기준 중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II 제5호가목에 정한 방수율(원주길이 1m당 37ℓ/min)은 물 분무헤드의 링 단위로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물 분무헤드의 링을 2개 이상 설치하는 경우 각 링의 방수율이 원주길이 1m당 37ℓ/min을 충족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 변 (소방방재청 : 2009. 4. 8)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II 제5호가목에 정한 방수율은“탱크표면에 방사하는 물의 양”에 관한 방수율을 정한 것이며, 각각의 물 분무헤드 또는 링의 방수율을 정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링의 설치 개수에 관한 제한은 없으므로 링을 2개 이상 설치하는 경우 상기의 방수율을 충족하는 물의 양을 2개 이상의 링을 통하여 방수하는 구조이면 됩니다. 즉, 각 링의 방수율이 원

주길이 1m당 37ℓ/min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전체 링을 통하여 방사하는 물의 양이 원주길이 1m당 37ℓ/min을 충족하면 됩니다.

4. 옥외탱크에 따른 포소화설비 방출구 관련 질의

질 의

부상덮개부착고정지붕구조의 옥외탱크저장소를 설치함에 있어서 부상덮개를 부상지붕구조 옥외탱크저장소의 부상지붕의 기술기준과 동일하게 설치하고 탱크의 상단에 고정지붕을 부착하는 경우에 탱크의 환상부분에만 포를 방출하는 특형 포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답 변 (소방방재청 : 2009. 7. 1)

질의의 경우는 부상덮개부착고정지붕구조의 옥외탱크저장소이나, 부상지붕구조 옥외탱크저장소에 추가로 고정지붕을 부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화설비를 설치함에 있어서 부상지붕구조 옥외탱크저장소에 적합한 소화설비인 특형 포소화설비의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끝.

5. 안전거리 적용대상 여부 질의

질 의

1. 옥외탱크저장소의 안전거리 규제의 적용대상에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군인관사, 독신군인숙소, 사병생활관, 군사업무용 사무실, 군사업무용 강당, 군용병원이 포함되는지 여부

답 변 (소방방재청 : 2010. 4. 7)

1. 옥외탱크저장소의 안전거리 규제의 적용대상인 보호대상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I 제1호 가목 내지 바목에 정한 시설이며, 상기와 같은 시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군용병원 중 의료법 제3조제2항에 정한

예방실무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에 해당하는 것은 안전거리 규제의 적용대상입니다.

질 의

2. 옥외탱크저장소의 안전거리 규제의 적용대상에 군사시설보호구역 외에 설치된 군인관사, 독신군인숙소, 사병생활관, 군사업무용 사무실, 군사업무용 강당, 군용병원이 포함되는지 여부

답 변 (소방방재청 : 2010. 4. 7)

2. 질의“가”의 답변과 동일합니다. 즉, 옥외탱크저장소의 안전거리 규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보호대상이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질 의

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I 제1호가목의“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에 군인관사, 독신군인숙소, 사병생활관, 군사업무용 사무실, 군사업무용 강당, 군용병원이 포함되는지 여부

답 변 (소방방재청 : 2010. 4. 7)

3. 동규정의“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이란 주택 등 일상생활을 위한 것을 의미하며 상기의 시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 의

4. 군용 건축물의 난방용 연료를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II에 정한 보유공지 규제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답 변 (소방방재청 : 2010. 4. 7)

- 4. 옥외탱크저장소의 보유공지 규제는 군사용도의 옥외탱크저장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끝.

제6절 이동탱크저장소, 이송취급소

1. 이동탱크저장소의 수동폐쇄장치 적합성 질의

질 의

- 1. 다음의 이동탱크저장소 수동폐쇄장치의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적합성 여부
 - I형) 수동폐쇄장치가 배출밸브를 직접 폐쇄하는 구조로서 배출밸브와 수동식폐쇄밸브를 병용하는 것
 - II형) 배출밸브와 토출구 사이의 배관에 수동식폐쇄밸브를 설치한 구조
- 2. “1”의 II형의 경우에 수동식폐쇄밸브를 배출밸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답 변 (소방방재청 : 2004. 7. 9)

- 1. 질문의 경우 중 1형이 적합하며 2형은 적합하지 아니합니다. 폐쇄밸브는 각 배출밸브를 직접 폐쇄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배출밸브에 연결된 배관을 폐쇄하는 구조는 적합하지 아니합니다.
- 2. 배출밸브는 이동저장탱크의 각 실별로 본체에 부착된 것을 의미하며, 본체에 연결된 배관에 부착된 것을 의미하지 아니합니다.

2. 관할외의 관서에서 소방검사 가능한지 질의

질 의

이동탱크저장소의 소방검사를 당해 이동탱크저장소를 허가한 소방서 외의 소방서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요망

답 변 (소방방재청 : 2004. 7. 9)

이동탱크저장소에 대한 소방검사의 취지는 당해 이동탱크저장소를 허가한 소방서장이 허가 내용과 같이 구조·설비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하기 위한 것이므로 당초 허가한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것이 그 취지상 타당하며, 위험물안전관리법(중전의 소방법)의 상치장소제도의 취지상 상치장소는 이동탱크저장소를 사용하는 곳에 확보하여야 합니다. 설문의 경우는 상치장소를 사용하는 지역이 아닌 곳에 확보함으로써 야기되는 문제이므로 상치장소를 사용본거지로 이전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자동차관리법상 등록지(번호판의 지역구분)에 관계없이 상치장소의 소재지 관할 소방서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3. 이동탱크저장소의 자동차 주유 위법여부 질의

질 의

1. 이동저장탱크로부터 공항 내의 승객수송용버스의 연료탱크에 위험물을 직접 주유하는 것이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2. 공항 내의 승객수송용버스, 승합차, 장비 등에 대한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적법한 주유방법

답 변 (소방방재청 : 2004. 7. 28)

1.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18 IV제5호아목4)의 규정에 저촉됩니다.
2.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자동차관리법상의 등록 여부를 불문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은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직접 연료탱크에 주유 할 수 없으며, (자가용)주유취급소에서 주유하여야 합니다.

4. 이동탱크저장소의 허가품명 변경에 관한 질의

질 의

1. 인화점 53℃ 내지 65℃의 식물유혼합 연료유를 저장하는 이동탱크저장소를 설치하는 경우에 허가품명을 경질유로 할 수 있는지 여부
2. 이동탱크저장소의 허가량 산정기준

답 변 (소방방재청 : 2006. 9. 5)

1. 경질유란 휘발유, 등유, 경유를 의미하는 것이며, 설문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이동탱크저장소를 설치하는 경우에 허가품명은 제4류제2석유류로 하여야 합니다.
2. 이동탱크저장소의 허가량은 당해 이동저장탱크의 내용적에서 공간용적(내용적의 5%~10%)을 뺀 용적으로 하며, 그 중량은 자동차최대적재량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5. 이동탱크저장소 적발후 운행정지 절차 질의

질 의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이동탱크저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는 비상 폐쇄밸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이동탱크저장소를 소방관서에서 적발한 경우 운행을 정지시키는 절차

답 변 (소방방재청 : 2007. 7. 30)

이동탱크저장소에 비상 폐쇄밸브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에 정하는 기술기준에 위반되므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수명령을 하며, 이 개수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형사처벌과 동법 시행규칙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사용정지처분을 합니다.

6. 이송취급소의 부속설비에 관한 질의

질 의

이송취급소의 위험물 이송작업 후 이송설비(로딩암)에 잔류한 위험물을 회수하여 보관하고 이송작업장의 누출 위험물을 집유하는 용도의 회수탱크(Slop Oil Tank, 용량 8.5m³, 4기)가 이송취급소의 부속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 변 (소방방재청 : 2007. 8. 24)

설문의 탱크는 이송취급소의 부속설비인 위험물취급탱크에 해당하며, 그 기술기준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IX에 규정된 취급탱크의 기준을 준용하며 탱크안전성능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7절 안전관리자, 자체소방대

1. 안전관리자의 선임 주체 및 책임소재 질의

질 의

1. A사 소유의 건축물을 B사가 임차하고 관리·운영은 A사가 하는 형태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방화관리자 선임의 주체

답 변 (소방방재청 : 2004. 8. 12)

1.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 선임 주체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임으로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점유자 중에서 선임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사실상의 관리주체에서 선임함이 타당 할 것입니다.

질 의

2. A사 소유의 위험물제조소등을 B사가 임차하고 관리·운영은 A사 하는 형태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안전관리자 선임의 주체

답 변 (소방방재청 : 2004. 8. 12)

2.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의 주체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지위 승계된 경우에는 승계인을 말함) 입니다. 설문의 경우에 있어서 안전관리의 내실을 위하여 직접 관리·운영을 하는 A사가 관계인으로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것이 적절 할 것으로 사료되나, 최종적으로 누가 관계인이 될 것인지는 A사와 B사의 계약관계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질 의

3. 화재발생 시 법적 책임의 소재

답 변 (소방방재청 : 2004. 8. 12)

3. 화재발생 시의 법적 책임은 화재발생과 관련한 고의·과실, 위법성, 귀책성 등의 존부 및 소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인바, 개별적 사안에 있어서의 민·형사상 책임의 존부 및 소재의 판단은 법원에 있다 할 것입니다.

2. 제조소등의 지위승계 해당여부 질의

질 의

A사와 B사가 공동운영계약을 체결하여 A사가 소유한 위험물제조소등의 운영을 B사에 위탁하여 B사(운영회사)가 사실상 안전관리와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부담하고 A사(위탁회사)는 대외적으로 사업주의 명의(설치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법률관계를 형성한 경우 제조소등의 지위승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 변 (소방방재청 : 2004. 9. 14)

인도에 의한 지위승계는 제조소등에 대한 점유의 이전과 함께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조소등의 설치자의 지위도 이전한다는 취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단순한 점유의 이전 또는 관리주체의 이전에 의하여 반드시 지위승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의 경우 안전관리와 관련된 제반업무의 수행·부담을 운영회사가 한다는 내용에 의해서는 일반적으로 지위승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대외적으로 사업주의 명의를 위탁회사가 유지한다는 내용에 의하여 설치자의 지위를 이전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지위승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위험물안전관리자와 위험물운송자 겸직 여부 질의

질 의

위험물안전관리자와 위험물운송자의 자격 겸직 가능 여부

답 변 (소방방재청 : 2004. 12. 29)

위험물안전관리자는 특정의 제조소등에 선임된 자이며 위험물운송자는 이동탱크저장소의 운영을 할 수 있는 자로서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가 위험물운송자 자격을 보유하거나 그에 따라 이동탱크저장소를 운행하는 것은 제한이 없으나, 당해인이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는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취급현장 참여의무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이동탱크저장소의 운영이 가능합니다. 즉,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위험물운송자로서 이동탱크저장소를 운행하는 동안은 당해인이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 취급행위(위험물 입·출하작업, 위험물 소분작업 등)는 금지됩니다.

4. 위험물제조소의 동일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질의

질 의

기존의 제조소의 설치자가 그 제조소와 인접한 장소(지방도를 사이에 두고 약 200m 정도 이격된 장소)에 그 제조소와 공정상 연결되는 제조소를 증설하는 경우에 기존 제조소와 증설되는 제조소가 설치된 장소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사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 변 (소방방재청 : 2005. 3. 31)

동일한 사업소에 해당합니다.

5.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시기에 관한 질의

질 의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시기가 제조소등 완공검사필증을 교부 받은 시점인지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시점인지

답 변 (소방방재청 : 2005. 4. 30)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위험물을 저장·취급하기 전까지 선임하면 됩니다.

6. 위험물안전관리자 참여 없이 취급행위시 관련 벌칙 질의

질 의

제조소등 설치자(법인)가 (주)○○서비스에게 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하고 (주)○○서비스가 안전관리대행기관에게 위험물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한 상태에서 (주)○○서비스 소속 직원이 안전관리자 참여 없이 위험물취급행위를 한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처벌대상(양벌규정과 관련)

답 변 (소방방재청 : 2005. 11. 29)

안전관리자 참여 없이 위험물취급행위를 한 (주)○○서비스 소속 직원은 법 제3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며 (주)○○서비스는 법 제38조 및 제3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입니다. 또한, 안전관리대행기관의 기술인력 중 당해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자로 지정된 자가 안전관리에 관한 감독업무를 태만히 한 경우에는 당해 기술인력은 법 제3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법 제38조 및 제3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입니다.

7. 위험물안전관리자 중복선임 가능 여부 질의

질 의

동일인이 운영하는 2개의 저유소(30m 이격)에 설치된 충전하는 일반취급소 2개와 이에 위험물을 공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 7개의 안전관리자를 1인이 중복선임 할 수 있는지 여부

답 변 (소방방재청 : 2007. 11. 8)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충족하므로 1인의 안전관리자가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8. 안전관리자 대행에 관한 질의

질 의

1.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에 의하여 위험물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에 위험물안전관리를 위탁하는 것이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적법한지 여부
2.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관 또는 지정된 기관에 안전관리를 위탁하고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는 경우에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안전 관리자 선임신고서) 중“설치자”와“신고인”은 누구를 기재하여야 하는지?

답 변 (소방방재청 : 2009. 3. 4)

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위험물시설의 관계자는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안전관리를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제2항에 의하여 안전관리를 수탁할 수 있는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입니다. 즉,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에 의하여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에 위험물안전관리를 위탁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2.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관에 안전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적법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가 아니므로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할 수 없으며,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안전관리를 위탁하고 선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선임신고서의“설치자”와“신고인”은 제조소등완공검사필증에 기재된 설치자를 기재합니다.

8. 군부대 위험물안전관리자 안전관리대행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질 의

군부대에서 설치한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에 의하여 지정된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안전관리대행 제도를 규정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의 규정은 국가기관인 군부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식경제부의 유권해석을 받음)

답 변 (소방방재청 : 2009. 3. 18)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시설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항에 대한 특별규정인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를 직접 선임하지 않고 대행기관에 위탁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의 규정은 국가기관인 군부대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군부대의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는 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없고 군부대에서 안전관리자를 직접 선임하여야 합니다.

9. 자체소방대 인원 확보에 관한 질의

질 의

1. 24시간 위험물시설을 가동하는 사업장의 경우에 자체소방대의 화학소방차 1대당 보유하여야 하는 자체소방대원의 수 5명을 주간 및 야간으로 나누어 둘 수 있는지 여부

답 변 (소방방재청 : 2009. 6. 15)

1. 자체소방대의 화학소방차 1대당 보유하는 자체소방대원의 수(5명)는 화학소방차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원이므로 24시간 위험물시설을 가동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각 근무조별로 자체소방대원의 수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질 의

2. 자체소방대원은 자체소방대의 업무만 전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 변 (소방방재청 : 2009. 6. 15)

2. 자체소방대원 중 화학소방차 운전자는 자체소방대 업무만 전담하여야 하며, 나머지 자체소방대원은 평소 다른 업무에 종사하고 비상시에 소집되어 자체소방대를 운용할 수 있으면 됩니다.

질 의

3. 자체소방대를 설치한 사업장의 종업원이 아닌 자로써 자체소방대원을 구성하여도 되는지 여부

답 변 (소방방재청 : 2009. 6. 15)

3.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자체소방대의 설치의무 및 인적·물적 요건을 정하고 있으며, 자체소방대를 설치한 사업장의 사업주와 자체소방대원이 직접적인 노무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사업장 외부의 인력으로써 자체소방대원을 구성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자체소방대는 당해 사업장 내부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질 의

4. 자체소방대의 구성 및 운영을 외부업체에 위탁하여도 되는지 여부

답 변 (소방방재청 : 2009. 6. 15)

4. 무방합니다.

10. 동일한 사업장을 사용하고 법인이 다를 경우 자체소방대 운영 관련 질의

질 의

동일한 사업장내의 A법인이 운영하는 제조소등 중 일부 제조소등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인이 운용하고, 각 법인이 자체소방대를 설치하는 경우와 관련임

1. 각 법인이 설치한 자체소방대의 화학소방차를 동일한 장소에 배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답 변 (소방방재청 : 2009. 8. 25)

1. 자체소방대의 화학소방차는 해당 사업장내의 출동이 용이한 장소에 배치하여야 하며, 설문과 같이 두 법인이 인접한 장소에 각각 자체소방대를 설치한 경우에 출동이 용이한 장소를 선택하여 동일한 장소에 화학소방차를 배치하여도 무방합니다.

질 의

2. 자체소방대를 설치한 사업장의 관계인과 자체소방대원의 고용관계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A법인과 고용관계를 갖고 있는 근로자를 B법인의 자체소방대의 자체소방대원으로 파견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답 변 (소방방재청 : 2009. 8. 25)

2.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의 관계인은 자체소방대의 물적·인적 요건을 충족하는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하여 자체소방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 되며, 반드시 사업장의 관계인과 자체소방대원 간에 고용관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다른 업체의 근로자가 파견되어 자체소방대원을 구성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제8절 운반기준, 소화설비, 기타

1. 위험물설비의 소화설비에 관한 질의

질 의

1. 위험물제조소등의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제어밸브의 설치기준
2. 위험물제조소등의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축전지설비의 설치 기준

답 변 (소방방재청 : 2005. 2. 17)

1. 위험물제조소등의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제어기능에 관한 기준은 위험물안전 관리에관한세부기준 제134조제4호카목의 규정에 의합니다.
2. 위험물제조소등의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축전지설비의 설치 기준은 위험물안 전관리에관한세부기준 제134조제4호거목의 규정에 의합니다.

2. 위험물 운반용기의 법 저촉 여부 질의

질 의

제4류제3석유류 또는 제4류제4석유류의 위험물을 연질플라스틱 용기(용량 2 만ℓ)에 수납하여 컨테이너 내부에 적재하여 수출하는 경우에 위험물안전관리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답 변 (소방방재청 : 2005. 6. 14)

수출용 위험물을 용기에 수납하여 부두까지 운반하는 도중에는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적합한 용기에 대해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며, 설문과 같이 국제해상위험물규칙상 위험물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물질을 수납한 수출용 위험물용기에 대해서는 국제해상위험물규칙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계없이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운반용기의 구조 · 최대용량에 관한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 칩 별표 19의 규정에 의한 적재방법 · 운반방법 및 경고표시 부착의무(컨테 이너의 외부)는 적용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3. 위험물설비의 경보설비에 관한 질의

질 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보설비 중 확장장 치의 개념에 휴대용무전기가 포함되는지 여부(제조소등이 설치된 사업장에 중

사하는 모든 근로자 및 관계자가 무전기를 휴대하는 경우임)

답 변 (소방방재청 : 2005. 8. 1)

경보설비 중 확성장치란 위험물제조소등의 화재발생시 당해 제조소등의 인근에 있는 모든 자(제조소등의 근로자·관계자 외의 자를 포함)에게 화재발생 사실을 동시에 알리기 위한 것이므로 제조소등의 근로자 및 관계자가 휴대하는 무전기는 확성장치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끝.

4. 위험물의 판매방법에 따른 위반여부 질의

질 의

1. 주유취급소에서 휘발유를 용기에 수납하여 판매하는 것이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2.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주유취급소에서의 휘발유판매량 제한이 있는지 여부
3. 휘발유운반전용의 용기가 있는지 여부 및 위험물운반용기의 기준

답 변 (소방방재청 : 2005. 10. 6)

1.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 V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납 기준 및 용기기준을 준수하면 동법에 저촉되지 아니합니다.
2.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의 판매행위 및 판매량에 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 V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용기의 용량기준에 적합한 용기에 수납하여 판매하여야 합니다.
3. 휘발유운반전용의 용기가 있는 것은 아니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 운반기준에 적합한 용기에 수납하여야 합니다. 끝.

5. 위험물의 중요 운반기준에 관한 질의

질 의

1. 질산암모늄, 과망간산칼륨, 분말알루미늄, 염소산칼륨, 설탕이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산암모늄 100g, 과망간산칼륨 900g, 분말알루미늄 300g, 염소산칼륨 1,000g, 설탕 500g을 플라스틱용기에 수납하여 종이박스(가로 32cm×세로 24cm)에 넣고 용기사이에 신문지를 완충재로 삽입한 상태로 운반하는 것이 위험물 안전관리법상의 운반기준 중 중요기준에 위반되는지 여부

답 변 (소방방재청 : 2005. 10. 6)

1. ① 질산암모늄은 제1류 질산염류에, 과망간산칼륨은 제1류과망간산염류에, 염소산칼륨은 제1류 염소산염류에 각각 해당하는 위험물입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
 ② 분말상태의 알루미늄은 150 μ m(마이크로미터)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 이상인 것은 제2류 금속분에 해당하는 위험물입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 비고 제5호).
 ③ 설탕은 위험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① 염소산칼륨은 위험등급 I에 해당하는 제1류 위험물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9 I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플라스틱용기에 수납할 수 없으며, 플라스틱용기에 수납한 경우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제3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운반기준 중 중요기준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② 제1류 위험물인 질산암모늄, 과망간산칼륨, 염소산칼륨과 제2류 위험물인 분말알루미늄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 II 제6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에 함께 적재하여 운반할 수 없으며, 함께 적재한 경우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동호의 규정에 의한 운반기준 중 중요기준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6. 위험물의 운반용기가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질의

질 의

1.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에 1천리터 용량의 플라스틱용기 10개를 적재하여 위험물(제1석유류, 알코올류)을 운반하는 것이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2.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에 1만리터 용량의 철제탱크 1개를 설치하여 위험물(제1석유류, 알코올류)을 운송하는 것이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답 변 (소방방재청 : 2005. 11. 30)

1. 1천리터의 플라스틱용기는 위험물안전관리법상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로서 한국소방검정공사로부터 검사에 합격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35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형사처벌 대상입니다.(관련조항 : 법 제20조제2항 단서, 동법시행령 제22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규칙 제51조제1항).
2.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에 1만리터의 철제탱크를 설치하여 위험물(제1석유류, 알코올류)을 운송하는 것은 위험물안전관리법상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동탱크저장소를 설치하고 동시실에서 위험물을 저장취급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 제 35조제1호 및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형사처벌 대상 입니다 (관련조항 : 법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전단).

7. 운반가능한 위험물의 종류에 관한 질의

질 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 I 제4호 및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용차량으로는 자동차연료용 위험물만 운반할 수 있고 선박연료용 위험물은 운반할 수 없는지 여부

답 변 (소방방재청 : 2006. 11. 21)

상기 조항은 승용차량으로 인화점 40도 미만의 자동차연료용 위험물을 운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용기기준을 규정한 것이며, 승용차량에 의하여 그 외의 위험물 운반을 금지하는 취지는 아닙니다. 즉, 승용차량으로 선박연료용 위험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용기의 구조 및 최대용적은 동규칙 별표 19 I 제3호를 적용합니다.

참고로, 승용차량에 의한 자동차연료용 위험물 특례규정은 승용차량내에 비

상연료용의 위험물을 장기비치하는 경우를 감안하여 일반적인 운반에 비하여 강화된 기준입니다. 끝.

8. 위험물설비의 소화설비에 관한 질의

질 의

석유화학 사업장에 설치하는 다수의 위험물제조소·옥외탱크저장소 등에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설비를 설치함에 있어서 물분무소화설비의화재안전기준 제6조제10항 또는 포소화설비의화재안전기준 제7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 및 감시제어반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미국 NFPA Code 11 및 15에 의한 개방상태 유지방법의 적용 가부)

답 변 (소방방재청 : 2007. 7. 4)

물분무소화설비의화재안전기준 또는 포소화설비의화재안전기준에 의한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는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서 급수배관의 개방상태를 상시 감시하여 화재발생 시 급수장애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설문의 경우와 같이 방호대상물로부터 원격지에 설치된 공용수원으로부터 다수의 방호대상물에 급수배관이 교차형태로 설치되는 경우에는 급수배관의 개폐밸브를 개방상태로 반고정시켜 개방상태를 유지하는 방법 등(구체적인 방법은 미국 NFPA Code 11 및 15 참조)으로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 및 감시제어반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9. 옥외탱크저장소의 소화설비에 관한 질의

질 의

1.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적합한 포소화설비를 설치한 부상지붕식 옥외저장탱크의 소화 보조설비로 다음의 설비를 설치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약 제 : CFI(트리플루오로이오다이드)
 - 제조사 : Saval BV

예방실무

- 구조 : 탱크상부의 Rim Seal Area에 원형 스테인레스 파이프를 설치하고 파이프에 2m 간격으로 온도감지기와 스프링클러 형태의 스프레이를 장착하여 폰툰에 설치된 CFI용기(20kg)로부터 약제를 공급받는 구조
- 작동원리 : 화재발생시 온도감지에 의하여 CFI가스가 분사됨

답 변 (소방방재청 : 2007. 11. 29)

1. 설문의 설비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적합한 옥외탱크저장소의 소화설비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적법한 포소화설비가 설치된 옥외저장탱크에 소화기능을 보조하기 위한 설비로 추가 설치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질 의

2. 상기의 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소화설비 형식승인을 득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 변 (소방방재청 : 2007. 11. 29)

2. 설문의 설비는 소화설비가 아니므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소화설비 형식승인 대상은 아닙니다.

질 의

3. 상기의 설비를 기존 옥외탱크저장소에 설치하기 위하여 소방서장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득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 변 (소방방재청 : 2007. 11. 29)

3. 변경허가를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10. 위험물설비의 소화설비에 관한 질의

질 의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29조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옥내 소화전설비의 시동표시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다음의 ㉠경우와 ㉡경우를 모두 만족하여야 하는지 여부

- ㉠ 적색의 표시등을 점멸시키는 것에 의하여 가압송수장치의 시동을 알리는 것이 가능한 경우
- ㉡ 자체소방대를 둔 제조소등으로서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장치를 기동용 수압개폐장치로 사용하는 경우

답 변 (소방방재청 : 2009. 09. 20)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29조제3호 단서의 규정은 옥내소화전설비의 시동표시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로서 ㉠경우와 ㉡경우를 모두 허용하는 의미입니다. 즉, ㉠경우와 ㉡경우를 동시에 만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도 시동표시등 설치를 면제하며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도 시동표시등 설치를 면제합니다. 끝.

03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Gangwondo Fire Service Academy



목 · 차

CONTENTS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269

제 2 장 소방검사 등

제 2 조 소방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270
 제 3 조 소방검사 및 자체점검 갈음처리 등 270
 제 4 조 소방대상물 조사 273
 제 5 조 소방검사 결과 보고 274
 제 6 조 소방검사 결과조치 등 275
 제 7 조 시정보완의 기간연장 277
 제 8 조 소방검사자의 지정 등 278
 제 9 조 소방검사 결과 보고 279

제 3 장 건축허가동의·소방시설의 적용 및 소방공사감리자 지정 등

제 10 조 건축허가 동의요구서의 처리 281
 제 11 조 건축허가 동의여부의 통보 281
 제 12 조 설계변경 등에 따른 설계도서의 제출 283
 제 13 조 삭 제 2004.10.12 283
 제 14 조 증축 등의 경우 소방검사감리자 지정 등 284
 제 14 조의 2 상주공사감리 지정 등 285

제 4 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제 15 조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의 재발급 286
 제 16 조 안전시설의 설치기준 등 287

제 5 장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제 1 절 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 288
 제17조 방화관리자 선임·해임 관리 등 288
 제 2 절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운용 등 289
 제18조 공공기관의 세부적용 범위 289
 제19조 감독적 직위에 있는 자 등 291
 제20조 삭 제 2007.8.22 296
 제21조 삭 제 2007.8.22 296

제 6 장 소방시설업의 등록 등

제 1 절 소방시설업의 등록 등에 대한 공통규정 297
 제22조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 297
 제23조 등록신청에 대한 심사 등 297
 제24조 서면심사 298
 제25조 현장조사 299
 제26조 등록사항변경신고 등의 처리절차 299
 제26조의 1 소방관련업의 지위승계 범위 300
 제27조 기술능력의 겸직허용 301
 제28조 기술인력의 관리 301
 제29조 등록대장의 관리 등 301
 제30조 기술자격증의 기재요령 등 302
 제 2 절 소방시설공사업 302
 제31조 소방시설의 착공신고 등 302

제 3 절 지도 및 감독 303

 제32조 소방관련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303

 제33조 행정처분의 적용 등 304

 제34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304

 제35조 과태료 징수절차 등 304

제 7 장 법령운동 및 민원업무처리에 관한 공통규정

제 1 절 소방시설의 적용 305

 제36조 훈련의 운용 305

 제37조 법령의 질의 305

■ 부 칙 / 306

■ 별 표 / 307

1. 예방소방행정통계조사 항목 및 기준 (제4조 제1항 관련)
2. 소방검사서 작성 및 처리요령 (제5조 제3항 관련)

■ 별지서식 / 311

- 제 1 호 시정보완명령서
- 제 2 호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
- 제2-1호 소방관련법령 위반사실 보고서(과태료)
- 제 3 호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자인(확인)서
- 제3-1호 소방관련법령 위반사실 확인서(과태료)
- 제3-2호 소방관련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대상자(앞면)
- 제3-2호 소방관련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대상자(뒷면)
- 제 4 호 예방검사요원 명부
- 제 5 호 소방검사전문교육 관리대장
- 제 6 호 건축허가 (부)동의여부 통보서

예 방 실 무

제 7 호 특정소방대상물 교육관리대장

제 8 호 방화관리자 선·해임 관리대장

제8-1호 공공기관 방화관리자 선·해임 관리대장

제 9 호 등록신청 심사 결과서

제10호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예고서 (갑지), (을지)

제11호 과징금 납부통지서 (1면), (2면), (3면), (4면), (5면)

제12호 과징금 수납 기록부

제13호 과태료 납부통지서 (1면), (2면), (3면), (4면), (5면)

제13-1호 소방관련법 위반 과태료 자진납부 (1면), (2면), (3면)

제14호 ○○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예고서 (을지), (갑지)

제15호 과태료수납기록부

예 방소방업무처리규정

[시행 2010. 3. 30] [소방방재청 훈령 제198호, 2010. 3. 30,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령·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소방시설공사사업법령·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의 규정에 의한 화재의 예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체점검, 소방용수시설의 관리, 소방시설관리유지·소방시설공사·소방시설설계·소방공사감리·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이 적용되는 범위는

가. 소방기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다. 소방시설공사사업법 · 시행령 · 시행규칙

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은 이 규정을 적용 받지 않고, 별도의 훈령인 **위험물규제업무 처리규정**(소방방재청 훈령 제186호, 2009. 8. 24. 시행)을 적용 한다.

그러나, 위험물규제업무 처리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범위 내에서 위험물규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본 규정을 준거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적합 하게 별지서식을 변경 사용해도 무방하다.

(예,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 등)

제2장 소방검사 등

제 2 조 소방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 ①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장" 이라 한다)은 「소방기본법」 제12조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계획에는 특정소방대상물 등에 대한 화재의 예방·경계를 위하여 연간 및 월간 소방검사계획과 다중이용업소의 인적·물적 피해감소를 위한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신설)
- ③ 제1항의 소방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할구역 안의 소방대상물의 현황과 이용시기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소방검사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 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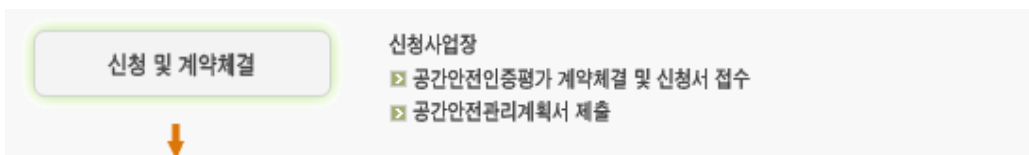
소방관계법령의 행정행위의 하나인 소방검사는 대표적인 권력적인 행정작용으로 수명자인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침해적인 요소가 크므로 소방관계법령에 규정된 유사한 행정행위들을 종합하여 연간 및 월간계획에 따라 시행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반면, 종합적인 소방안전관리계획으로 화재 등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는데 최대의 효과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소방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제조소 등에 대한 출입검사계획도 함께 수립하여야 한다.

제 3 조 소방검사 및 자체점검 같음처리 등

- ① 소방관서장은 제2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인증·수상 또는 평가 등을 받은 날부터 **2년간** 소방검사계획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사단법인 한국안전인증원으로부터 공간안전인증을 받은 소방대상물

2. 소방방재청 주최로 실시하는 대한민국안전대상 시상에서 소방방재청장 이상의 상을 수상한 소방대상물
 3.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방화관리능력평가에서 우수 방화관리대상으로 평가받은 소방대상물
 4.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가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특정소방대상물
 5.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한국소방안전협회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로부터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공공기관
 6.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한국화재보험협회로부터 안전점검결과를 통보받은 특정소방대상물
- ② 소방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인증·수상 또는 평가를 받은 해당 연도부터 **3년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에 한한다)을 실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사단법인 한국안전인증원으로부터 공간안전인증을 받은 소방대상물
 2. 소방방재청 주최로 실시하는 대한민국안전대상 시상에서 소방방재청장상 이상의 상을 수상한 소방대상물
 3.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방화관리능력평가에서 우수 방화관리대상으로 평가받은 소방대상물

소방방재청이 감독하고 사단법인 한국안전인증원이 주관하는 공간안전인증제(Safety Zone - Certi)는 안전을 중시하는 기업문화를 정착시키고 온 국민의 안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획·운영되는 제도로서, 화재나 재난방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및 관심을 확산시키고 안전에 대한 국가 및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여 국가의 안전문화 수준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공간안전평가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사후관리	한국안전인증원, 한국소방검정공사, 해당사업장 ▶ 인증유효기간 3년 ▶ 매 1년마다 사후관리평가
------	--

그리고, 대한민국 안전대상은 기업경영상 안전분야의 가치고양과 민간 자율적인 안전 문화의 확산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를 자랑한다. 수여 대상은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인명과 재산보호에 앞장서는 우수기업, 단체 및 개인이며, 소방방재청 과 경향신문사가 공동주최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방화관리능력평가는 유사시 위기관리능력 향상 및 화재피해 저감을 위하여 방화관리자에 대한 동기부여와 경영주의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을 유도함으로써 민간자율 안전관리 체제를 구축하고자 방화관리자 개인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제 4 조 소방대상물 조사

- ① 소방서장은 소방정책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별표1의 예방소방행정통계조사 항목 및 작성기준에 따라 소방대상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소방행정통계조사를 매년 12월말일 기준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시·도 소방본부장은 조사결과서를 제3항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소방행정통계조사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련서식의 시달 또는 조사항목의 변경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소방대상물 조사는 광의의 소방검사로 이해하는 경우가 지금까지의 소방행정의 관행이었다. 예를 들어 별표1의 예방소방행정통계조사 및 항목 기준의 각 항목별로 소방대상물을 조사해 보면 방화관리자 미선임, 법정 자격 미달 등 법령위반 사항을 발견할 경우가 많이 있다. 이 경우 조사 담당자는 소방법령위반 적발보고서를 작성하고 과태료 등 위법사항 조치가 따르게 된다.

그러나, 소방검사의 근거법인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조 1항은 화재의 예방과 화재진압 대책의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한하여 소방검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소방정책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을 주목적으로 실시하는 소방대상물 조사를 광의의 소방검사로 이해하는데 있어 무리가 따른다고 본다. 또한 기관내부 규정인 훈령으로 국민에게 새로운 규제를 가할 수 없다는 본 규정 제36조 1항의 취지에도 적합하지 않다.

그러므로 소방대상물 조사는 그간의 소방검사 또는 각종 인·허가·신고 등으로 축적된 자료와 관계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협조받아 필요한 항목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 5 조 소방검사결과 보고

- ① 소방관서장은 소방검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화재취약성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고시」 별지 제1호 서식의 소방검사세부검사표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②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소방검사세부검사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방검사서의 관계자료란에 매수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③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6호 서식의 소방검사서는 별표 2의 소방검사서 작성 및 처리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④ 소방방재청장은 예방소방행정 정책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계획 및 추진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관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소방시설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서식의 소방검사세부검사표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소방검사서외에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검사세부검사표 이다. 고시에 의한 소방검사세부검사표는 원래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자체점검을 위한 세부검사표 이므로 이 서식을 사용할 경우 검사표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 6 조 소방검사 결과조치 등

- ① 소방검사결과 소방시설 등에 불량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정보완 명령서를 발부하고, 보완기간 만료 후 **7일** 이내에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소방검사결과 건축·전기·가스시설 등이 관계법령에 위반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관계기관에 그 위반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단서삭제)
- ③ 제1항에 따른 시정보완 명령서는 검사결과 및 시정을 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알기 쉽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발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시정보완 명령내용은 소방검사서의 위반내용과 관계증명서류 등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시정보완 대상·내용 및 근거법령의 조문을 기재한다.
 2. 시정보완 기간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소방시설 등의 작동·기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20일** 이내
 - 나.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보완대상 및 공사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60일** 이내
 3. 시정보완 명령서에는 기간연장의 신청항목 또는 방법이나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이 명령기간 내 시정보완을 완료하지 아니할 경우 받게 될 불이익을 자세히 기록한다.
- ④ 소방검사결과 별칙규정(과태료를 포함한다)의 적용대상이 되는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또는 시정보완명령을 기간 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소방대상물의 소방검사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에 그 위반내용, 위반법령의 조문을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 등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인이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을 거부한 경우에는 관계인 참여 하에 날인거부를 명시한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 등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인이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을 거부한 경우에는 관계인 참여 하에 날인거부를 명시한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 등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보고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라 과태료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 예고서와 함께 위반내용, 위반법령의 조문 등을 기록한 별지 제3-2호 서식을 현장에서 발부하고, 그 부분을 관계인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 예고기간 중에도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별지 제13-1호 서식을 함께 교부 할 수 있다.

⑥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관계인이 소방시설관리업자 등에 의뢰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한 결과 또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결과가 관련 규정에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점검결과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3항의 기준에 따라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시정조치 기간 내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절차를 진행한다.

⑦ 소방서장은 제4항에 따른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중 벌칙규정을 적용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및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보강수사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소방검사결과 조치

가. 소방법령 위반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별 표9 가호에 해당 되면 즉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동시 제1호 서식에 의한 시정보완명령서 발부. 기타 대상은 시정보완명령서 만 발부

1) 경미한 사항 : 20일 이내의 기간

2) 그 밖의 사항 :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60일 이내

나. 소방법령외의 사항 : 해당 관계기관에 그 위반내용을 통보, 이 경우 규정 개정 전에는 위반사항을 시정조치 하도록 통보하였으나 법적 근거 없이 타기관의 고유사무를 침해하는 규정이므로 금번 개정 시 삭제되었다.

다. 자체점검결과 소방법령 위반사항 : 점검결과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정명령서만 발부하고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2. 시정보완명령사항 이행여부 확인

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사항 : 시정명령이행기한의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5일 이내 (위험물규제업무 처리규정 제13조 제4항)

나. 기타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 : 보완기간 만료후 7일 이내

3.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는 소방관계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하여야 한다. 과태료가 부과 되기 전 이의 제기 기간 중 자진납부 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여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감경 할 수 있다.

4. 시정보완명령 미이행시 조치사항

- 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시 : 같은법 제48조의 2에 의한 의법조치
-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시 : 같은법 제26조 제1항에 의한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 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시 : 같은법 제36조 제15호에 의한 의법 조치

제 7 조 시정보완의 기간 연장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6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시정보완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명령이행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 소방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시정보완 명령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이행의 연장기간은 소방서장이 판단하여 정한다.

- 1. 경매 또는 양도·양수 등 소방대상물의 소유권 변동으로 시정보완명령기간 내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 2. 질병 또는 국외출장 등으로 관계인의 장기간 부재하여 시정보완명령기간 내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정보완명령기간 내 시정이 불가한 경우
- 4.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기간 내 이행할 수 없는 사유 또는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시정보완명령기간 내에 시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1.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사항의 경우 시정명령 연장사유

- 가. 천재지변

나. 관계인의 국외체류

다.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시정명령 연장기간

당해 사유가 지속되는 기간만큼 이행기간 연장

제 8 조 소방검사자의 지정 등

소방서장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소방검사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민 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예비인력 지정·관리 <삭 제 2010. 3. 30>

무자격자에 의한 소방검사는 하자있는 행정행위로 관계인이 소송제기 시 소방검사가 무효로 되거나 침해를 받은 부분이 있으면 손해배상의 원인이 될 수도 있으므로 다음 법정자격자를 소방검사자로 지정 하여야 한다.

1.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2.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
3.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4.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자
5.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기계·전기·가스과 관련된 자격을 취득한 자
6.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관련학과를 졸업한자
7.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소방학교의 장 또는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소방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직무전문교육과정 중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8. 제1호 내지 제7호 외의 자로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검사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자 <삭제 2009. 2. 6. 시행일 2012. 2. 7.>

제 9 조 소방검사자에 대한 교육 등

- ① 소방서장은 제8조 본문에 따라 근무 배치된 소방검사자에 대하여는 중앙·지방소방학교장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 ② 소방서장은 제8조에 따른 소방검사자에 대하여는 연간 16시간 이상(분기별 4시간 이상)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실무교육을 실시하거나 인터넷 사이버교육 또는 중앙·지방소방학교에 실무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 ③ 소방서장은 제8조에 따른 소방검사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의 소방검사자 명부를 작성하여 근무배치(지정)일·근무경력·전문교육 이수내역 또는 자체실무교육 이수내역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정보시스템등과 연계하여 별도 관리하는 경우에는 같음 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작성된 소방검사자 명부는 경력증명서 발급시 증명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소방서장은 경력증명서 발급시 증명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체 관리하여야 한다.
- ⑤ 중앙·지방소방학교장은 소방검사자 전문교육 수요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연간 교육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시·도 및 교육과정별로 전문교육이수자 현황을 작성하여 해당 시·도 소방본부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소방본부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소방검사자 전문교육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정보시스템등과 연계하여 별도 관리하는 경우에는 같음 할 수 있다.

소방검사 행위는 행정법상 즉시강제 및 행정지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소방법령 뿐만 아니라 건축·기계·전기·가스·안전관리 등 관련분야의 기초적인 소양을 요구하고 또한, 검사자의 윤리의식(공직윤리)·품위·예절·검사기술(skill)을 가지고 있어야 업무수행이 가능한 고도의 전문화된 영역이므로 소방서장은 소방검사자로 지정한 직원에게 수시로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마다 실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실무교육 방법

- 가. 중앙·지방소방학교장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받는 방법
- 나. 중앙·지방소방학교에 실무교육을 위탁하여 받는 방법
- 다. 소방서장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방법

예방실무

2. 실무교육 시간 : 연간 16시간 이상(분기별 4시간 이상)
3. 실무교육 이수자 관리 방법
 - 가. 별지 제4호 및 5호 서식에 기록 유지 및 관리
 - 나. 인사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별도관리

제3장 건축허가등의·소방시설의 적용 및 소방공사감리자 지정 등

제 10 조 건축허가 동의요구서의 처리

- 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동의를 처리함에 있어 관계서류의 보완 등이 필요한 때에는 건축허가청으로 하여금 보완하도록 통보하여야 하며, 민원당사자인 건축허가신청자에게 그 서류의 보완 등을 직접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소방관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청에 동의 관련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건축허가 등의 동의는 건축허가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미리 건축허가지 관할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게 동의를 구하는, 행정기관 상호간 내부행위 개념 이므로 소방관련 민원으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허가청 의 민원 당사자인 건축허가 신청인에게 서류보완 등을 직접 요구해서는 않된다.

또한, 소방관서에 건축허가 등의 동의를 받지 않은 건축허가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이지만 무조건 기 처분된 건축허가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행정청이 행한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동의를 받지 않았다 하여 이 법령에 의한 소방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므로 건축시공 중 또는 완공시 추가 설치되는 문제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건축허가청에게 있다.

제 11 조 건축허가 동의여부의 통보

- ① 소방서장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른 동의를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허가 동의(부동의)여부 통보서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며,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위험물의 사용여부 등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통보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설계변경·증축 등으로 인하여 소방시설의 변경·연면적의 변경 또는 건축구조의 변경 등 동의내용이 달라지는 경우 그 변경내용에 대한 재동의 요구
 2. 건축허가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내용
 3. 공장 등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위험물을 사용할 경우 그에 적합한 절차의 진행
 4. 허가 등 취소 시 그 취소 사유
- ③ 소방관서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부동산의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근거법령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④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동의여부를 회신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 건축허가청으로부터 접수한 날부터 2일 이내
 2. 2층 이하 또는 1천 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 건축허가청으로부터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
- ⑤ 소방관서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 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른 공동주택 단지내 각 세대로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 설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건축허가청으로 하여금 보완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건축허가등의 또는 부동산의 통보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야 하며, (부)동의기간과 서류보완기간은 다음과 같다.

1. 동의기간

- 가. 「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 건축허가청으로부터 접수한 날부터 2일 이내
- 나. 2층 이하 또는 1천 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 건축허가청으로부터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
- 다. 연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건축허가청으로부터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
- 라. 기타의 경우 : 건축허가청으로부터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

2. 서류보완기간 : 4일 이내(보완기간은 회신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12 조 설계변경 등에 따른 설계도서의 제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 또는 설계변경에 따라 재동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과 관련된 설계도서만 (소방시설이 새로이 추가로 설치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건축허가 등 동의시 구비서류

1. 동의요구서(전자문서로 된 요구서를 포함한다)
2.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신청서 및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 등 건축허가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이 경우 동의 요구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허가서를 확인함으로써 첨부서류의 제출에 갈음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목의 설계도서. 다만, 가목 및 다목의 설계도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 가. 건축물의 단면도 및 주단면 상세도(내장재료를 명시한 것에 한한다)
 - 나. 소방시설(기계·전기분야의 시설을 말한다)의 층별 평면도 및 층별 계통도 (시설별 계산서를 포함한다)
 - 다. 창호도
3. 소방시설 설치계획표
4. 소방시설설계업등록증과 소방시설을 설계한 기술인력자의 기술자격증

제 13 조 <삭 제, 2004. 10. 12>

제 14 조 증축 등의 경우 소방공사감리자 지정 등

① 증축·용도변경 및 대수선 등을 하고자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증축·용도변경 및 대수선 등을 하고자 하는 부분의 면적의 합을 기준하여 소방시설설계업의 영업범위 및 소방공사감리자 지정 대상 여부를 정한다. 다만, 변경되는 소방시설이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방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법정 소방시설 외에 자진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대신 설치하는 경우
3. 축사에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신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다. <삭 제, 2010. 3. 30>

1. 법정 소방시설 외에 자진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대신 설치하는 경우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공사에는 원칙적으로 소방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본 조항은 소방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 소방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에 규정된 사항 중 증축·용도변경·대수선 등에 의해서 변경되는 소방시설에 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경우와 법정 소방시설 외에 자진하여 설치하는 소방시설 및 축사에 해당되는 소방시설공사에서 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 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한 것이다.

제 14 조의 2 상주공사감리 지정 등(신설)

- 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 관련 [별표3] 대상 중 나 항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란 하나의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아파트를 말한다.
- ② 책임감리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의 업무대행자는 책임감리원과 동급 이상의 자격자로 감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기술사는 특급 자격의 업무대행자를 감리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관리주체"란 주택법 제2조 제14호에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1. 주택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2. 주택법 제43조제6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3. 주택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4.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제4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신설)

제 15 조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의 재발급

- 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가목 중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이란 실질적으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 ②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의 내부구조·시설의 변동 없이 단순히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이 있고 다중이용업소 영업주가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재발급 요청한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 10호 서식에 따라 안전시설 등 설치여부를 확인 후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다만,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재발급한 대상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본 조항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가목 중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을 좀더 구체화 한 내용이나, 여기서 “실질적으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에 대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문제된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업종별로 허가 또는 신고를 규율하는 관청에서 실시한 부분⁴⁾을 바닥면적으로 산정하면 무리가 없을 것이다.

4) “음악산업 진흥업무 매뉴얼”(2008. 4. 문화체육관광부) 21쪽

제 16 조 안전시설의 설치기준

- ① 다중이용업소에 설치 또는 교체하는 창문의 채광용 커튼류(브라인드 포함)에 대하여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면적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이 경우 채광용 커튼류(브라인드)라 함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의 물품을 말한다.
- ② 4층 이하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피난시에 유효한 발코니 규격은 건축물에 접하는 부분을 세로(150센티미터 이상)로 하고, 돌출된 부분을 가로(75센티미터 이상)로 한다.
- ③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내 설치하는 피난기구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당시의 국가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한 피난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④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안전시설 중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해당 영업장에 설치하여야 한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다중이용업소의 해당 영업장이란 실질적으로 영업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천정을 말하며, 국가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한 피난기구란?

1. 피난사다리
2. 완강기
3. 간이완강기
4. 구조대
5. 공기안전매트
6. 피난밧줄을 말한다.

피난상 유효한 발코니 규격은 발판 세로 1.5m, 발판 가로 0.75m, 난간 높이 1.0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5장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제1절 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

제 17 조 방화관리자 선임·해임 관리 등

① 소방서장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방화관리자의 선임신고 또는 해임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방화관리자 선임·해임 관리대장에,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방화관리자의 선임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8-1호서식의 공공기관 방화관리자 선임·해임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민원종합정보시스템에서 별도로 대장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방화관리자 실무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서장에게 방화관리자 선·해임 현황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선임된 방화관리자에 대하여 실무교육을 받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공공기관 포함)이 무인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여 운영(사람이 상주근무 하지 아니하고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된 곳에 한한다)되고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담당자 또는 담당부서가 있는 경우에는 1인의 방화관리자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신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령에 따라 방화관리자 선임·해임 관리는

1. 공공기관 방화관리자 선임·해임 관리
2. 기타 대상 방화관리자 선임·해임 관리

이러한 경우 공공기관을 제외한 기타 대상의 방화관리자를 선임하게 되면 관할 소방관서에 14일 이내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되어 그 처리 절차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하지만, 공공기관 방화관리자는 선임신고 의무가 없고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 선임일로부터 14일 이

내 공문서로 통보 받게 되므로 그 처리절차는 민원사무⁵⁾처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지 않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제2절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운용 등

제 18 조 공공기관의 세부적용 범위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세부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중앙행정기관(부속·소속기관 포함), 특별지방행정기관, 보통지방자치단체(부속·소속기관 포함), 특별자치단체, 단위기관(경찰지구대 및 치안센터, 119안전센터, 보건소, 우체국, 농촌지도소 등)
2. 국공립학교 : 전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기업. 다만 같은 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5.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 유치원(「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을 말한다)·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 나.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기획예산처 고시 제2007-28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부칙 제3조는 공공기관의 지정요

5)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민원사무”라 함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이하 “민원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건에 해당하고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기관 중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구분·지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공공기관 현황조사·주무장관과의 협의 및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07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

1. 다음 기관을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한다.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2. 다음 기관을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한다.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마사회,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산재의료관리원, 대한주택공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3. 다음 기관을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한다.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수출보험공사, 정보통신연구진흥원,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4. 다음 기관을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한다.

증권예탁결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과학문화재단, 한국과학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대한지적공사,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국제방송교류재단, 대한체육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농수산물유통공사, 축산물등급판정소, 한국농촌공사, 한국석유품질관리원, 광해방지사업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에너지관리공단, 요업기술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

협원, 한국산업기술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우정사업진흥회,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우편사업지원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파진흥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정보사회진흥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환경기술진흥원, 한국환경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노동교육원,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교통안전공단,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선박검사기술협회,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독립기념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청소년상담원, 한국청소년수련원, 한국소비자원,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한국소방검정공사.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1.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제 19 조 감독적 직위에 있는 자 등

①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감독적 직위에 있는 사람"이란 해당 공공기관의 사무분장에 따라 방화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부서의 장 또는 책임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직제에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또는 책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관장 또는 기관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 5 호 (삭 제)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방화관리자 선임통보 방법은 선임된 방화관리자의 성명·직위·소방관련 취득 자격 및 강습교육 수료여부를 해당 공공기관으로부터 공문서로 통보 또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신고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자격의 취득여부 및 강습교육 수료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2417호, 2010.10. 1. 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의 건축물·공작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방화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9>

제2조(적용범위) 이 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개정 2005.8.19, 2009.4.6>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국공립학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
5.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

제3조 삭제 <2009.4.6>

제4조(기관장의 책임)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개정 2009.4.6>

1. 소방시설·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소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소방관련 훈련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방화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제5조(방화관리자의 선임) ① 기관장은 방화관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감독적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방화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소화기 또는 비상경보설비만을 설치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10.1>

1.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 26조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강습교육으로서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업무를 위한 교육(이하 "강습교육"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
 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제1호 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② 기관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미리 강습교육을 받을 사람을 지정하고 그 지정된 사람을 방화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 ③ 공공기관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이 2개 이상의 구역(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을 말한다)에 분산되어 위치한 경우에는 각 구역별로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기관의 장이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 ④ 기관장은 방화관리자가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새로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4.6]

제6조(방화관리자의 선임 통보) 기관장은 제5조에 따라 방화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선임 사실과 선임된 방화관리자의 소속, 직위 및 성명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화관리자가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제5조제2항에 따라 미리 강습교육을 받을 사람을 지정하여 방화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된 방화관리자가 강습교육을 받은 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방화관리자의 책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방화관리자는 법 제20조제6항 각호의 방화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의2(방화관리자의 업무대행) 기관장은 법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소방시설관리업자"라 한다)에게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자는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업무를 감독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9.4.6]

제8조(방화관리자의 교육) 기관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방화관리자에 대하여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의 효율화, 새로운 기술의 보급과 안전의식의 향상을 위한 실무교육(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교육을 말한다)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8.19>

제9조(화기단속 등) 실(室)이 벽·칸막이 등에 의하여 구획된 경우 그 사용책임자는 당해 실 안의 화기단속 및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공공기관의 방호원 등의 업무) ① 방호원(공공기관의 건축물·공작물 및 물품 등을 화재·외부의 침입 또는 도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되, 군인·경찰 및 교도관을 제외한다)·일직근무자 및 숙직자(일직근무자 및 숙직자를 두는 경우에 한한다)는 옥외·공중집합장소 및 공중사용시설에 대하여 화기단속과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숙직자는 근무 중 화재예방을 위하여 방호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1조(기관장의 소방 활동) 기관장은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경보를 울리거나 대피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자위소방대의 편성) ① 기관장은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고 인명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위소방대를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자위소방대는 대장·부대장 각 1인과 당해 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인원으로 구성하되, 자위소방대에는 지휘반·진압반·구조구급반 및 대피유도반을 둔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반은 당해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수를 고려하여 적절히 구성한다.

제13조(자위소방대의 임무) 자위소방대의 대장·부대장과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장은 자위소방대를 총괄·지휘·운용한다.
2.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임무를 대행한다.
3. 지휘반은 대장의 지휘를 받아 다른 반의 임무를 조정하고, 화재진압 등에
4. 진압반은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화재를 진압한다.
5. 구조구급반은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인명구조 및 부상자 응급처치를 수행한다.
6. 대피유도반은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근무자 등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도록 유도한다.

제14조(소방훈련 및 교육) ① 기관장은 당해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10명 이하이거나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0.1>

② 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소화·화재통보·피난 등의 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소방점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건축물의 사용승인일(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연 1회 이상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로부터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종합정밀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방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개정 2005.8.19, 2007.12.13, 2009.4.6>

1.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의 규정에 의하여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 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공공기관
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의 규정에 의하여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

지설비가 설치된 공공기관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중 제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인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종합정밀 점검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7.12.13>
-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의 종합정밀점검 기한을 정함에 있어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 이상의 점검 대상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중 사용승인일이 가장 빠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07.12.13>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한국소방안전협회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종합정밀점검표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19, 2007.12.13>
- ⑤ 기관장은 당해 공공기관의 전기시설물에 대하여는 「전기사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전검사, 동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및 동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을, 가스시설에 대하여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의2·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9조·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8.19, 2007.9.10, 2007.12.13>
- ⑥ 기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한국소방안전협회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때에는 한국소방안전협회장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가 발행한 점검결과보고서 사본을 30일 이내에 관할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19, 2007.12.13, 2010.10.1>
- ⑦ 기관장은 자체소방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월 1회 이상 소방점검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 20 조 및 제 21 조 <삭 제, 2007.8.22>

제6장 소방시설업의 등록 등

제1절 소방시설업의 등록 등에 대한 공통규정

제 22 조 방화관리자 선임·해임 관리 등

① 방염처리업, 소방시설관리업,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업 및 소방공사감리업(이하 "소방관련업"이라 한다)의 등록신청서는 업종별로 구분하여 접수한다. 이 경우 업종별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방염처리업
2. 소방시설관리업
3. 전문소방시설설계업
4. 일반소방시설설계업 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
5. 전문소방시설공사업
6. 일반소방시설공사업 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
7. 전문소방공사감리업
8. 일반소방공사감리업 기계분야, 전기분야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의 등록신청 시 1인이 2 이상의 업종을 겸업하여 신청하는 경우 각각의 업종별로 구분하여 신청서를 접수하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종을 겸업하여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와 제4호, 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겸하여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1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중 중복되는 서류는 하나의 신청서에만 첨부하게 할 수 있다.

제 23 조 등록신청에 대한 심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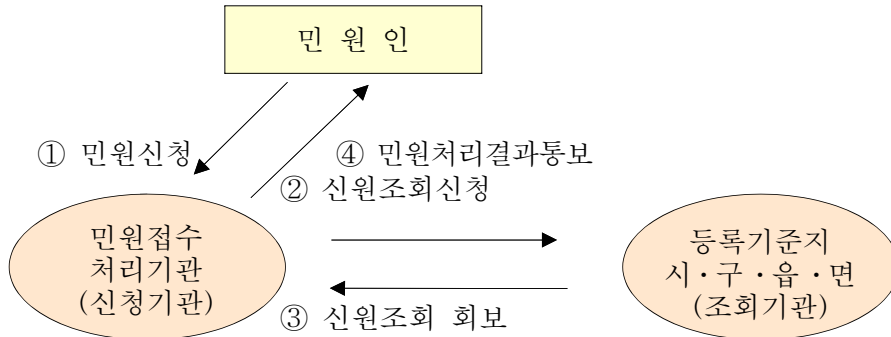
① 제22조에 따라 등록을 접수받은 소방관서장은 소방관계법령(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령·소방시설공사업법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정하는 각 업종별로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심사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신청 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방관서장은 소방관련업의 등록심사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국소방안전협회 또는 소방과 관련된 단체 등에 등록업무 중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 24 조 서면심사

- ① 제23조제1항에 따른 서면심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 1. 신청인에 대한 심사
 - 가. 개인의 경우 :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하였는지 여부
 - 나.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대표이사로 신청하였는지 여부
 - 2. 기술인력에 대한 심사
 - 가. 신청된 업종별 기술인력 적합한지 여부
 - 나. 타 업종과의 기술인력 중복 선임 여부
 - 3. 자본금에 대한 심사 및 자본금 확인서 발행 확인(소방시설공사업에 한한다)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심사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30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원조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 1. 대상
 - 가. 개인이 소방관련업을 신청한 경우 : 신청인(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때에는 모든 신청인)
 - 나. 법인이 소방관련업을 신청한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대표자
 - 2. 방법
 - 가.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출장소장을 포함한다)으로 FAX, 행정전산망, 우편 등 민원처리기간의 단축을 위한 적절한 수단에 의한 신원조회
 - 나. 신원조회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42호, 2009. 07. 01)의 규정을 준용.

신원조회 절차



※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신원조회업무처리지침에서는 FAX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제 25 조 현장조사

제23조에 따른 현장조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1. 방염처리업 :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 시험실 전용면적이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소방시설관리업·소방시설공사업·소방공사감리업 : 각 업종별 장비가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010년 10월 18일 개정(시행 2010. 10. 24)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은 공사업 및 감리업에 대한 장비기준이 삭제되었다.

제 26 조 등록사항변경신고 등의 처리절차

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변경이 있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명칭·상호 또는 영업소소재지 또는 대표자의 변경
 - 가. 개인의 경우 실제 변경이 있는 날로서 입증자료(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변경사실이 확인가능한 날
 - 나.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의 등재일

2. 기술인력의 변경 : 기술인력의 실제변경이 있는 날로서 입증자료(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등)에 의하여 변경사실이 확인 가능한 날
- ② 제1항에 따른 변경구분 중 등록권자를 달리하는 지역으로 영업소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처리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부적합하거나 종전의 등록사항 중 불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민원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의 회신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
1. 변경신고서는 영업소소재지를 이전하고자 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접수한다.
 2. 변경신고를 접수한 시·도지사는 변경 전 영업소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다음 각목의 서류에 대하여 이첩을 요구하여야 한다.
 - 가. 소방관련업 등록대장 원본(변경전 시·도지사는 사본보관)
 - 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3. 변경신고를 접수한 시·도지사는 관련서류 및 등록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소방관련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이 교부하여야 하며, 이첩 받은 등록대장의 기재사항 변경란에 변경내용과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재교부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4. 제3호에 따라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이 발급한 경우에는 새로이 발급하는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사본을 종전의 시·도지사에게 송부한다.

제 26 조의 1 소방관련업의 지위승계 범위

소방관련업의 지위승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1. 소방관련업자인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 합병되어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소방관련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2. 개인이 경영하던 소방관련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소방관련업을 양도하는 경우(소방관련업의 등록을 한 개인이 해당 법인의 대표자가 되는 경우에 한한다)
3. 소방관련업자인 법인을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에서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소방관련업을 양도하는 경우
4. 소방관련업자인 법인간에 합병을 하거나 소방관련업자인 법인과 소방관련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5. 개인 또는 법인이 경영하던 소방관련업을 매개로 양도하는 경우

제 27 조 기술능력의 겸직허용

- ① 소방관계법령에 의한 소방관련업과 타 법령에서 정하는 업종에 두는 기술인력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과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각 업종별로 각각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소방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업종의 등록기준 중 소방관계법령에 의한 업종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을 겸업하는 때의 기술능력의 겸임·겸직의 허용여부는 각각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에 따른 소방관련업의 보조기술인력으로 등록한 자는 기술인력을 겸임·겸직할 수 없다.

제 28 조 기술인력의 관리

- ① 소방관서장은 소방관계법령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의 이중취업방지와 해당 기술인력의 경력관리를 위하여 소방관련업 현황 및 기술인력 등 경력관리를 위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3조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련법인 또는 단체가 기술인력의 경력관리를 하고자 할 때는 소방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업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으로 소속된 해당 업체의 상시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2010년 7월 23일 개정(시행 2010. 10. 24.)된 소방시설공사업에서는 소방기술자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시간외에 소방시설업이 아닌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업무를 소방시설업자협회에 위탁되었다.

제 29 조 등록대장의 관리 등

소방관련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한 때와 등록사항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각각의 업종별 등록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 30 조 기술자격증의 기재요령 등

- 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술자격증(자격수첩)"이란 국가기술자격증 및 소방기술인정 자격수첩을 말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자격증(자격수첩)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각 해당란에 기재한다.
 - 1. 연월일 : 선임 또는 해임 등 변경이 있는 날
 - 2. 변동내용 : 소방관련업(회사명칭), 각 업종별 분야(기계 또는 전기분야), 주된 기술인력 또는 보조기술인력의 선임 또는 해임
 - 3. 확인란 : 등록발급기관명, 기재연월일, 담당자 서명
- ③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의 변경사항을 기술자격증에 기재하는 때에도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 소방시설공사업

제 31 조 소방시설의 착공신고 등

- ① 착공신고는 해당 소방시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소방시설용 전선관을 포함한 소방시설용 배관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시기를 말한다)에 하여야 하며, 소방시설공사착공신고서를 접수한 소방관서장은 시설명, 설치계획, 설계도서(시방서를 포함한다)등이 관련법령 및 화재안전기준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부적합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설계도면 등을 시정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② 동일 부지 안에 여러 동의 건축물로 구성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검사는 전체 건축물의 소방시설 설치공사(1건으로 착공신고 된 각 건축물의 소방시설 설치공사)가 완료된 때에 실시한다. 다만, 건축물부분별로 연동되는 소방

시설이 없거나 임시 또는 부분사용을 받고자 하는 부분의 소방시설등이 소방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건축물 부분에 대한 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 임시 또는 부분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

③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관련 [별표1] 2. 소방시설공사업 "비고" 6호의 "개설"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소방시설 착공신고를 하여야 한다.(신설)

1. 소방기계 분야의 전면적인 배관 교체
2. 소방전기 분야의 전면적인 배선(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중 비상전원·동력회로·제어회로·기계분야 소방시설을 작동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재감지기에 의한 화재감지장치 및 전기신호에 의한 소방시설의 작동장치를 포함) 교체
3. 스프링클러설비 유수검지장치의 작동방식 변경에 따른 교체

제3절 지도 및 감독

제 32 조 소방관련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① 소방관서장은 관할구역내의 소방관련업에 대한 등록기준의 준수여부 등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연간 지도·감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관련업체의 지도·감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등록기준 미달여부
2. 등록증 대여행위
3. 등록의 결격사유 해당여부
4. 등록사항 변경여부
5. 기술인력의 이중취업 여부
6. 그 밖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여부

③ 소방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국소방안전협회 또는 소방과 관련된 단체를 참여시킬 수 있다

제 33 조 행정처분의 적용 등

- 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중 "경고"란 위반행위의 내용과 이후 시정하여야 할 사항, 동일한 위반행위의 재발생시 처분할 내용 등을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 ② 행정처분 중 등록의 취소 등으로 청문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청문의 절차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소방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해당 여부·과태료 부과 대상 여부와 별칙규정의 적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병과 하여야 한다.
- ④ 소방관련업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등록대장의 행정처분 사항란에 별칙·과태료·행정처분 등으로 구분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 34 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① 시·도지사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0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예고서에 그 위반행위의 중벌과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대상의 소방관련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 징수절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징금 납부통지서, 과징금 납부영수증, 과징금 영수필통지서 및 과징금 납부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2.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통지하는 때에는 과징금 납부통지서, 과징금 납부영수증, 과징금 영수필통지서 및 과징금 납부서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가 과징금 처분대상자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예고서에 따른다.
 4. 시·도지사가 과징금처분을 한 때에는 그 과징금 부과 및 수납사항을 별지 제12호서식의 과징금 수납기록부에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5. 그 밖의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 35 조 과태료 징수절차 등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령」에 따른다.

제7장 법령운용 및 민원업무처리에 관한 공통규정

제 36 조 훈령의 운용

- ① 이 규정은 소방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 중 일선소방관서의 실무처리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기관내부의 규정으로서 민원인에게 이 규정을 근거로 법령에 없는 새로운 규제를 가할 수 없다.
- ② 소방관계법령 또는 다른 법령의 개정 등으로 관련 규정이 법령에 위반하거나 법령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때에는 해당 규정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제 37 조 법령의 질의

- ① 소방관서장이 소방관계법령에 관한 질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검토서를 첨부하여 질의하여야 한다.
 1. 민원업무처리와 관련된 사안에 관하여는 민원업무처리에 관한 관련법령(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기타 지방자치단체별 민원사무관련 자치법규 등)·내부지침 등을 충분히 검토한 검토의견서
 2. 법령 조문규정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와 검토의견서
 3. 그 밖의 법령질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유 또는 검토의견서
- ② 소방시설 적용에 관한 특례 등 소방관계법령에서 정하는 특례규정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용도·수용인원 및 취급물품 등 제반 여건에 적합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판단기준을 정하여 심의회 등의 운영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특례규정의 해당여부를 중앙부처에 질의할 수 없다. 다만, 전문적·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질의할 수 있다.

부 칙 (2004. 10. 1)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중전 규정의 적용에 관한 규정)이 규정 시행당시 중전의 예방소방업무 처리지침에 의하여 행하여진 업무는 본 규정에 의하여 적합하게 업무가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6. 12. 2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8. 2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3. 3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예방소방행정통계조사 항목 및 기준 (제4조 제1항 관련)

1. 특정소방대상물분야

1-1/2 특정소방대상물 현황(단지별/동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2 제1호 내지 제23호별 현황으로서 건축물의棟數와 상관없이 순수한 건축물의 용도에 의하여 구분한 특정소방대상물로 분류한 현황을 말한다.

1-3 대상별(업종별) 현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2의 특정소방대상물별로 구분되어지는 업종 또는 용도별로 세부현황을 말한다. (예시 : 노래연습장, 비디오방, 유흥주점, 단란주점, 오피스텔, 학원 등)

1-4 연면적별 현황

- 600㎡미만
- 600㎡이상 1,500㎡미만
- 1,500㎡이상 3,000㎡미만
- 3,000㎡이상 5,000㎡미만
- 5,000㎡이상 10,000㎡미만
- 10,000㎡이상 15,000㎡미만
- 15,000㎡이상 30,000㎡미만
- 30,000㎡이상 50,000㎡미만
- 50,000㎡이상

2. 소방검사 분야

2-1 소방검사대상 특정소방대상물 현황

제1호 1-1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소방검사를 실시한 대상물 현황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각각 구분하여 조사하되 현황은 단지/동수로 작성한다.

- 연 1회 검사한 대상
- 2연 1회 검사한 대상
- 경방조사를 실시한 대상
- 소방검사를 면제한 대상

2-2 연간 소방검사 실적(시·도를 기준으로 작성)

- 특정소방대상물별 소방검사 실시실적

2-3 대형화재취약대상 소방검사 실시실적

예방실무

2-4 예방검사요원 자격별 현황

3. 개수명령 처분사항

개수명령의 종류별로 처분한 특정소방대상물 현황

4. 손실보상

5. 건축허가 동의 및 사용승인 분야

시·도별 건축허가 동의 현황, 사용승인 완공필증 교부현황

6. 소방시설등 완비증명 발급현황(시·도별)

7. 특정소방대상물별 소방훈련 실시현황(시·도별)

8. 특정소방대상물별 소방교육 실시현황(시·도별)

9. 방화관리분야

9-1 특정소방대상물별 1급 방화관리대상물 현황

9-2 특정소방대상물별 2급 방화관리대상물 현황

9-3 방화관리자 자격별 선임현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3조 제1항 및 제2항 각호별로 자격을 구분하여 조사

9-4 공동방화관리자 선임대상 현황

9-5 공공기관 방화관리자 선임대상 현황

9-6 방화관리업무 대행현황(특정소방대상물별 현황)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천㎡ 이상 특정소방대상물과 기타 대상으로 구분하여 조사

10. 특정소방대상물의 방염

11.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11-1 소방시설적용 특례대상

12. 소방시설 자체점검 대상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중 종합정밀 점검을 받아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현황과 기타임의대상(의무위탁대상이 아닌 대상으로서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이 선택하여 실시하는 대상)으로 구분하여 조사

13. 위험물제조소등 분야

13-1 위험물제조소등 현황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별표 2 저장소의 구분란의 기준에 따라 조사

13-2 위험물탱크 용량별·연수별 현황

13-3 위험물제조소등 허가현황

13-4 위험물안전관리자 현황

13-5 자체소방대의 설치대상 및 보유차종

위험물제조소등별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소방대 편성 현황 조사(보유소방차·대원수 포함)

13-6 석유화학단지 현황

13-7 예방규정 제출대상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방규정 제출대상 제조소등별 현황

14. 소방관련업등 현황

14-1~6 소방시설공사업·소방시설관리업·소방시설설계업·소방공사감리업·방염처리업의 등록현황

14-7 보유기술인력의 자격종별 고용현황

국가기술자격별(자격종별·등급별), 소방기술인정자격(학력·경력별)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인력 현황조사

14-8 착공신고 및 완공필증 교부현황

15. 화재경계지구

15-1 화재경계지구 현황(소방시설, 건축·위험물시설)

16. 청문회 개최 현황

17. 소방관련업 행정처분 현황

18. 소방관계법령위반 사법처리 현황

19. 과태료 부과현황

20. 과징금 부과현황

21. 주거용비닐하우스 등 현황

22. 가설건축물 현황

23. 터널현황

[별표 2]

소방검사서 작성 및 처리요령(제5조 제4항 관련)

1. 일련번호 : 좌측부터 소방서별 고유번호(본부에서 지정), 검사년도, 보고서일련번호 기재
2. 관리구분 : 좌측부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정 소방대상물의 구분번호(01-23), 소방검사 시작년도(건축준공년도), 방화관리등록번호(1급 "A, 2급"B", 기타 "C"), 취약도 구분표시(대형화재취약대상 "가", 취약대상 "나", 일반대상 "다"), 위험물제조소등 구분표시(위험물 제조소등인 경우 "Y", 미대상 "N")
3. 점검결과
 - 가. 위반사항 : 위반조문을 명확하게 기재하되, 소방관계법령의 경우 법·영·규칙 등의 순서로 기재한다.
 - 나. 기타 위반사항 : 건축·전기·가스등 관련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관련법령의 제명 및 해당조문을 기재 또는 화재예방상 필요한 조치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4. 조치할 내용 : 각 위반사항에 따라 행정처분(시정보완명령, 현지시정 또는 사용금지 등 기타 처분)내용을 각각 구분하여 기재하고, 위반사항이 소방관계법에 의한 행정벌(행정형벌 또는 과태료) 또는 조례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해당되는 때에는 적용조문을 기재하고 그 처벌 내용을 병기한다.
5. 관계자료 : 소방검사세부검사표, 정비관련서류, 위반행위 또는 위반 사실에 대한 자인서 등 필요한 입증자료(서류·사진·도면)등으로 구분하여 자료명칭과 첨부 부수를 기재한다.
6. 관계인 : 소방검사서 입회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을 원칙으로 하나, 검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제3자의 경우에도 가능하며 확인 서명은 본인 자필로 한다.
7. 소방검사서 인쇄요령 : 소방검사서는 작성시 자동인쇄 방법 또는 먹지 등을 이용하여 2부를 작성하되, 부분은 해당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교부한다.
8. 소방검사서의 결재구분 :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으로 입건·과태료처분에 해당되는 경우 서장 결재, 시정보완명령 등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경우 과장, 기타 이상이 없는 경우 담당(계장) 또는 파출소장이 각각 전결 처리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

시정보완명령서

○○ 소방서

수신자

(경 유)

제 목 시정보완명령서

1. 귀하께서 관리(소유)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소방검사 결과(200 년 월 일) 지적 사항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시정보완명령하오니 200 년 월 일까지 시정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2. 시정보완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 48조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됨을 알려드리며,
3. 아울러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가 질병·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시정보완기간내에 명령을 이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 상 명	소방시설등의 종 류	시정보완 사항	보완기간	관련법령의 규 정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 소방서장

[별지 제2-1호 서식]

“과태료전용서식(내부보고용)”

앞면 (2면), 뒷면(복사지)

소방관련법령 위반사실 보고서(과태료)					
일련 NO. 200 - 000					
자진납부기간	200 년 월 일		금 액	일 금 (만원)	
적용법조	<input type="checkbox"/> 소방기본법 <input type="checkbox"/>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예관한법 <input type="checkbox"/> 소방시설용사업법 <input type="checkbox"/>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 조 항	위반내용 (구체적)	
위반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직업	
	주 소			전 화	
	상호 (명칭)			업 종 (업종명)	
	소재지			전 화	
위반행위	장소	위반일시		200 년 월 일 시 분	
	* 증명자료 :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 직위 성 명 : (서명 또는 인)					
위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제4항에 따라 보고합니다.					
보고자 : 계급 성 명 : (서명 또는 인)					
과태료부과	귀하께서는 위와 같이 소방관련법령 및 규정을 위반하였기에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사전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10일 이내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해당 소방관서 담당자에게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기일까지 의견이 없을 때에는 위반사실을 인정 한 것으로 간주하고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자진납부안내		
			• 단속일로부터 10일 이내 아래 납부고지서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자의 주소,정명,납부금액,위반일시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시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소방서주소:○○ ○○ 소방서 ○○과 • 연락처 ☎ ○○○-○○○○		
200 년 월 일					
○○○ 시 · 도 ○ ○ 소방서장 귀하					

※ 기록란은 뒤쪽 2장이 동시에 기록되도록 제작(복사지)

- 용지색상:연청색, 선색:진청색, 바탕그림과 마크,글자색은 소방이미지 + 사도 자체

182mm×257mm 보존용지(2종)54g/㎡

예방실무

※ 작성요령

- 위반업소란중 사업자등록년월일은 법인설립일·사업자등록일·위험물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연월일을 기재
- 위반업소란중 업종란은 관련법령에 의하여 허가·등록·신고 된 영업의 종류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2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 기재
 - 예시 : 노래연습장영업(근린생활시설)

[별지 제3호 서식]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자인(확인)서

주 소 : (전화)
업소명 : (전화)
성 명 : (나이) 만 세
생년월일 :

[위반내용]

년 월 일

위 자인(확인)자 : 직급 성명 (인 또는 서명)

○○ 소방서장 귀하

[별지 제3-1호 서식]

“과태료전용서식(자인확보용)

앞면 (1면), 뒷면(복사지)

소 방 관 련 법 령 위 반 사 실 확 인 서 (과태료)					
일련 NO. 200 - 000					
자진납부기간	200 년 월 일	금 액	일 금 (만원)		
적 용 법 조	<input type="checkbox"/> 소방기본법 <input type="checkbox"/> 소방시설철차유지및안전관리 에관한법 <input type="checkbox"/> 소방시설공사법 <input type="checkbox"/>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 한특별법	제 조 제 항	위반내용 (구체적)		
산 출 근 거	<input type="checkbox"/> 소방기본법시행령[별표3] <input type="checkbox"/> 소방시설철차유지및안전관리 에관한법시행령[별표9] <input type="checkbox"/> 소방시설공사법시행령[별표5] <input type="checkbox"/>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 한특별법시행령[별표3]	가과 (1)~(3)			
위 반 대 상 자	성 명	생년월일	직 업		
	주 소			전 화	
	상 호 (명 칭)			업 중 (허가연월일)	
	소재지			전 화	
위 반 행 위	장 소	위반일시	200 년 월 일 시 분		
	※ 증명자료 :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 직위 성 명 : (서명 또는 인)					
과 태 료 부 과	처 분 예 고 서	귀하께서는 위와 같이 소방관련법령 및 규정을 위반 하였기에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사전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10일 이내 구술 또는 서면 으로 해당 소방관서 담당자에게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기일까지 의견이 없을 때에 는 위반사실을 인정할 것으로 간주하고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자진납부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속일로부터 10일 이내 아래 납부고지서를 이용하여 납부 할 수 있습니다 • 납부자의 주소, 성명, 납부금액, 위반일시를 본인이 직접 기재 하시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소방서주소: 000 00 소방서 00과 • 연락처 ☎ 000-0000 	
200 년 월 일					
000 시 · 도 00 소방서장 귀하					

※ 기록란은 뒷장2장이 동시에 기록되도록 제작(복사지)

- 용지색상: 청색, 선색: 진청색, 바탕그림과 마크, 글자색은 소방이미지 + 시도 자체

182mm×257mm 보존용지(2종)54g/㎡

예 방 실 무

[별지 제3-2호 서식]

② (대상자 발부용)

①
뒷면 (3면)

소방기본법시행령[별표3]			위반행위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 관한특별법시행령[별표3]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금액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금액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금액
가. 소방수시실소화기구 및 설비 등의 설치명령을 위반한 자	법 제133조제3항	1차 50 2차 100 3차 150 4차 200	아. 법 제20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방화관리자	법 제333조 제4항제6호	200	1. 법 제333조제4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종업원에 대하여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다중이용업주	법 제333조 제4항제6호	50 100 200
나.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 (1) 위반행위로 말미암아 화재가 발생한 경우 (2) 위반행위로 말미암아 화재가 발생한 경우 외의 경우	법 제153조제1항	200 1차 50 2차 100 3차 150 4차 200	차. 법 제223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출력 및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1) 1차 위반시 (2) 2차 위반시 (3) 3차 위반시	법 제333조 제4항제7호	50 100 200	2. 법 제333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시설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지 아니한 자	법 제333조 제4항제7호	50 100 200
다. 특수기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을 위반한 자	법 제153조제2항	1차 30 2차 50 3차 100	카. 법 제24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 등의 방화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333조 제4항제8호	200	3. 법 제333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시설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지 아니한 자	법 제333조 제4항제8호	50 100
라.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허위로 알린 자	법 제193조	300	타. 법 제25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화시설 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자 (1)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거짓으로 보고한 자	법 제333조 제4항제10호	100 200	4. 법 제333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시설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지 아니한 자	법 제333조 제4항제10호	50 100
마. 소방활동구역 출입제한을 위반한 자	법 제233조제1항	100	파. 법 제33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휘소계, 행정차분 또는 유압·케이블의 사용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관리업자	법 제333조 제4항제11호	200	5. 법 제333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시설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지 아니한 자	법 제333조 제4항제11호	50 100
바. 구조·구급의 지원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법 제333조제1항	1차 50 2차 100 3차 150 4차 200	하. 법 제333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자의 관여 없이 자체 점검(소방시설 등의 점검)작업 여부만을 점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실시한 관리업자	법 제333조 제4항제12호	200	6. 법 제333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시설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지 아니한 자	법 제333조 제4항제12호	50 100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시행령[별표9]			소방시설공사사업법시행령[별표 5]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 관한특별법시행령[별표3]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금액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금액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금액
가. 법 제333조제4항 또는 제333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1) 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을 2회이상 위반한 경우 (2) 소방시설등을 다음에 해당하는 고장상태 등으로 방치한 경우 (가) 소화압력등을 고장상태로 방치한 경우 (나) 수인전의 전원을 차단한 상태로 방치한 경우 (다) 동맥(감시)제어반을 고장상태로 방치하거나 전원을 차단한 경우 (라)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한 경우 (마) 소화배관의 밸브를 잠금상태로 방치하여 소방시설이 작동하는 경우 소화수의 방수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한 상태로 방치한 경우 (바) 소방시설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33조 제4항제1호	50 100	가. 법 제333조 제4항제3호, 제333조제4항 및 제2항 전단, 제17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1) 1차 위반시 (2) 2차 위반시 (3) 3차 위반시	법 제333조 제4항제3호	50 100 200	3. 법 제333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시설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지 아니한 자	법 제333조 제4항제3호	50 100
나. 법 제333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계인에게 지휘소계, 행정차분 또는 유압·케이블의 사용을 알리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알린 자 (1) 1차 위반시 (2) 2차 위반시 (3) 3차 위반시	법 제333조 제4항제10호	50 100 200	나. 법 제333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리자에게 지휘소계, 행정차분 또는 유압·케이블의 사용을 알리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알린 자 (1) 1차 위반시 (2) 2차 위반시 (3) 3차 위반시	법 제333조 제4항제10호	50 100 200	4. 법 제333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시설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지 아니한 자	법 제333조 제4항제10호	50 100
다. 법 제333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계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법 제333조 제4항제3호	200	다. 법 제333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리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법 제333조 제4항제3호	200	5. 법 제333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시설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지 아니한 자	법 제333조 제4항제5호	50 100 200
라. 법 제333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자	법 제333조 제4항제4호	200	라. 법 제333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자	법 제333조 제4항제4호	200	6. 법 제333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시설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지 아니한 자	법 제333조 제4항제6호	50
마. 법 제333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법 제333조 제4항제5호	200	마. 법 제333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법 제333조 제4항제5호	200	7. 법 제333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시설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지 아니한 자	법 제333조 제4항제7호	200
바. 법 제333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3일 이내에 보수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관계인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알린 자	법 제333조 제4항제6호	200	바. 법 제333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3일 이내에 보수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관계인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알린 자	법 제333조 제4항제6호	200	8. 법 제333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시설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지 아니한 자	법 제333조 제4항제8호	200
가. 법 제333조제4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1) 1차 위반시 (2) 2차 위반시 (3) 3차 위반시	법 제333조 제4항제2호	50 100 200	가. 법 제333조제4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알린 자	법 제333조 제4항제2호	50 100 200	9. 법 제333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시설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지 아니한 자	법 제333조 제4항제9호	200
다. 법 제333조제4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1) 1차 위반시 (2) 2차 위반시 (3) 3차 위반시	법 제333조 제4항제2호	30 50 100	차. 법 제333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알린 자 (1) 1차 위반시 (2) 2차 위반시 (3) 3차 위반시	법 제333조 제4항제2호	50 100 200	10. 법 제333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시설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지 아니한 자	법 제333조 제4항제10호	200
라. 법 제333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법 제333조 제4항제3호	200	차. 법 제333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알린 자 (1) 1차 위반시 (2) 2차 위반시 (3) 3차 위반시	법 제333조 제4항제3호	50 100 200	11. 법 제333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시설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지 아니한 자	법 제333조 제4항제11호	200
마. 법 제333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333조 제4항제3호	200	카. 법 제3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결과서의 통보 또는 공사감리결과보고서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한 자	법 제333조 제4항제3호	50 100 200	12. 법 제333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시설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지 아니한 자	법 제333조 제4항제12호	200
사. 법 제333조제4항제3호 또는 제3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1)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거짓으로 신고한 자	법 제333조 제4항제3호	100 200	카. 법 제3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 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한 자 (1) 1차 위반시 (2) 2차 위반시 (3) 3차 위반시	법 제333조 제4항제3호	50 100 200	13. 법 제333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시설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지 아니한 자	법 제333조 제4항제13호	200
아. 법 제333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 및 감리를 함께 수행한 자	법 제333조 제4항제4호	200	타. 법 제3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인급 변경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1) 1차 위반시 (2) 2차 위반시 (3) 3차 위반시	법 제333조 제4항제4호	50 100 200	14. 법 제333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시설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지 아니한 자	법 제333조 제4항제14호	200

※ 소방관련법령 제개정으로 변경시 과태료부과기준에 맞게 정정하여 사용.

- 색상, 선색, 글자색,바탕그림과 마크는 소방이미지+시도 자체

[별지 제4호 서식]

예방검사요원 명부

연번	성명	계급	근무경력	자격구분 (취득자격증)	전문교육 등 이수내역	근무배치일	비고

예방실무

[별지 제5호서식]

소방검사자전문교육 관리대장

성 명	소 속	계 급	교육기간	비고

예방실무

[별지 제7호서식]

(제 회)

특정소방대상물 교육관리대장

교육일시 :

장 소 :

교육강사 :

대 상 자 :

참석인원 :

교육내용(요약)

년 월 일

○○ 소방서장

[별지 제9호 서식]

등록신청 심사 결과서										
신청인					상 호					
영업소재지					신청업종					
사업자인격	<input type="checkbox"/> 법인 <input type="checkbox"/> 개인				전화번호					
결격사유	조회대상		조회기관		의뢰기관			결 과		
	직위	성 명	직위	성 명	조회일자		담당자			
등록 기준	기술 인력	구분	기 준		확 보					
			자격종별 · 등급	인원	자격종별 · 등급	인원	자 격 증 유 효 여 부	대 여 여 부	2중취업 여 부	
		주 된 기 술 인력								
	보조인력									
	시설 기준	방염시설/시험기기			장비보유수					
		시설 (기준/보유)	시험기기 (기준/보유)	적합 여부	종별 (기준/보유)	개수 (기준/보유)	적합여부	비고		
자본금	기준액 : 원, 보유액 : 원									
심사의견										
위와 같이 <input type="checkbox"/> 방염처리업, <input type="checkbox"/> 소방시설관리업, <input type="checkbox"/> 소방시설공사업, <input type="checkbox"/> 소방시설설계업, <input type="checkbox"/>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신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한국소방안전협회나 소방관련 단체가 현장조사를 대행한 경우 결과복명서를 첨부하고 심사자란에 소방공무원과 함께 소속, 직위, 성명을 기재

(을 지)

예고 제 호 <h2 style="margin: 0;">과징금 부과처분 사전예고서</h2>				
문서번호 : _____ 시행 연월일 : _____ . _____ . _____ 수 신 : _____ 제 목 : 과징금 부과처분 예고서 아래와 같이 ○○법 제○○조제○○항 위반으로 인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 사전예고서를 송부하고자 합니다. (송부하였습니다)				
과징금처분 대 상 자	상 호 (명 칭)		업 종 (등록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소 재 지	(전화 : _____)		
특정소방 대 상 물	대 상 명		관 계 인	
	소 재 지	(전화 : _____)		
과징금부과를 할 수 있는 위 반 행 위	관련법규		위 반 연월일	
	위반행위 내 용		행정처분 내 용	영업정지()월
과 징 금	적용법규			
	금 액			
년 월 일				
결 재				
담 당 자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70g/㎡

(5면)

<p>과징금 납부서 제 호 (수납기관보관용)</p>			
위 반 사 항			
납 부 의 무 자	성 명		
	주 소		
과징금금액			
납 부 장 소		○○금고, 은행, 농협, 우체국	
납부통지일자		납부기한	
<p>위의 금액을 수납함.</p> <p style="margin-left: 200px;">년 월 일</p> <p style="margin-left: 200px;">수납기관 (인)</p>			

※ 위 납부서는 과징금을 수납한 기관에서 보관 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2호 서식]

과 정 금 수 납 기 록 부

※ 과징금납부통지서 발부 및 영수필통지서 접수 시 기록정리

① 일련 번호	② 통지서 번호	③ 지 연월일	④납부기한	⑥ 징 수 결 정 액	⑧미수 납액	납 부 의 무 자		⑪위반 사항
			⑤ 납 부 연 월 일	⑦수 납 액		⑨주 소	⑩성 명	

(3면)

제 호 과태료영수필통지서① (처분정보관용)			
위 반 사 항			
납 부 의무자	성명		
	주소		
과 태 료 금액			
납 부 장 소		○○금고, 은행, 농협, 우체국	
납부통지일자		납부기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귀하 시·도지사			

※ 위 과태료영수필통지서 ①은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행정청으로 송부바랍니다.

(4면)

제 호 과태료영수필통지서② (시·도보관용)			
위 반 사 항			
납 부 의무자	성명		
	주소		
과 태 료 금액			
납 부 장 소		○○금고, 은행, 농협, 우체국	
납부통지일자		납부기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소방본부장 세입징수관 귀하 시·도지사			

※ 위 과태료영수필통지서 ②는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행정청이 소속한 시·도, 시·군의 세입징수관에게 송부바랍니다.

(5면)

<p>과태료납부서 (수납기관보관용)</p>			
제 호			
위 반 사 항			
납 부 의무자	성명		
	주소		
과 태 료 금 액			
납 부 장 소		○○금고, 은행, 농협, 우체국	
납부통지일자		납부기한	
<p>위의 금액을 수납함.</p> <p style="margin-top: 50px;"> 년 월 일</p> <p style="margin-top: 50px;">수납기관 (인)</p>			

※ 위 납부서는 과태료를 수납한 기관에서 보관
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3-1호 서식]

(1면)

소방관련법 위반 과태료 자진납부

과태료자진납부영수증 (처분청) 통보용	NO. 200 -	전자납부코드	과세 기관	○시·도 ○소방서○과
	자진납부기한	200 년 월 일	납부장소	관할지역 : 시중은행 전국(다른 지역) : 은행우체국
	납부금액	원	※계좌입금시 반드시 문의(000-0000)바랍니다 (납부기한은 단속일로부터 10일 이내 입니다)	
	위반일시	200 년 월 일 :	위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년 월 일	은행 지점 수납인
	주소		시·도 소방서장 (인)	
	생년월일	-		

수납기관(은행)에서는 지점에 송부바랍니다

(2면)

소방관련법 위반 과태료 자진납부

과태료자진납부영수증 (은행) 보관용	NO. 200 -	전자납부코드	과세 기관	○시·도 ○소방서○과
	자진납부 기한	200 년 월 일	납부장소	관할지역 : 시중은행 전국(타지역) : 은행, 우체국
	납부금액	원	※계좌입금시 반드시 문의(000-0000)바랍니다 (납부기한은 단속일로부터 10일 이내 입니다)	
	위반일시	200 년 월 일 :	위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년 월 일	은행 지점 수납인
	주소		시·도 소방서장 귀하	
	주민등록번호	-		

자진납부 상황을 당일 통보·입력바랍니다

(3면)

소방관련법 위반 과태료 자진납부

과태료자진납부영수증 (납부자 보관용)	NO. 200 -	전자납부코드	과세기관	○시·도 ○소방서○과
	자진납부기한	200 년 월 일	납부장소	관할지역 : 시중은행 전국(다른 지역) : 경남은행,우체국
	납부금액	원	※계좌입금시 반드시 문의(000-0000)바랍니다 (납부기한은 단속일로부터 10일 이내 입니다)	
	위반일시	200 년 월 일 :	위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년 월 일	은행 지점 수납인
	주소		시·도 소방서	
	생년월일	-		

※ 색상, 선색, 글자색, 바탕그림과 마크는 소방이미지 + 시·도 자체

예방실무

[별지 제15호 서식]

과태료수납기록부

① 일련 번호	② 통 지 서번호	③ 통 지 연월일	④ 납부기한	⑥ 정 수 결정액	⑧ 미 수 납 액	납부의무자		⑪ 위 반 사 항
			⑤ 납 부 연 월 일	⑦ 수납액		⑨ 주 소	⑩ 성 명	

※ 과태료 납부통지서 발부 및 영수필통지서 접수시 기록정리